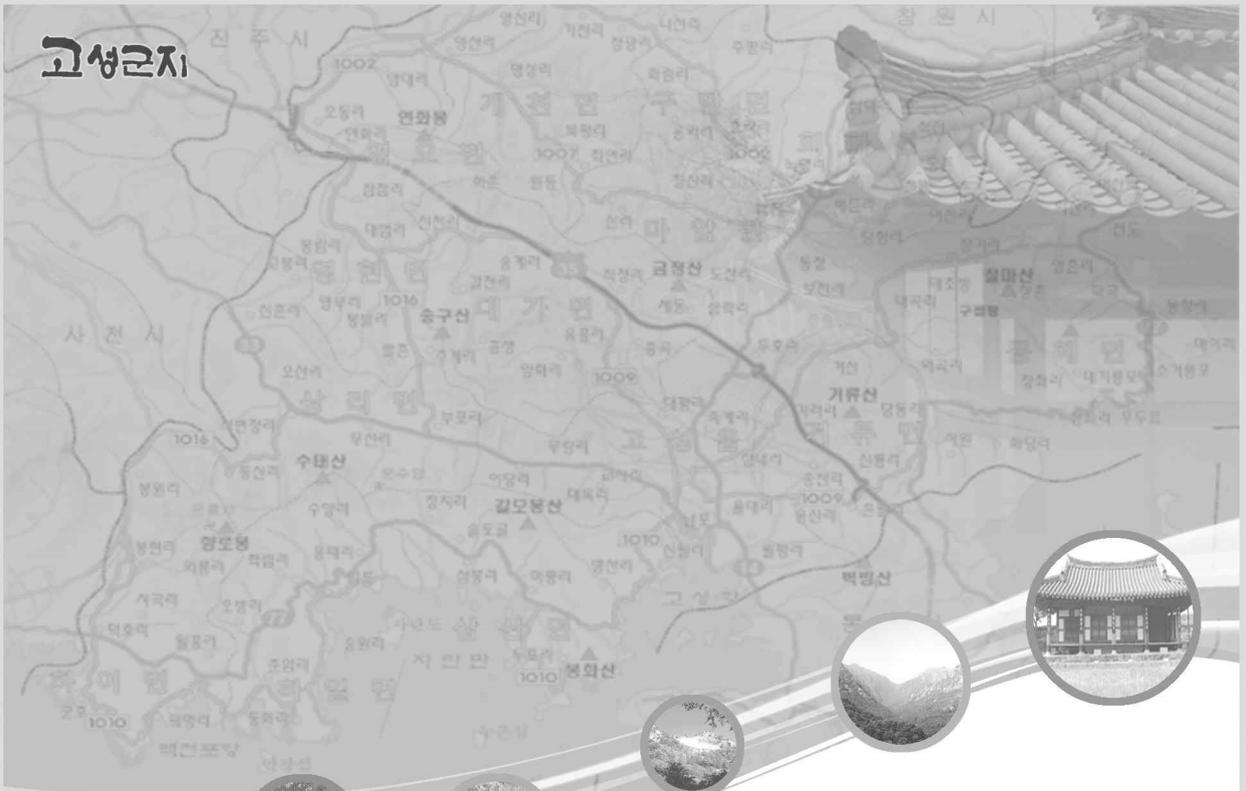


고성군지



제 6편 고성의 행정

행정의회 | 치안행정 | 소방행정



제 6편 고성의 행정

제 1장 지방자치제도

제 1절 지방자치의 조류

1. 지방자치의 발달

각 나라는 그 역사적 전통이나 정치문화의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지방제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방제도의 발전과정을 간단히 말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근대 지방자치제도의 모국들이라 할 수 있는 영·미 및 유럽대륙의 선진국가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고찰해 나가기로 한다.

1) 근세 이전의 지방자치

서양 중세의 국가체제는 봉건국가체제로서 ‘통일성 없는 국가체제’ 임을 그 특징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체제에 있어서는 지방단체가 하나의 ‘소국가적’ 그리고 주관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11세기부터 도시현장 및 시장개설권등의 도시법을 갖는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들 도시는 성벽을 쌓아 외적을 막고 시장을 열고 수공업자 및 상인의 거주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렸다. 이러한 도시들은 국가속의 국가로서 발달하였으며 13세기 중엽부터는 도시동맹을 결성하여 헌법과 더불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7·18세기에 절대군주의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자치제는 점차로 쇠퇴하였다.

2) 근대국가의 지방자치

중세의 정치적 분열상태를 극복하면서 성립한 근세의 절대군주국가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통일국가적 통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중세적인 지방단체의 봉건적인 특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방단체를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층구조 속으로 흡수함으로써 지방단체의 자주성·독립성을 전혀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지방자치는 이와 같은 근세의 절대군주제도를 부정하는데서 성립한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2원적 대립사상에 입각하여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성립한 근대자유민주제 아래에서 국가(권력)에 대립하는 사회(자유)의 보호를 위해서 의회주의를 채택함과 아울러 통치 권력을 분립하면서 지방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지방자치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자유민주제 아래에서 지방자치제가 채택된 것은 국가의 권력을 지방단체에 내면화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으로서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성립·발전과의 관련속에서 존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가 존립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징표로서 인정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방단체의 자치권은 처음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항거사상에 입각한 고유권설이 지배적이었으나 국가 통치구조의 일환으로서의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차츰 국권설(전래설)이 보편화 되어갔다. 그러나 1830년에 벨기에 헌법과 1919년에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 지방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지방자치권은 헌법의 본질적 내용이요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떠한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제도적 보장설이 등장하여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3) 현대국가의 지방자치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국가구성의 기본원리로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이를 규정하는 경향이 더욱 늘어났으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가 이에 역사적·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서 구태여 헌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도 있었다.

그리고 헌법에 지방자치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그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지방단체의 지위·구성·권한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개괄적인 규정만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헌법의 규정과 현실적 운용이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더구나 중앙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의 간섭도 문제이지만 강력한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정치·사회단체(예: 정당, 언론기관등)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말에는 국제적으로 지방자치의 확실한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헌장’ 또는 ‘지방자치선언’을 제정·채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 연합의 ‘지방자치헌장’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U.L.A)의’ ‘세계지방자치선언’ 등이 그것이다.

2. 지방자치 개념의 재구성

오늘날과 같이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가 교차하고 있는 시대에 지방자치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21세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국가에 저항하고 배타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가 시대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개념의 재구성부터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과거와 같이 국가를 불신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항거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국가와 함께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에 공동적으로 이바지한다고 하는 ‘협조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복지 및 국가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 접촉하고 적절한 기능을 분담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참여적 지방자치 또는 적극적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과거의 도피적이고 방어적이며 항거적인 지방자치와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의미의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제 2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사의 개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채택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는 국가의 지방행정은 있어도 지방의 자치는 없었던 것이다.

아래에서 지방자치의 원류인 지방행정사에서 부터 역사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중앙집권적 통치제제의 전통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다. 즉, A.D 1~4세기(삼국시대초기)에 벌써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국력의 성쇠에 따라 강약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에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일관되게 시행되어 왔다.

지방행정은 역대 왕조가 파견한 외관(지방관)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그 행정에 지방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길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는 외관상으로는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듯 하였으나 실제로는 식민통치적 관료행정이었고 해방·독립 후에는 근대적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였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2)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의 촉진 요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앙집권 체제가 일찍이 성립하여 발달하게 한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지정학적 요인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여 생존을 위한 그 강대국들과의 군사적 대결에 영일이 없었고, 그 대결에서의 희생을 연속 당하였다.

(2) 기후적 요인

몬순 기후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의 예방 등 대대적인 수리사업(대대적인 노력동원)의 계속적인 실시로 왕권의 신장이 초래되었다.

(3) 사상적 요인

사군이충·사친이효(事君以忠·事親以孝)등 수직적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체계 및 생활구조의 영향으로 지방은 마땅히 중앙에 복종하는 통치체제를 굳혔다.

(4) 왕조적 요인

강대국들의 틈에서 나라 번방의 동향에 따라 왕실의 안전이 좌우되었으므로 이에 민감히 대처하면서 왕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3) 지방자치적 통치제도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일변도의 역사 가운데에도 지방자치적 요소를 가진 제도나 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초기의 사심관제도, 향직단체라던가, 조선시대의 향청, 향약, 향회제도, 그리고 일제시대의 도·부제 등은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자치적 제도나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적 제도들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각 시대별로 나누어 상술한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원류

1) 고대 국가시대

고대 부족국가 시대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우리민족 고유의 색채가 농후한 것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부족국가로 출발하여 부족 연맹체로 발전한 후 점차 중앙집권적 전제왕정체제를 확립한 나라들이다. 전제왕권이 확립됨에 따라 종래의 부족단위는 왕국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고 그 족장은 전제왕권 아래 귀족이 되었으며 각 행정구역은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서 임명 또는 세습된 자에 의하여 통솔되었다. 3국 사이의 군사 대결에 따라 각 행정구역의 장은 군사권과 민사권을 동시에 쥐고 있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행정의 연구 대상을 그 자료의 부정확성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통일국가를 형성한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통일 신라시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9주(州)로, 주를 다시 군·현(郡·縣)으로 나누었으며 요지에 소경(小京)을 두었다. 9주는 신라 본토와 백제·고구려의 옛땅에 각각 3주씩을 두었고 소경은 주와는 독립된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중원경(충주), 복원경(원주), 서원경(청주), 남원경(남원), 금관경(김해)이 그것이다.

말단 행정구역으로는 향읍(鄉邑)과 촌락(村落)이 있었고,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부곡(部曲)이 있었다. 이는 당시 중국의 지방제도가 대거 도입되어 우리 민족 고유의 지방제도와 혼합상태를 이루는 등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고려시대

고려 건국초기에는 신라의 지방제도를 답습하면서 지방도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반자치적 지방통치를 행하다가 제6대 성종때부터 당나라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를 확립하였다.

(1) 지방제도

초기에 12목(牧)제, 10도(道)제를 채택하는 등 몇차례의 변경을 거쳐 제8대 현종(1009-1031)때에 이르러 전국을 경기와 5도(道)·2계(界)로 나누는 이른바 5도 양계(道兩界)제도를 정착하였다. 도에 안찰사가, 계에 병마사가 파견되었는데 처음에는 순회제 또는 수시파견제 였다가 차츰 상주하는 전임제로 되었다고 한다.

5도·2계 밑에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부(府) 그리고 군(郡)·현(縣)·진(鎭)이 있었다. 군·현에는 영군현(領郡縣)과 속군현(屬郡縣)의 구별이 있었는데 영군현은 지방장관이 파견된 군·현이고, 속군현은 영군현에 예속되거나 경·도호부·목에 직속되어

운영되는 것이었다. 진은 군사적 요지로서 양계 밑에 설치되어 있었다.

중요한 지방행정사무로는 민생규휼사업과 교육사업을 들 수 있었다.

(2) 자치적 제도

지방행정제도 가운데 자치적 제도로서 사심관과 향직단체 제도가 있었다.

0 사심관(事審官)

사심관 제도는 건국공신에게 그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다스리게 한 제도로서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스림에 주민의 참여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복지의 증진보다 착취·수탈에 급급하였으므로 그것을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심관 제도는 그 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기(14세기)에 폐지되고 국가의 외관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0 향직단체(鄉職團體)

향직단체는 지방토호의 협조없이 노력동원이나 조세징수 등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군·현 단위에서 소규모의 조직을 갖고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한 일종의 행정조직으로서 말하자면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인(其人)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향직단체가 지방행정의 권능을 부여 받는 대신에 국왕에 대한 충성의 보증으로 지방토호의 자녀를 중앙에 인질로 보냈던 제도이다.

이와 같은 향직단체도 11세기부터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지구로 편입되었다.

4) 조선시대

왕씨교체혁명에 의하여 성립된 조선국은 그 초기에는 통치조직과 지방제도를 거의 고려시대의 것을 습용하였다. 조선의 통치규범은 제3대 태종(1401~1419)때에 왕권이 확립되면서부터 짜이기 시작하여 제9대 성종(1470~1495)때에 이르러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의 통치구조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가산국가적 중앙집권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산적 관료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에는 왕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방관(외관)을 파견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사법·군사상의 권력을 장악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지방관에 대한 엄격한 집권적 통제를 가한 것이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중앙집권 체제 확보수단은 다방면으로 강구되었으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①관리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엄격한 수직적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유교교리를 출제하였던점. ②지방관의 임명을 본적회피제와 상피제에 입각하여 행하였던점. ③지방관에게 임기제와 독신제를 적용하였던점. ④지방관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고과(考課)와 암행어사 파견을 행하였던점 등을 들 수 있다.

(1) 지방제도

0 지방 조직

지방행정구역은 태종13년(1413)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중앙직할지(한성부, 수원부, 개성부, 광주부, 강화부)를 제외한 전국을 8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함경, 황해)로 나누고 8도 밑에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 군(郡)·현(縣)을 두었다. 이러한 행정구역들도 역시 고려의 제도가 바탕이 되어 발전한 것이었다.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은 모두 도의 관할 아래 있는 병렬적인 단위로서, 다만 거기에 부임하는 지방관의 품계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 품격은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의 순위였는데, 군이 도호부로 승격한다든지 반대로 군이 현으로 강등하는 것은 인구나 가호 그리고, 지역의 발전이나 도시의 형성 등에 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지역에서 공신이나 효자가 나왔다든가 반대로 역신이나 반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상벌로 격이 승강하는 이른바 승강지법(昇降之法)에 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지방관은 그 품계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왕의 대리인으로서 왕과 직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예컨대 군수의 보고가 도의 관찰사를 경유하여 왕에게 도달하는 식의 상·하 계통도 없었고, 중앙의 6조 가운데는 지방행정 주무관서도 없었다.

관찰사는 감사, 도백, 방백이라고도 불리웠고 관찰사를 제외한 목사, 군수 등을 수령(守令)이라고 총칭하였다.

지방행정의 말단 행정구역으로서 면(面)(방·사) 동·리·5가통(5호가 모여 1통을 구성하여 호구조사와 안보 단결에 기여한 단위)이 있었다.

0 지방 사무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의 주요 내용은 민생규휼사업과 교육사업이었다.

0 지방 재정

조선시대의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입의 원천은 거의 전적으로 조세에 있었다. 조세 가운데

데도 상공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농민의 경작지에 부과하는 조세였다.

(2) 자치적 제도

0 향청(鄉廳)

조선 초기의 유향소(留鄉所)는 관직을 그만 두고 귀향한 자 또는 향리에 있는 세력가들의 재향단체이었지만 수령에 대한 지방행정의 고문으로서 주로 유교적 풍교를 교정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한편, 중앙에 재경소(在京所)라는 출장소를 두고 지방민의 여망 또는 부정관리의 행패 등을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도 있었다.

이 유향소를 일시 폐지하였다가 이를 향청으로 개칭하여 공인하게 되었다.

향청의 조직은 좌수(또는 좌장)를 장으로 하고 그를 보좌하는 임원으로 3인 내지 5인의 별감을 두었는바, 이들은 명예직이고 그 임기는 대개 2년이었지만 수령(사또)이 경질되면 다시 선출될 수도 있었다. 좌수는 향내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연로한 자로서 민선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향청은 수령의 감영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를 이아(貳衙. 제2관청)라고도 일컬었으며, 수령에 대한 지문, 아전규찰, 관리천거, 정령전달, 민정대변, 풍속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향청이 비록 지방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고는 하나, 그 설치 목적이 지방민의 권익보다 지방문벌과 세력가들의 지위와 권위를 지방관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었으므로 오늘날의 지방자치 관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민선제이고 명예직제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0 향약(鄉約)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토호, 유림 등의 상류계급에 의하여 전개된 향약운동은 민간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된 교화운동으로서, 자치운동의 일면을 지니고 있었다. 이 것이 처음에는 향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가 점차 향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향약의 4대 강목은 ①지방민들의 선행을 장려하며, 생업을 충실하게 하고(德業相勸), ②상호간의 허물을 비판·경고하여 잘못을 개선하게 하며(過失相窺), ③유교윤리를 보급하고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고(禮俗相交), ④질병과 재난을 당했을 때 서로 보호하고 돕는다(患難相恤)는 것이었다.(이는 宋의 呂氏 4대 강령을 본 딴 것이다.)

그러나 향약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허례허식과 형벌권의 남용으로 또 하나의 악정기관이 되었다.

0 면(방.사), 동. 리

조선시대의 면(서북지방에서는 방, 동북지방에서는 사, 라고도 하였고, 어떤곳에서는 부, 또는 면이라 불리기도 하였음)과 동·리(포, 평, 촌, 향, 현, 점, 합, 천 등 명칭이 다양하였음)는 주민이 피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 구성한 행정단위라 할 수 있으며, 면장과 동·리장 등의 선임에 있어서는 그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면과 동·리의 경비도 주민이 각출하여 충당된 외에, 동·리민 사이에는 연대책임제가 실시되었다.

특히 동·리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동·리 자체가 경지·산야·제언 등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었던 점이다. 이 동·리 재산의 관리는 동·리장이 맡되, 그 처분은 동·리민 전부 또는 유지들의 협의에 의해 행해졌으며, 동·리 안에 거주하는 자는 당연히 이러한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3. 근대적 지방자치의 생성

1) 갑오 경장기

조선왕조의 조선다움은 갑오경장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종래의 중국식 가산 국가 체제가 서구식 근대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이 시대에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국가체제 전환은 1894년(갑오년) 6월 1일의 내정개혁 5개조, 6월 8일의 내정 개혁 방안강목, 10월 23일의 개혁20개조, 12월 12일의 흥범14조를 거쳐 이듬해(을미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내각 각부에서부터 지방관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적인 개혁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 시대의 지방제도 개혁을 보면 갑오년(1894년) 6월 8일에 일본 대조공사(大鳥公使)가 제시한 내정 개혁안 강목에 “현재의 부·군·현치는 그 수가 과다하므로 마땅히 이를 작량폐합하여 민치에 무방토록 소수로 할 것” (제1조제5항)이 들어 있고, 동년 10월 23일에 정상공사(井上公使)가 제시한 개혁20개조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이관할 것” (제13조)이 들어 있었다. 또한 동년 12월 12일에 국왕이 반포한 흥범14조에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0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지방제도

0 지방 조직

지방 조직으로서 처음에 23부제(府制)를 채택하였다가 1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13도제(道制)를 채택하였다.

23부제는 을미년(1895) 5월 26일에 채택되었으며, 이때 종래 목·군·현 등 다양하게 불리던 행정구역들이 군(郡)으로 통칭되었다. 이때에 내무아문(內務衙門)이 지방행정의 주무부로 되고, 내무대신-도관찰사-군수 사이의 피라미드적 지휘·감독 계서제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지방행정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3부제는 이론적으로는 간편하여 상당히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종래의 뿌리 깊은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이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과 현실사이에 마찰이 일어 그 실시 1년만에 폐지되고 13도제가 채택되었다.

13도는 대체로 종래의 8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수도인 한성부는 정부직할지로서 도와 격을 같이 하였다. 13도 밑에는 부·목(府·牧) 그리고 군(郡)을 두었는데 그 후 1906년에 제주목이 군으로 개편됨으로서 목제(牧制)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성부에는 판윤, 도에 관찰사, 부에 부사, 목에 목사, 군에 군수를 두었다.

갑오기에 이룩한 또 하나의 근대화 조치는 각 행정구역의 장의 권한에서 군사권과 사법권, 경찰권을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0 지방 사무

지방행정의 주요내용은 역시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이었다.

0 지방 재정

1895년에 회계법, 수입조규, 지출조규 등이 제정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1906년에 지방세규칙이 공포되었다.(이 규칙은 실시하지 못하고 그후의 지방비법으로 대체됨). 1909년에 지방비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각 도·부 재정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 법은 불완전하나마 지방단체의 독자적재원과 그 운영권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의 중앙집권적 식민통치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자치적 제도 - 향회(鄉會)

1895년(고종32년) 11월 3일 반포된 향회조규 및 향약판무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향회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의 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시작을 이루었다. 즉, 군·면(실제로 방·사 등 명칭 다양)·리(실제로 동·포·평·촌 등 명칭 다양)에 각각 그 주민으로 구성되는 군회·면회·리회를 두어 공식적 성질을 가진 사항을 의결하게 하고, 면·리의 집행기관인 집행(執綱) 및 존위(尊位)를 1년 임기로 하여 주민이 선출하도록 함과 아울러, 집행·존위가 그 임무

에 위배할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회는 마치 지방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군회를 대회(大會), 면회를 중회(中會), 리회를 소회(小會)라 지칭하였다. 그 조직은 군회는 군수와 각 면의 집강 및 각 면에서 천거한 2인으로써 구성되고, 면회는 집강과 각 리의 준위 및 각 리에서 천거한 2인으로써 구성되며, 리회는 준위와 리 안의 각 가호 1인으로서 구성되는데, 징역 또는 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자는 이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향회제도는 자기선임의 원칙과 임기제, 명예직제 등 근대적 지방자치제를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제도였으나, 한·일 합방과 더불어 더 발전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2) 일제 강점기

일본은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정미7조약을 통하여 행정권을,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하여 사법권을, 1910년 경찰권이양조약을 통하여 경찰권을 빼앗은 후, 드디어 동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합병하여,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식민통치에 착수하면서 지방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1) 지방 제도

0 지방 조직

1910년에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로 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부·군(府·郡)을 두며, 부·군에 면(面)을 두도록 하였다. 한편 동년 면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의 면·사·방 기타 다양한 명칭의 행정구역을 면으로 통칭하였다. 그리고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함과 아울러 경기도 관할 아래에 두었다.

1913년에 군·면·리의 명칭 및 관할지역을 대폭 조정하였는데 이때에 정해진 명칭과 규모가 대체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15년에 도제(島制)가 실시되어 제주와 울릉의 2군이 도(島)로 편성 되었고, 1917년에 면 중 일부가 지정면(指定面)으로 되었다가 1930년에 읍(邑)으로 개칭되었다.

각 구역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도에 도지사, 부에 부윤(府尹), 군에 군수, 도(島)에 도사(島司), 읍에 읍장, 면에 면장을 두었다.

0 지방 사무

역시 일제 강점기시대에도 지방행정의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이었다. 사회복지사업의 그 집단성과 사회책임성을 더욱 높혀 각종 복지시설을 설립하였다. 교육사업

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동화정책을 그 기초로 하여 관학의 육성과 사학의 탄압을 도모하며, 우리고유의 문자와 언어를 말살하려 하였다.

0 지방 재정

일제는 지방세제를 정비하고 지방예산·결산제를 체계화 하였다.

지방세제 분야에서 세제의 체계화와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대체로 전반기에는 지세(地稅)계통이, 1927년 이후에는 지세와 호세(戶稅)계통이 종합적으로 세원을 이루었으며, 1940년에는 지방재정조정정보급금 제도가 창설되었다.

지방예산·결산 분야에서 예산은 이를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누고 다시 관·항으로 구분하여 도·부·읍·면의 장이 편성하여 각각 의결기관(또는 자문기관)을 거치도록 하였고, 또한 예비비, 추가예산 및 경정예산제 등을 두었다.

결산은 회계연도를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하여 도·부·읍·면의 장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의결기관(또는 자문기관)에 보고한 후 상급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2) 자치적 제도(도·부·읍회)

지방자치적 단위로서 1913년에 ‘부제’에 의하여 부(府)가 최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학교조합제가 실시되었으며, 1917년 면제에 의하여 면(面)이 사업능력을 갖추어 동시에 지정면에게는 재정주체성이 인정되었고, 1920년에는 ‘도지방비제’와 ‘학교비제’가 실시되었다. 1930년에는 전면적인 지방제도 개정이 단행되어 과거의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도와 읍이 공법인으로 되었으며 도·부·읍에 의결기관(지방의회)인 도회(道會), 부회(府會), 읍회(邑會)가 설치되고, 면에는 자문기관인 면협의회가 설치되어 그런대로 거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게 되었다.(학교조합과 학교비는 부에 통합됨)

각급 의결기관이 도회·부회·읍회와 자문기관인 면협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도회

도회는 20-5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수의 3분의 2는 부회·읍회·면협의회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나머지는 도지사의 임명으로 선임되었고, 도지사가 그 도회의 의장이 되었다.

도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권, 선거권, 의견제시권, 회의규칙 제정권 등을 가졌다. 그

러나 그 권한이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정하였다.

0 부회

부회는 12-3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민선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윤이 그 의장이 되었다.

부회 의원선거권은 25세이상의 남자로서 부세(府稅)를 연 5원이상 납부하는 자에 한정되었고, 그 피선거권의 경우로 같았다.

부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권, 선거권, 의견제시권, 행정감사권 등을 가졌다. 그러나 부회는 그 의결권이 한정되어 있었고, 부윤에게 그 사회권, 재의회부권, 재선거권, 의결취소권, 전결권이 부여되었으며, 도지사에게 예산증감명령권이, 총독에게 해산권이 부여되는 등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0 읍회와 면협의회

읍회와 면협의회는 각기 읍장과 면장이 그 의장이 되었으며,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회위원의 경우와 같았다.

읍회는 의결기관이었으나 그것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였다. 즉, 그 의결권이 법령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에게 정회권이, 도지사에게는 예산증감권이, 총독에게는 해산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면협의회는 전술한 도회·부회·읍회의 경우와는 달리 제도적으로도 면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였다.

3) 미군정기

일제의 패망 후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행정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어디까지나 군정이기 때문에 그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는 바, 지방제도상의 변혁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첫째. 서울시를 경기도의 관할에서 분리하여 도와 동등한 지위로 승격시키고 서울특별시로 개칭하였다.

둘째. 제주도를 전라남도의 관할에서 분리하여 도(道)로 승격시켰다.

셋째. 도회·부회·읍회·면협의회를 해산하였다.

넷째.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지방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수립 후 지방제도의 흐름을 몇단계로 나누느냐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1961년(5.16)과 1988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지방자치의 시동기

(1) 1948-1960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 11. 17. 법률 제8호)을 제정하여 행정구역과 행정기구에 관한 약간의 조치 외에는 종래의 지방제도를 그대로 답습·적용하였다.

가. 지방자치법의 제정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서 역사적인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및 시·읍·면으로 하고, 그 계층적 구조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단층제, 도에서는 2층제로 하였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주의를 취하고 집행기관은 수장제를 택하였다.
- ③ 시·읍·면장은 해당 시·읍·면 의회에서 선거하고,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④ 지방의회는 임기 4년의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였다. 의회의 의결권에는 제한(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시·읍·면의 경우에는 의회에 시·읍·면장 불신임권을, 시·읍·면장에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였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였다.
- ⑥ 지방세에는 독립세로서 호별세 등이 있었고,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지세부가세 등의 국세부가세가 있었다.
- ⑦ 지방자치단체 기능에는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과 제한된 범위내의 자주조직권 및 자주입법권(조례·규칙제정권)이 인정되었다.
- ⑧ 국가의 감독은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교정적 감독과 합법성 감독만 허용되었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하부단위로는 도에 군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를 두며, 시·읍·면에는 동·리를 두었는데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동·리장은 동·리 주민이 선거하도록 하였다.
- ⑩ 주민의 행정에의 참여와 통제방법으로 조례와 단체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감독관청이나 대법원에 소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 ⑪ 시·읍·면에는 지방공무원만 두게 한 반면에 도와 서울특별시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혼성 배치하고 특히 과장급 이상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하였다.
- ⑫ 교육법(1949.12.31 법률제86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군을 단위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교육구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와 (일반)시에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교육구는 법인체로서 독자적으로 교육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위원회는 보통지방자치단체 안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관여 아래 교육사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나. 1952년 총선거의 실시

지방자치법이 제정은 되었으나 계속되는 정치의 불안정과 더구나 뒤이은 6.25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1952년에 전쟁진행 중인 관계로 지방선거 실시 가능지역 만일지라도 최초로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를, 5월 10일에 시·도 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52년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시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은 그 후 다음과 같이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왔다.

- 0 1956년 2월 13일 : 개정내용은 ①시·읍·면장을 직선제로 한 것. ②의회의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를 폐지한 것. ③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 ④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확장한 것. ⑤의회의 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의 거부권을 규정한 것 등이다.(법률 제385호)
- 0 1956년 7월 8일 :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상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라. 1956년 총선거 실시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장과 의회의원 선거를, 8월 13일에 시·도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마. 지방자치법의 개정

0 1958년 12월 26일 :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관치적인 것으로 변질시킨 최악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시·읍·면장의 임명제와 장에 대한 불신임제를 채택한 것. ②지방의회가 법정 회의일수를 초과했을 때 감독기관에서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한 것. ③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다시 4년으로 연장한 것. ④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폐지한 것 등이다.(법률제501호)

(2) 1960~1961년

1960년 4.19 학생의거 후에 수립된 제2공화국은 민주정치의 실현과 함께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를 단행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은 제2공화국의 단명과 함께 끝나고 말았다.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

0 1960년 11월 1일 :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단행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제로 하고 그 임기를 4년으로 한 것. ②12월의 정기회의를 제외한 지방의회의 회의일수를 제한한 것. ③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한 것. ④부재자 선거제도를 채택한 것. ⑤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읍·면장의 징계를 채택한 것. ⑥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둔 것 등이다.

나. 1960년 총선거의 실시

1960년 12월 12일과 19일에 시·읍·면과, 시·도의회 의원선거를, 12월 26일과 29일에 시·읍·면장과 시·도지사 선거를 실시하였다.

2) 지방자치의 중단기

전술한 지방자치 시동기의 지방자치는 선거를 둘러싼 씨족적 파쟁과 민심분열, 금품매수, 정당파쟁, 이권청탁, 정실행정, 예산낭비 등의 연속이었으며,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남용 등으로 혼미를 거듭하였다.

이에 1961년의 5.16 이후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새로운 방향의 정립이 시도되었는 바 그것은 지방행정 능률화의 추구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지향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구현보다도 지역개발의 추진이 더욱 중요시되고 온갖 시책이 이에 집중되었다.

(1) 1961~1972년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로써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이어 6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0조로써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15만이상의 시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전면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하였다.

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1961년 9월 1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종래의 읍·면 자치제 대신 군자치제를 규정하는 한편 해산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도와 서울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 임시조치법에 저속되는 지방자치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게 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읍·면 자치제의 군자치제 전환. ②지방의회의 해산 및 그 기능의 상급감독기관 대행.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와 국가공무원에 의한 충원. ④지방자치단체 내부기구의 개편. ⑤서울특별시의 국무총리 직속화. ⑥부산시의 정부직할시로 승격. ⑦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 ⑧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선. ⑨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⑩행정구역의 조정

나. 교육법의 제정

아울러 교육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특별자치단체였던 교육구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부산시·도에 교육위원회를 시·군에 교육장을 두어 이들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함으로써 교육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였다.

(2) 1972~1980년

1972년에 국력의 조직화와 국정능률화를 구호로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과 더불어 출범한 제4공화국은 그 국정능률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시까지 유예할 것을 그 헌법 부칙에 규정하였다.(제10조)

1973년과 1975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고쳤다. 1973년의 개정에서는 광역행정의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제2조의2, 제2조의3), 시·군·읍·면 구역변경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하였으며.(제3조, 제4조) 기타 부지사제, 시군행정기구 개편절차 등을 규정하고(제6조, 제9조의2). 1975년의 개정에서는 인구 2만미만의 면일지라도 군사무소 소재지는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의 2)

(3) 1981~1988년

1981년에 성립한 제5공화국의 헌법은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서 정할 것을 그 부칙에 규정하여(제10조) 지방자치의 실시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 제5공화국의 시기는 민주적 지방제도 재시행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바 1988년까지의 신지방제도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① 헌법 부칙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시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4공화국의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규정하였던 구성시기의 경직성을 완화하였다.
- ② 인구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인 대구, 인천, 광주를 정부직할로 하여 대도시행정의 발전을 기하였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 개편함으로써 지방행정조직의 비대화와 방만을 억제하였다.
- ④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종류, 직위분류, 교류 등에 걸쳐서 인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국민경제와 국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헌법 부칙의 규정을 둘러싼 많은 논의 끝에 1984년 11월에 국회에서 여·야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을 포함한 신지방제도의 준비 작업에 들어가 1987년에 제7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3) 지방자치의 재 시행

1988년의 헌법에서는 종래의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의 부칙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조속한 실시의 길을 열었고,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1) 1988~1991년

가.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

1988년 4월 6일 :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형식상으로는 법률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새 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전조문의 개정은 물론 그 내용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법률제4004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 외에 자치구를 추가하여 자치계층을 전국에 걸쳐서 2계층(특별시, 직할시-자치구, 도-시·군)으로 통일하였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나마 예시하고, 자치단체 계층별 사무배분기준을 정하여 종래에 사무범위가 막연하고 배분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 ③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20세이상으로 하고 그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경우는 25세,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는 30세,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35세이상으로 세분하였다.
- ④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였다.
- ⑤ 지방의회의 권한을 조절하였다.(의결권의 범위에서 소송·화해·손해배상·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감사권을 조사권으로 바꿈.)
- ⑥ 지방의회의 회의일수를 조절하였다.(종래 자치단체 종류별로 차이가 있던 회의일수를 자치단체 계층별로 통일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총60일 이내, 광역자치단체는 70일 이내로 함.)
- ⑦ 지방선거법을 지방자치법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하였다.(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임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⑨ 지방의회의 구성을 시·군·자치구에서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즉, 시·군·자치구의 의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도의 의회를 시·군·자치구 의회의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함.)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결처분권을 부여하고 시·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의회의 위법 또는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하였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 또는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의 통제를 1차로 시정명령, 2차로 취소·정지로 단계화 하였다.
- ⑫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두도록 하였다.
- 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조합의 설립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⑭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 ⑮ 종래에 규정의 실효성이 없었던 주민소청제를 폐지하였다.
- ⑯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나. 지방자치법 보완 개정

1989년의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라 그 후 계속 보완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0 1989년 12월 30일 :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각급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를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각급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 ②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③ 시·도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였다.
- ④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범위를 확대하였다.

0 1990년 12월 31일 :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의회 의원 겸직범위를 확대하였다.(농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의 조합장과 그 상근 임직원)
- ② 각급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1992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2) 1991~1995년

가. 1991년 총선거의 실시

0 1991년 3월과 6월에 1961년 지방의회 해산후 30년만에 기초지방의회와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나. 지방교육자치법의 제정

0 1991년 3월 8일 : 법률 제4347호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 0 1991년 5월 23일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중 ‘조합장’ 을 삭제하였다.
- 0 1991년 12월 31일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원의 보수 중 여비는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지방의회회원을 체포·구금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 ③ 지방의회는 그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지방의회 정기회를 광역의회의 경우 30일·35일, 기초의회의 경우 25일·30일로 연장 조정하였다.
 - ⑤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 ⑥ 지방의회 폐회중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⑦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으로 변경하였다.

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 0 1994년 3월 16일 : 종래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이 각각 개별 법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모든 공직 선거를 통합규정하는 통일법을 제정하였다.

마. 지방자치법의 개정

- 0 1994년 3월 16일 :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둘 수 있되, 그 시에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지방의회회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⑤ 시·도에 부시장과 부지사 2인을 둘 수 있되, 그 중 1인은 국가공무원으로써 도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다른 1인은 지방직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⑥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지방직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최초로

- 민선된 자치단체장의 임기까지는 국가직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 ⑦ 자치단체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해태할 때에는 그 위임기관은 그 직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⑧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⑨ 시·도의 조례로써 형벌을 규정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 ⑩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한 때에는 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⑪ 지방의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⑫ 지방의회의 회기를 5일간 연장하고, 연간 회의총일수도 20일간 연장하였다.
 - 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의회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⑭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선결처분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 ⑮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⑯ 감독관청은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1994년 12월 20일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바꾸고 광역시 안에 군을, 구 안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자치단체장의 계속 연임을 3기에 한하도록 하였다.
- ③ 특별시의 부시장을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의 설치,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정조정을 자율화하였다.
- ⑤ 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완화하였다.
- ⑥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 시에서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⑦ 지방의회에서의 참고인의 진술 거부는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⑧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 0 1995년 1월 5일 : 1994년 12월 개정의 보완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자치단체장의 제청을 받아서 하도록 원상회복 하였다.

(3) 1995년~현재

- 0 1995년 8월 4일 :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설치요건으로서 인구 15만이상인 군에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 있고 그 지역들이 인구의 합이 5만이상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 0 1999년 1월 29일 : 법률 제5710호로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 0 1999년 8월 31일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민의 조례제정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을 인정하였다.
- ② 지방의회의 정례회(정기회)를 2회제로 하였다.
- ③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였다.
- ④ 감독기관이 그 직권으로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중앙과 지방간의 분쟁의 협의조정기구를 국무총리소속하에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를 법제화하였다.

- 0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동법에 제6장(제51조~161조)을 신설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을 둘러싼 많은 잡음과 논란에 대응하였다.

- 0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1단계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서 정부직할에 두었고, 2단계는 시·군·구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역안에 있는 ‘구’로 한정하였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0 2011년 7월 14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 또는 결산검사 결과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조치, 관련 공무원의 징계조치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이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하여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보기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법제처 「지방자치법 연혁법령」)

제 3절 행정구역의 변천

1. 개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구역은 오랜 역사속에서 변천·발전되어 왔다. 또한 정치적·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본다. 당시 행정 구역은 일반적으로 면적과 인구,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성,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행정 수요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특히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옛날에는 산이나 하천이 구역설정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 등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수립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행정구역을 1특별시, 9도, 19시, 134군, 75읍, 1,448면이었으며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2014년말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75시, 82군, 69구, 218읍, 1,195면, 2,083동으로 변천되었다.

2. 고성군의 행정구역 변천

고성군은 지리적인 여건과 생활환경 등의 변화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의 변천 역시 많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이후의 고성군 행정구역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 대	연도	연혁	
일 제 강 점 기	1914년	3월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할 때 고성군의 면은 아래와 같이 병합조정 되었다.	
		명칭	병 합 면
		철성면 삼산면 대가면 마암면 회화면 영오면 거류면 동해면 하일면 하이면 구만면	동읍내면 일원. 서읍내면 일원 상서면 일원. 상남면 일원 대둔면 일원. 가동면 일원 동마면 일원. 서마면 일원 회현면 일원. 화양면 일원 영이곡면 일원. 오읍곡면 일원 광일면 일원. 광남면 일원 포도면 일원. 광이면 일원 하일면 일원 하이면 일원 구만면 일원

	상리면 영현면 개천면	상리면 일원 영현면 일원 개천면 일원
	1918년	10월 1일 철성면을 고성면으로 개칭
	1938년	10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97호로 고성면이 읍으로 승격됨으로서 고성군은 1읍 13개면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대한민국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마암면 좌연리가 개천면으로, 동해면 감서리가 거류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삼산면 이당리, 대독리가 고성읍으로, 개천면 나선리 선동이 구만면 화림리에 편입 되었다.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고성군 리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고성군은 1읍 13개면 5개동, 114개 리로 확정되었다.
	1986년	6월 30일자 고성군 조례 제961호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하일면 용태리에 가룡, 춘암리에 맥전포, 영오면 영산리에 낙안을 각각 증설하여 고성군의 행정리는 263개로 되었다.
	1987년	12월 24일자 고성군 조례 제1002호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삼산면 두포리에 와도, 하일면 학림리에 임포, 송천리에 자란을 증설하여 고성군의 행정리는 266개가 되었다.
	1988년	5월 24일자 고성군 조례 제1031호로 고성군 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고성읍의 법정동 5개(성내동, 서외동, 수남동, 동외동, 송학동)를 법정리로 변경함으로써 고성군의 법정동은 없어지고 법정리가 119개로 늘어났다.
	1997년	12월 31일자 고성군 조례 제1537호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마암면 도전리 기전, 장산리 서장산, 신리 신지, 석마리 감동 등 4개 행정리를 감축하여 고성군의 행정리는 262개가 되었다.
	2008년	5월 9일자 고성군 조례 제1924호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삼산면 삼봉리 하촌을 해명으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4년	3월31일자 고성군 조례 제2142호로 고성군 이장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개천면 좌연리 월곡을 행정리로 확정하여 2014년말 현재 고성군은 1읍 13개면 119개 법정리와 263개 행정리를 두었다.

3. 고성군 행정구역 현황

2014년말 현재

구 분	면 적		법정리	행정리	자연 마을	반	도서수		
	(km ²)	점유율%					계	유인도	무인도
계	517.71	100	119	263	575	622	28	2	26
고성읍	44.12	8.5	17	40	92	155	2		2
삼산면	35.10	6.8	6	14	59	33	16	1	15
하일면	30.98	6.0	7	15	30	36	8	1	7
하이면	37.84	7.3	8	19	27	35			
상리면	45.99	8.9	9	17	51	28			
대가면	52.26	10.1	9	19	49	40			
영현면	32.17	6.2	8	16	20	22			
영오면	22.77	4.4	7	15	23	28			
개천면	40.45	7.8	9	17	27	18			
구만면	22.23	4.3	6	14	23	19			
회화면	29.65	5.7	6	16	28	52	1		1
마암면	33.70	6.5	9	17	48	41			
동해면	53.88	10.4	9	22	49	52			
거류면	36.57	7.1	9	22	49	63			

4. 읍면별 법정·행정리 현황

읍면	법정리	행정리	읍면	법정리	행정리
고성읍	17	40	하이면	이당리	면전, 이곡
	성내리	서내, 남내, 동내		무량리	무량
	서외리	서외1, 서외2		덕선리	양덕, 선동
	동외리	동외, 남산1, 남산2, 정동		대평리	대평, 율촌
	수남리	수외, 남외, 구암, 남포		우산리	내우산, 외우산, 상촌
	송학리	송학, 무학		죽계리	죽동, 장계, 평계
	기월리	기월, 신기		율대리	율대
	교사리	교동, 사동		월평리	매수, 홍류, 거운
	대독리	대안, 독실		신월리	신부, 곡용

읍면	법정리	행정리	읍면	법정리	행정리
삼산면	6	14	대가면	9	19
	병산리 두포리 미룡리 삼봉리 장치리 판곡리	병산 장치, 두모, 포교, 와도, 덕산 대포, 용호, 미동 상촌, 해명 중촌, 장백 판곡		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양화리 연지리 유흥리 암전리 금산리 척정리	송계, 장전 신전 외갈, 내갈, 종생 양화 지동, 평동 유흥, 삼계 암전 월촌, 세동, 신화, 가동 화암, 척곡, 관동
하일면	7	15	영현면	8	16
	수양리 용태리 학림리 송천리 오방리 춘암리 동화리	수양 용태, 가룡 임포, 도동, 학동, 금단 송천1, 자란, 송천2 오방 춘암, 용암포, 맥전포 동화		추계리 봉발리 대법리 영부리 봉림리 침점리 신분리 연화리	추계 봉발1, 봉발2, 금능 대촌, 법촌 영부, 영동 봉림 침점1, 침점2 평촌, 매촌, 신촌 연화1, 연화2
하이면	8	19	영오면	7	15
	덕호리 덕명리 월흥리 사곡리 석지리 와룡리 봉현리 봉원리	두수, 부평, 신덕, 군호 제진, 덕명 월흥, 입암, 신흥, 정곡 사곡 남산, 음촌, 양촌, 신촌 와룡 봉현 외원, 내원		영대리 오서리 오동리 영산리 성곡리 연당리 양산리	영대, 옥동 오서 오동 신흥, 성산, 낙안 생곡, 금산 범계, 연촌, 본양, 악양 양기, 양월
상리면	9	17	개천면	9	17
	고봉리 신촌리 오산리 척번정리 동산리 망림리 무선리 자은리 부포리	고봉, 비곡 신촌 오산, 중촌, 가동 척정, 조동, 평촌 동산 망림, 구미 무선, 선동 자은 부포, 내부포		명성리 예성리 북평리 용안리 봉치리 청광리 나선리 가천리 좌연리	상명, 하명 덕성, 구례 북평, 원동 용안, 용궁 봉치 청동, 청남 나동 가천, 차치 좌연, 좌이, 월곡

읍면	법정리	행정리	읍면	법정리	행정리	
구만면	6	14	동해면	9	22	
	효락리 주평리 화림리 저연리 용와리 광덕리	낙동, 효대 주평 신계, 화촌, 당산, 선동 연동, 저동 와룡, 용당 광암, 중암, 덕암		장기리 양촌리 외산리 내산리 용정리 장좌리 봉암리 외곡리 내곡리	용흥, 장기 검포, 덕곡, 법동 대천, 좌부천 내신, 전도 매정, 가룡 우두포, 상장, 하장, 구학포 장항, 입암, 동림 정남, 정북 남촌, 북촌	
회화면	6	16		거류면	9	22
	배둔리 당항리 봉동리 어신리 삼덕리 녹명리	관인, 가례, 양지, 안의 당항 자소, 금봉촌, 동촌 석전, 산북, 어선 월계, 남진, 신천, 치명 녹명			당동리 신통리 화당리 거산리 가려리 송산리 은월리 용산리 감서리	당동, 신당, 봉곡 용동, 마동, 상원, 하원 화당 거산 덕촌, 가동 송정, 구현, 도산촌 월치, 정촌, 신은 용산 봉림, 감동, 용운 승의원
마암면	9	17				
	두호리 삼락리 보전리 화산리 도전리 장산리 성전리 신리 석마리	두호 곤기, 평부 보대, 전포, 동정 원진, 법진, 화산 명송, 도전, 용전, 초선 장산 성전 신리 석마				

(보기:고성군 통계연보2014. 고성군정 백서 2014. 고성군 조례 연혁집. 하기호 「고성향토사연구」 2013.)

제 4절 고성군의 행정

1. 고성군의 지방공무원

1) 지방공무원제의 유래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제는 역사적으로 국가공무원제의 하나의 부수적인 제도로 존재하여 왔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제는 최근까지도 경시되어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즉,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지방 관제에 관한 별도의 법제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갑오경장 이후에 지방관 또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별도의 법제가 제정 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법률이 아닌 명령(칙령 또는 대통령령)에 기초를 둔 것에 불과하였다.

지방공무원제의 유래를 조선시대부터 소급해보면 조선시대에는 관찰사,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등 지방장관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으로 보임되었고 이들 지방장관을 보조하는 관리로서 지방인으로 임용되는 향리(또는 아전)가 있었다. 조선조 후기에는 갑오경장에 따라 법적으로 지방관제가 독립하게 되었다.

즉, 이때부터 지방관리직제(1895년), 지방관리 직무권한(1896년), 지방관 관제(1906년), 지방관 등 봉급령(1906년) 등이 공포되어 지방관제가 형식상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갑오경장 이후와 대동소이 하나 지방관 중에서도 보수, 승진 등 다방면에서 일본인과의 차등이 심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미 군정시대에는 식민지 체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민주적인 독립정부를 수립하는데 교량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지방관제 개혁은 없었다.

2) 근대적 지방공무원제의 형성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지방관제에 관한 별도의 법제가 없다가 갑오경장이후에 지방관제가 법제상 독립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법률이 아닌 명령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 특색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지방자치법을 제정(1949년)하면서 법 제115조에서 지방공무원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1956년에 지방공무원령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지방공무원령도 법률이 아닌 명령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제는 아직까지 법률적 기초를 확립하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가 법률적 기초 위에 확립된 것은 1963년부터이다. 1963년 11월 1일에 역사상 처음으로 법률로서의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제1427호)되었고 이어서 동년 12월 12일에는 동법의 시행법규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제정되었다.(대통령령제1674호) 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비로소 근대적인 지방공무원제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가 종래의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며 비민주적인 제도로부터 새로이 합리적, 능률적, 민주적인 제도로 전환하였고 그 법적 기초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 중에는 특수분야 특별임용, 승진시험, 명예퇴직제,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과 시도 공무원의 직위에 개방형 직위제가 채택되었다.

3) 고성군 공무원 정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지역개발, 소득증대, 영농지도, 건강계몽, 환경개선, 공해방지 등의 업무가 시대변화에 따라 늘어남과 동시에 주민들의 욕구 또한 크게 증대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기구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981년 고성군의 공무원 정원이 537명이었고 10년후인 1990년에는 62명이 증가된 599명이었으며 1995년에는 694명까지 늘어나 고성군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정원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 후 국가경제 개발의 성공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고성군의 인구 역시 절반 정도로 감소되고 영농의 기계화와 과학화가 촉진되면서 영농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지식수준 또한 높아짐에 따라 지도, 홍보, 계몽 등의 업무가 감소되고 직무의 전산화로 업무가 간소화 됨과 때를 같이하여 1998년 9월 1일 제1차 지방행정 기구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당시 핵심부분은 불필요한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 수립시부터 사용되어오던 기구의 최말단 조직인 “계”를 없애고 “담당”으로 개편하였다.

그 결과 1실 3과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전년도 기준으로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88명을 감축한 606명으로 조직 개편하였다.

그 후 1999년 제2차 기구 개편을 거친 이후 2001년에는 558명까지 축소되어 694명이던 1996년도의 정원에 비해 무려 20% 수준인 136명을 감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됨과 아울러

그동안 억제 되어왔던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역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해 18%에 해당하는 100명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에는 26명이 감축되어 2014년말 현재 649명의 공무원이 고성군의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읍 13개면의 읍면공무원 정원은 1987년도 319명이 최고 정점을 이룬 후 계속 감축되어 2000년도에는 1987년도에 비해 116명이 감축되었고 2014년말 현재는 172명으로 기준년도의 54%수준이다. 이와 같은 감축의 주요 요인은 읍면사무의 본청 이관과 모든 업무의 전산화에 기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고성군 기구 및 정원

2014년말 현재

년도 및 기구		계	정 무 직	일 반 직	별 정 직	지 도 직	기 능 직	고 용 직	연 구 직	전문 경력 관	임 기 제	기타 직종
1981		537		-	-	-	-	-				-
1987		572		398	21	61	5	72				15
1990		599		424	18	56	87					14
1992		672		483	23	46	107					13
1995		694	1	503	27	48	115					
1998		606	1	445	25	34	101					
1999		591	1	456	14	29	91					
2000		580	1	445	17	26	91					
2001		558	1	427	15	25	90					
2005		658	1	531	14	25	87					
2010		632	1	507	17	24	81		2			
2013		640	1	606	1	24			5	2	1	
2014		649	1	619	1	23			5			
본청		300	1	296	1				2			
의회사무기구		14		14								
직속 기관	보건소	57		57								
	농업기술센터	62		38		23			1			
사 업 소	관광지	15		15								
	상하수도	15		15								
	박물관	14		12					2			
읍면		172		172								

그 외 당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농촌지도직은 1988년도 당시 60명이 근무하였으나 1992년도에는 46명으로, 1998년도에는 34명, 2000년도에는 26명,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 23명의 농촌지도직이 재직중이며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1989년도에 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 계획에 따라 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공무원 직종간의 불균형이 해소되었다.

(보기:최창호 「지방자치학」 2002. 삼영사. 고성군 행정과 보존문서)

○ 읍면 공무원 정원

2014년말 현재

년도및 정원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기 타 직 열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987	319	276	1	72	74	104	25	14		22	7
1990	300	259	1	72	74	76	36	14	26		1
1992	311	259	1	72	75	54	57	17	35		
1998	234	195	14	60	61	36	24	8	31		
2000	203	179	14	58	46	34	27		24		
2005	185	166	14	52	45	27	28		19		
2010	177	165	14	50	49	37	15		12		
2013	172	172	14	51	49	38	20				
2014	172	172	14	52	47	38	21				
고성읍	25	25	1	6	7	9	2				
삼산면	10	10	1	3	2	2	2				
하일면	12	12	1	4	3	2	2				
하이면	12	12	1	4	3	2	2				
상리면	10	10	1	3	3	3					
대가면	11	11	1	4	2	3	1				
영현면	10	10	1	3	3	2	1				
영오면	10	10	1	3	2	3	1				
개천면	10	10	1	3	3	3					
구만면	10	10	1	3	3	1	2				
회화면	13	13	1	4	4	2	2				
마암면	12	12	1	4	4	2	1				
동해면	13	13	1	4	4	1	3				
거류면	14	14	1	4	5	2	2				

○ 역대 군수 현황

대수	성명	재임기간			본적	비고
		착입	이임	재직기간		
1	강창인(姜昌寅)	1943. 01.	1945. 12. 04	2년 11월	진양군	
2	김재술(金在述)	1945. 12. 24	1947. 03. 06	1년3월	경기도	
3	정수영(鄭壽永)	1947. 03. 07	1947. 08. 14	5월	거창군	
4	정성양(鄭性陽)	1947. 08. 15	1948. 03. 03	7월	사천군	
5	이수종(李秀宗)	1948. 03. 08	1949. 06. 02	1년3월	창원군	
6	노기용(盧企容)	1949. 06. 13	1950. 04. 21	10월	합천군	
7	조주래(趙舟來)	1950. 05. 06	1952. 05. 28	2년1월	진주시	
8	김극수(金克守)	1952. 05. 29	1954. 11. 01	2년5월	진양군	
9	이효원(李孝源)	1954. 11. 02	1956. 07. 09	1년8월	남해군	
10	윤덕형(尹德炯)	1956. 07. 10	1957. 05. 29	11월	동래군	
11	윤동수(尹東壽)	1957. 05. 30	1959. 11. 25	2년6월	울주군	
12	남영현(南永鉉)	1959. 11. 26	1960. 05. 22	6월	하동군	
13	서석지(徐錫祉)	1960. 05. 23	1960. 10. 31	5월	김해군	
14	최인철(崔仁喆)	1960. 11. 29	1961. 06. 17	7월	진양군	
15	김현규(金賢圭)	1961. 06. 18	1962. 11. 09	1년5월	진주시	
16	박규철(朴圭徹)	1962. 11. 10	1964. 06. 11	1년7월	진주시	
17	고창섭(高昌燮)	1964. 06. 12	1965. 11. 01	1년5월	남해군	
18	송상기(宋相基)	1965. 11. 15	1966. 08. 19	10월	함안군	
19	이한순(李澣純)	1966. 08. 20	1967. 12. 31	1년4월	고성군	
20	윤상원(尹尙遠)	1968. 01. 01	1970. 03. 04	2년2월	합천군	
21	허순도(許淳道)	1970. 03. 05	1971. 08. 20	1년6월	고성군	
22	허 직(許 植)	1971. 08. 21	1973. 06. 30	1년 10월	밀양시	
23	주우철(朱尤喆)	1973. 07. 01	1974. 12. 31	1년6월	진주시	
24	김상준(金相俊)	1975. 01. 01	1975. 07. 10	6월	부산시	
25	원종서(元種瑞)	1975. 07. 11	1980. 03. 16	4년8월	의령군	
26	김창수(金昌洙)	1980. 03. 17	1981. 06. 30	1년3월	함양군	
27	손태병(孫泰兵)	1981. 07. 01	1983. 04. 13	1년9월	부산시	
28	이두연(李斗淵)	1983. 04. 14	1985. 03. 10	1년 11월	밀양군	
29	박찬규(朴燦奎)	1985. 03. 11	1986. 12. 23	1년9월	부산시	
30	하일청(河一淸)	1986. 12. 24	1988. 06. 11	1년6월	삼천포시	
31	김계현(金桂炫)	1988. 06. 12	1988. 12. 31	7월	진양군	

32	강태선(姜泰善)	1989. 01. 01	1991. 07. 15	2년7월	남해군	
33	이방수(李芳洙)	1991. 07. 16	1993. 03. 28	1년8월	고성군	
34	김영철(金映徹)	1993. 03. 29	1994. 01. 02	9월	양산군	
35	유금열(劉今烈)	1994. 01. 03	1994. 12. 31	1년	진양군	
36	서영칠(徐榮七)	1995. 01. 01	1995. 04. 29	4월	거제시	
37	이갑영(李甲英)	1995. 07. 01	1998. 06. 30	3년	고성군	민선
38	이갑영(李甲英)	1998. 07. 01	2002. 06. 08	3년 11월	고성군	민선
39	이학렬(李鶴烈)	2002. 07. 02	2006. 06. 30	4년	고성군	민선
40	이학렬(李鶴烈)	2006. 07. 01	2010. 06. 30	4년	고성군	민선
41	이학렬(李鶴烈)	2010. 07. 01	2014. 06. 30	4년	고성군	민선
42	하학렬(河鶴烈)	2014. 07. 01	2015. 05. 29	10개월	거제시	민선
43	최평호(崔平鎬)	2015. 10. 29	현 재		고성군	민선

○ 역대 부군수 현황

대수	성명	재임기간			본적
		착임	이임	재직기간	
1	조목희(趙沐熙)	1975. 01. 15	1976. 03. 31	1년3월	경북 영덕군
2	허인도(許寅道)	1976. 04. 01	1977. 03. 06	11월	김해군
3	이상영(李相英)	1977. 03. 07	1979. 12. 20	2년9월	함안군
4	이완희(李玩熙)	1979. 12. 21	1982. 04. 27	2년4월	부산시
5	김태일(金泰一)	1985. 04. 13	1986. 04. 03	1년	울산군
6	박명현(朴明現)	1986. 04. 26	1987. 01. 20	9월	부산시
7	조용규(趙容達)	1987. 01. 21	1989. 05. 02	2년3월	산청군
8	류기조(柳基祚)	1989. 05. 03	1993. 06. 18	4년2월	진양군
9	도충홍(都忠弘)	1993. 06. 19	1995. 07. 25	2년1월	고성군
10	정도영(鄭道永)	1995. 07. 26	1995. 12. 18	5월	김해시
11	이규윤(李圭潤)	1995. 12. 19	1997. 12. 27	2년	사천시
12	강홍석(姜洪錫)	1997. 12. 28	1998. 07. 09	6월	의령군
13	오원석(吳元碩)	1998. 07. 10	1999. 07. 21	1년	마산시
14	정웅(鄭雄)	1999. 07. 22	2002. 02. 16	2년7월	양산시
15	최평호(崔平浩)	2002. 02. 18	2002. 02. 26	9일	고성군
16	안한규(安漢圭)	2002. 03. 01	2003. 01. 12	10월	고성군

17	허학용(許學龍)	2003. 01. 13	2005. 01. 21	2년	김해시
18	김광태(金光泰)	2005. 01. 22	2005. 08. 08	6월	진주시
19	김영철(金煥哲)	2005. 08. 09	2007. 01. 24	1년6월	사천시
20	박권제(朴權濟)	2007. 01. 25	2008. 04. 01	1년2월	창녕군
21	이용학(李鎔鶴)	2008. 04. 02	2009. 06. 30	1년3월	마산시
22	김이수(金二壽)	2009. 07. 01	2010. 12. 31	1년6월	창녕군
23	김종술(金鍾述)	2011. 01. 01	2012. 01. 09	1년	의령군
24	김창호(金昌浩)	2012. 01. 10	2012. 07. 02	6월	진주시
25	조현명(趙顯命)	2012. 07. 03	2013. 01. 30	7월	의령군
26	정기방(鄭基邦)	2013. 01. 31	2013. 12. 25	11월	남해군
27	김형동(金炯東)	2013. 12. 26	2014. 12. 28	1년	사천시
28	이채건(李採建)	2014. 12. 29	현 재		울산광역시

2. 고성군의 행정기구

1) 개요

행정기구란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형태의 제도와 조직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행정 조직 역시 환경 변화에 따라 증대 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확대 개편 되어왔다. 또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기구 개편이 있어 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시행된 미 군정은 일제 때의 행정기구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존속시켰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2) 고성군 행정기구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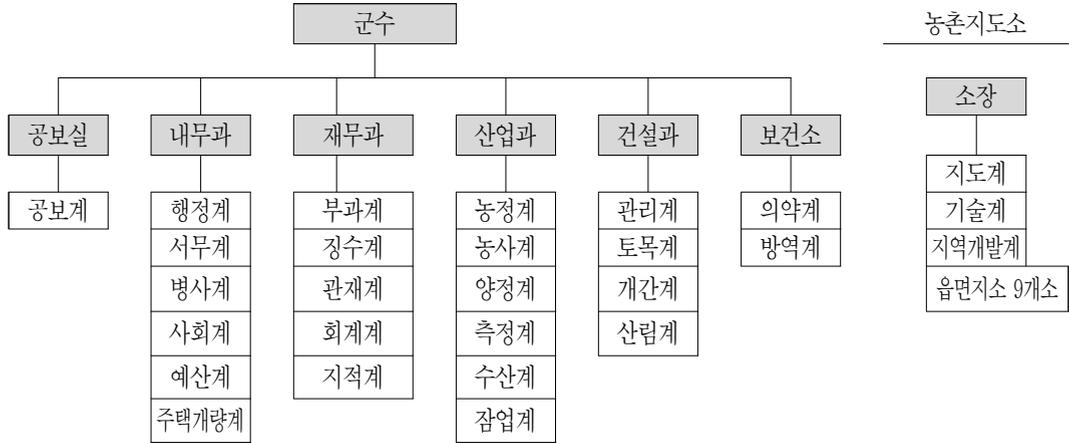
○ 고성군은 일제 말기인 1943년 1월에 초대군수가 부임하였고 해방후인 1945년 11월 13일에 초대 내무과장과 산업과장이 부임하였으며 1960년까지 내무과와 산업과 체제로 군정을 집행하여 왔다.

○ 1957년 6월 1일 농촌 부흥을 위한 고성군 농사교도소가 설립되었고 1962년 4월 1일 고성군 농촌지도소로 명칭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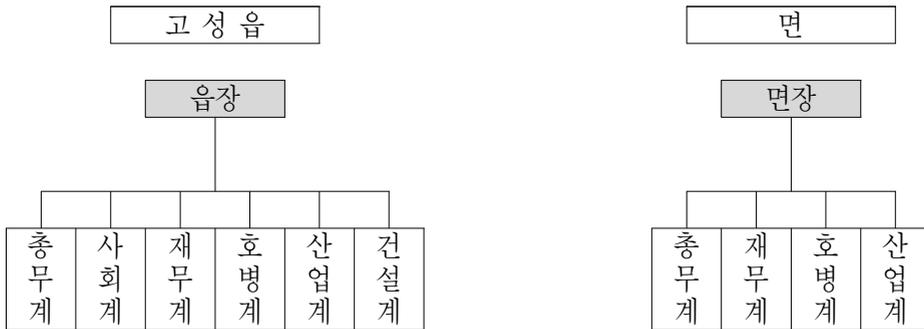
○ 1961년 12월 2일 지방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과를 신설하였고 1962년 1월 15일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건설과를, 동년 7월 16일에는 군정 홍보 전담기구인 공보실을 설치하였다.

○ 1963년 1월 1일 군민의 건강 검진과 질병의 예방, 진료를 위한 보건소가 설립되어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상당부분 갖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 1965년도 고성군 기구표(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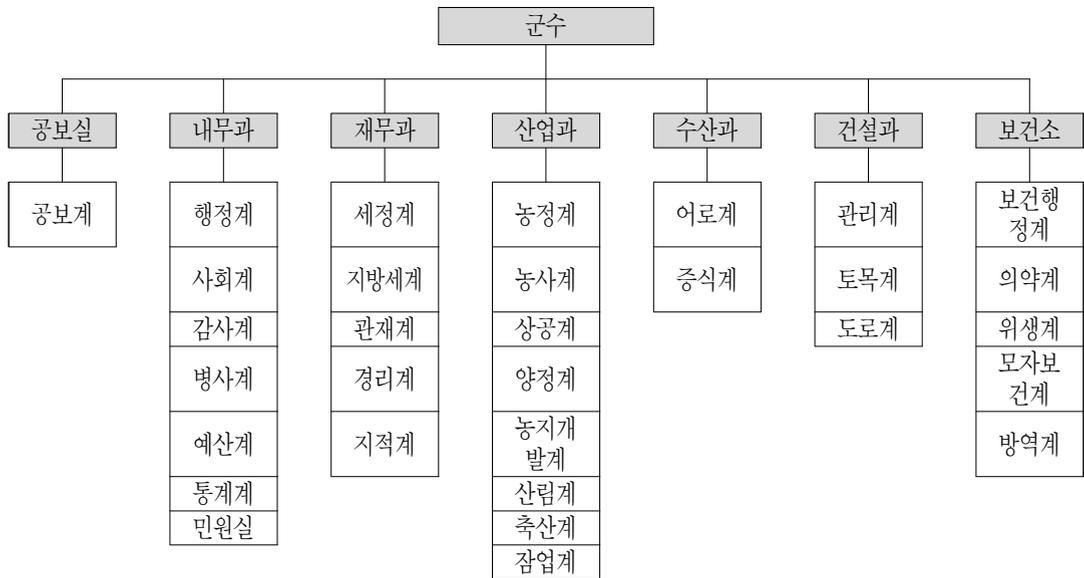


읍면기구



○ 1969년 1월 1일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동년 5월 22일 직제 개편에 의해 산업과를 농림과와 식산과로 분리하면서 당시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산림계를 농림과로 이관하였고 1970년 8월 28일 식산과의 수산계를 수산과로 승격시키면서 농림과와 식산과를 다시 산업과로 통합하였다.

○ 1970년도 고성군 기구표(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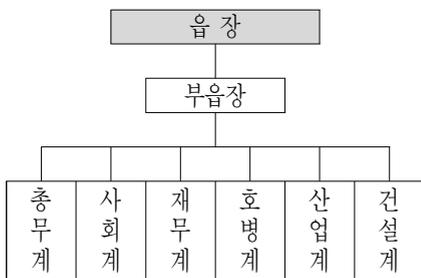


농촌지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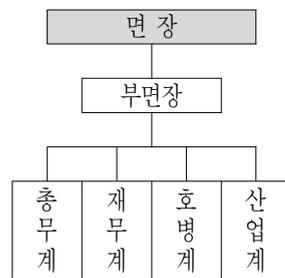


읍면기구

고성읍



면



○ 1970년 4월 22일 범국민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새마을계를 1972년 1월 22일 내무과에 설치하였다가 1년후인 1973년 2월 7일 새마을과로 승격되었고 하부조직으로 새마을계와 개발계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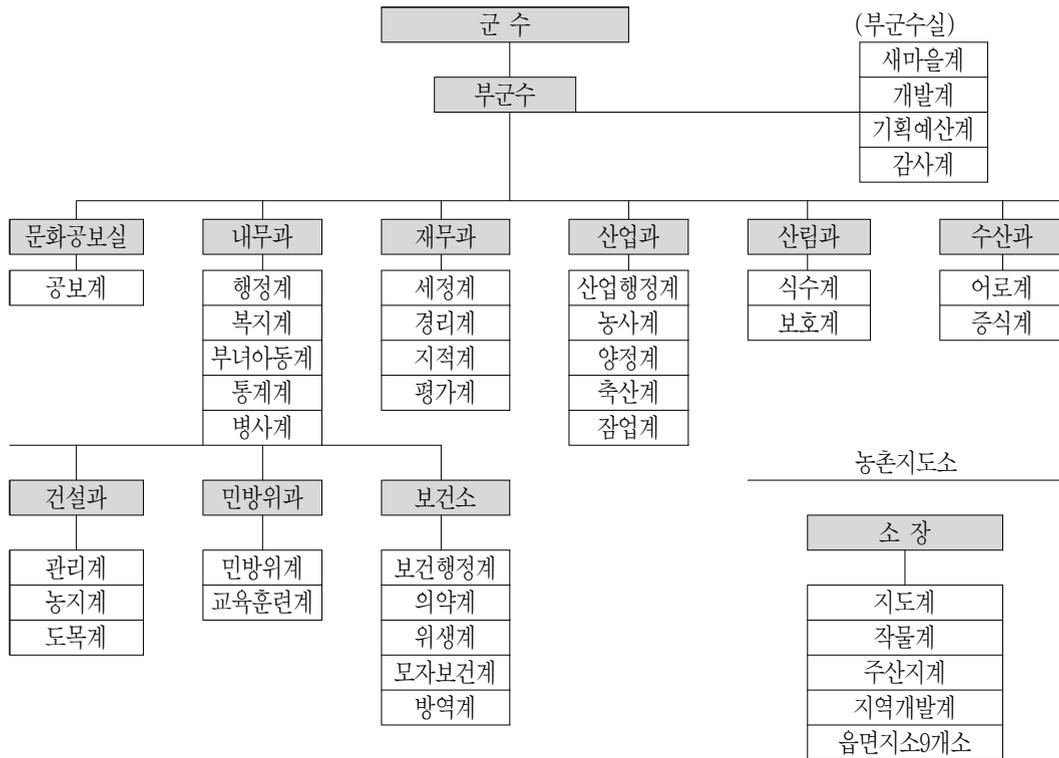
○ 1973년 9월 1일 당시 농어촌의 연료문제로 인하여 산림의 도, 남별이 성행되어 산림이

황폐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의 산림계를 산림과로 승격시키고 하부조직으로 식수계와 보호계를 두었다.

○ 1975년 1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부군수 제도가 시행되고 초대 부군수의 부임과 때를 같이 하여 새마을과를 부군수실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 하부조직으로 새마을계, 개발계, 기획예산계, 감사계를 두어 새마을운동의 추진력을 더 한층 강화시켰고

○ 1975년 9월 2일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당시 불안한 국,내외 정세에 자극 받아 국민의 자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방위과를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두었다.

○ 1975년도 고성군 기구표(표3)



○ 읍면 기구는 1970년도와 동일함.

○ 1976년 1월 24일 보건소 위생계가 내무과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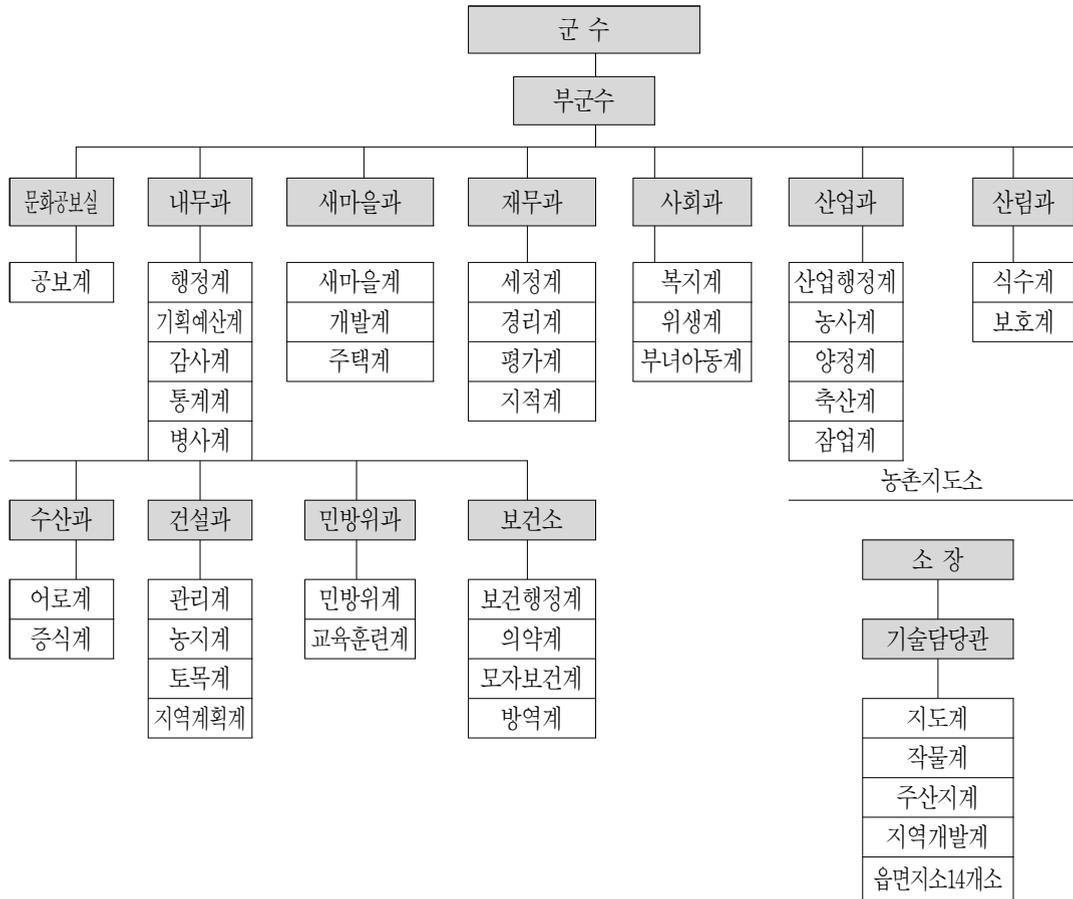
○ 농촌지도 업무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7년 4월 5일 농촌지도소장 아래 기술담당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후의 직제 변경 내용은 별도 고성군 농업

기술센터(구.농촌지도소)편에 신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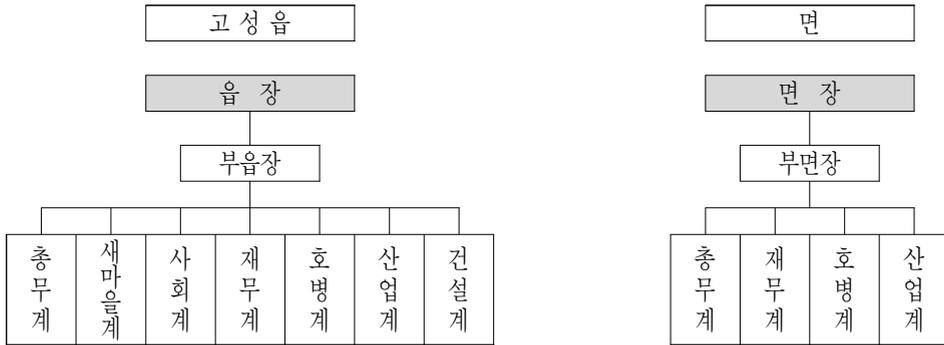
○ 1979년 5월 1일 부군수실을 해체하고 새마을과로 다시 환원하면서 새마을계, 개발계, 주택계를 하부조직으로 두었고 기획예산계와 감사계는 내무과로 복귀되었다. 또한 내무과의 복지계, 부녀아동계, 위생계를 분리시켜 사회과를 신설하였다.

※ 이후 이 장에서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조례”로, ‘동 조례 시행 규칙’은 “규칙”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은 “훈령”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 1980년도 고성군 기구표 (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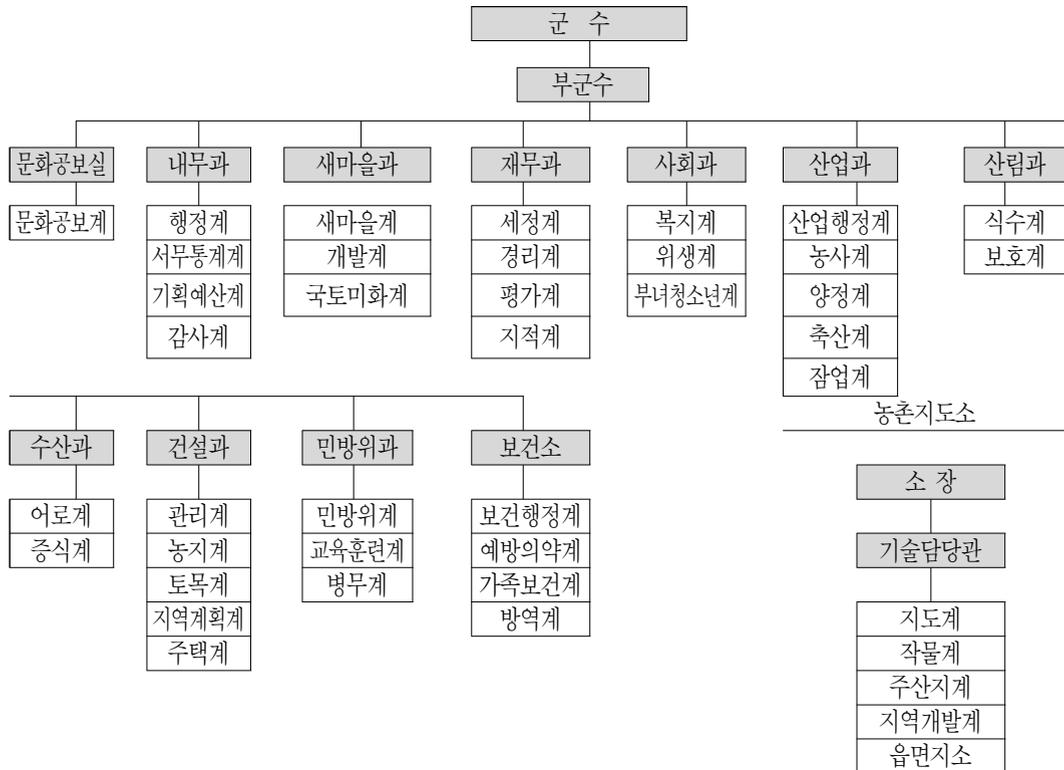
읍면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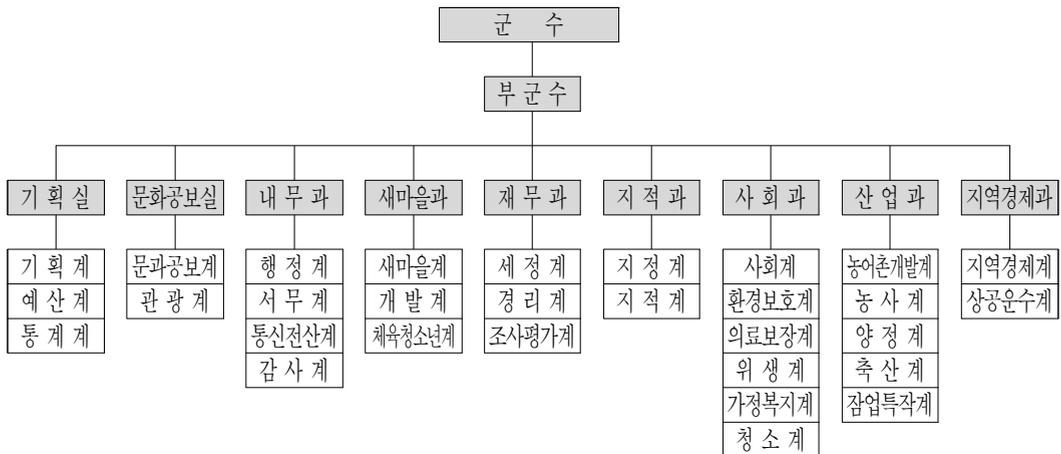
○ 1983년 10월 10일 규칙 제388호의 직제 개편에 의해 문화공보실의 공보계를 문화공보계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내무과의 통계계를 서무통계계로 변경하고 병사계를 민방위과로, 새마을과 주택계를 건설과로 각각 이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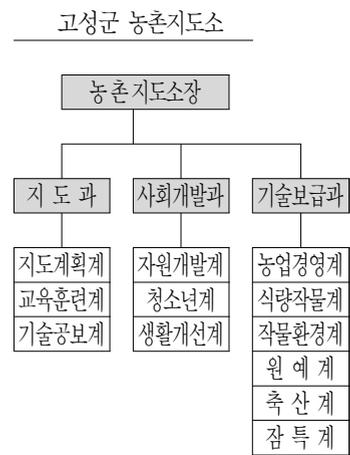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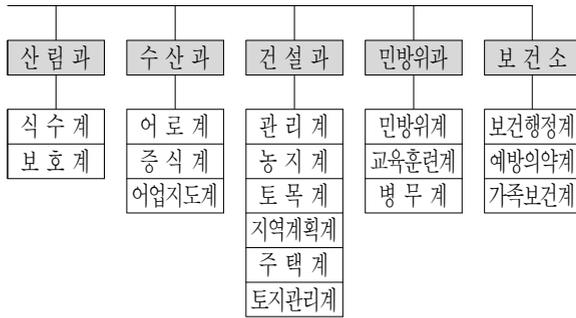
○ 1985년 4월 15일 새마을과에 국토미화계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7월 1일 규칙 제464호로 사회과의 부녀아동계를 부녀 청소년계로, 민방위과의 병사계를 병무계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 1985년도 고성군 기구표(표5)



- 읍면기구는 1980년도와 동일함.
- 1987년 1월 19일 규칙 제494호로 산업과의 잠업계를 잠업특작계로, 1988년 1월 21일 문화공보실에 관광계를 신설하고, 동년 2월 8일 규칙 제506호로 사회과의 복지계를 사회계로, 부녀청소년계를 가정복지계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 1988년 5월 24일 규칙 제521호로 기획감사실을 신설하여 내무과의 기획예산계와 감사계를 이관하고 서무통계계를 서무계와 통계계로 분리하였다가 2일후인 5월 26일 규칙 제524호로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실로 변경하면서 감사계를 내무과로 복귀시키고 내무과의 통계계를 기획실로 이관하였다.
- 1989년 3월 18일 규칙 제548호로 새마을과 국토미화계를 건전생활계로 명칭 변경하고 재무과에 세무조사계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9월 8일 규칙 제569호로 사회과에 환경보호계와 의료보장계를 신설하였다.
- 1990년 2월 15일 규칙 제579호로 재무과의 세무조사계를 폐지하면서 평가계를 조사평가계로 개편하고 건설과에 토지관리계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8월 28일 새마을과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명칭 변경하였다.
- 1990년 9월 18일 규칙 제596호로 지적과를 신설하여 재무과의 지적계를 이관하고 지적계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10월 29일 규칙 제618호로 내무과에 통신전산계를, 사회과에 청소계를 각각 신설하였다.
- 1990년 12월 1일 규칙 제622호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산업과의 경제 업무를 이관받아 하부조직으로 지역경제계와 상공운수계를 두었으며 동월 13일 규칙 제624호로 수산과에 어업지도계를 신설하였다.
- 1990년도 고성군 기구표(표6)





○ 읍면 기구는 1980년도와 동일함.

○ 1991년 4월 9일 규칙 제634호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여 사회과의 가정복지계를 이관 받고 부녀복지계를 두었으며 6월 28일 규칙 제647호로 기획실에 법무계를 신설, 동년 7월 23일 규칙 제653호로 환경보호과를 신설, 사회과의 환경보호계와 청소계 업무를 이관 받아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를 두었다. 동년 8월 24일 규칙 제659호로 도시과를 신설하여 건설과의 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 주택계 업무를 이관 받아 도시계, 토지관리계, 주택계, 수도계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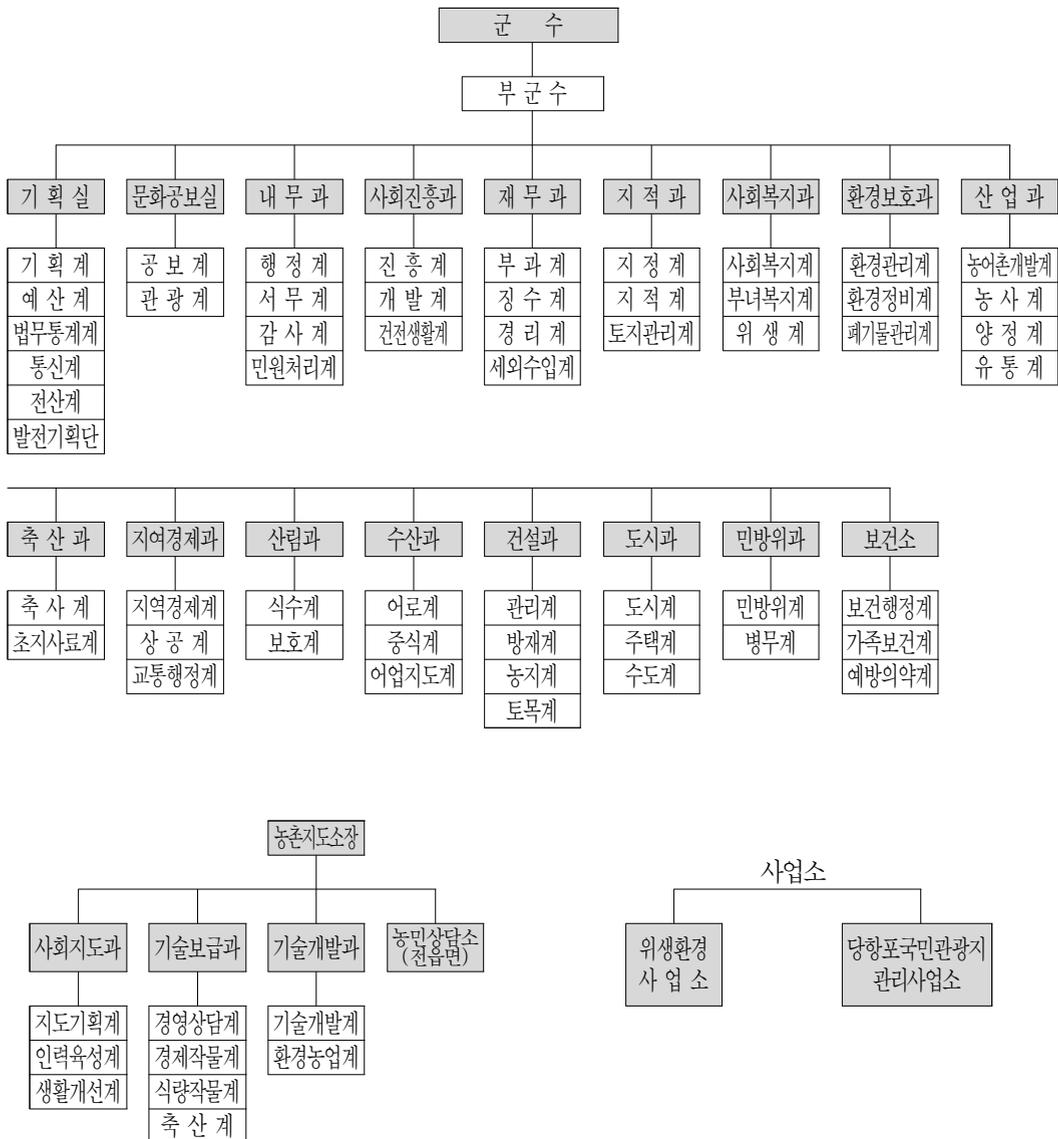
○ 1992년 5월 22일 규칙 제676호로 건설과에 방재계를 신설하고 동년 10월 29일 규칙 제685호로 축산과를 신설하여 산업과의 축산계를 이관 받고 초지사료계를 두었다.

○ 1993년 8월 20일 규칙 제685호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새마을계를 진흥계로, 체육청소년계를 건전생활계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농촌지도소 직제를 본청과 통합하여 민방위과 다음에 편제 하였으며 12월 17일 규칙 제722호로 내무과에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사회과의 의료보장계를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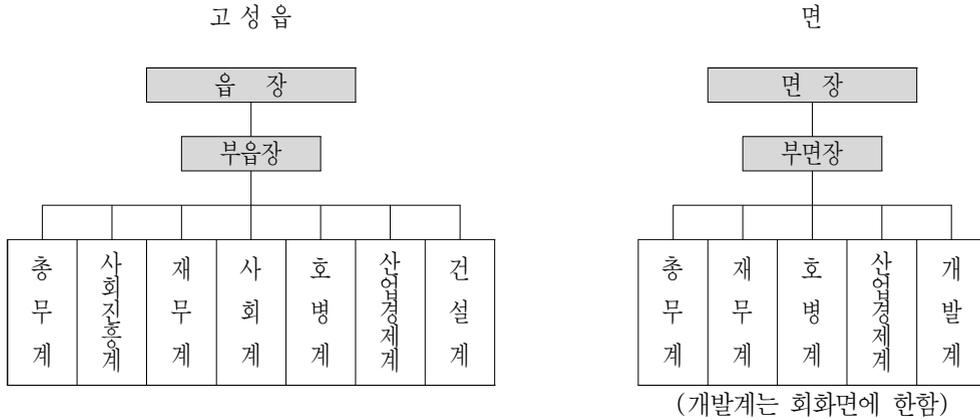
○ 1994년 6월 17일 규칙 제742호로 기획실의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합하여 법무통계계로, 내무과의 통진전산계를 기획실로 이관 하였다.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계를 공보계로, 재무과의 조사평가계를 세무조사계로,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계를 환경정비계로, 산업과의 잠업특작계를 유통계로, 지역경제과의 상공운수계를 상공계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도시과의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이관하고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가 흡수 통합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를 신설, 동년 11월 24일 고성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제1381호)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신설하였다.

○ 1995년 4월 27일 규칙 제766호로 재무과의 세정계를 폐지하고 부과계와 징수계를 신설하였고 동년 8월 8일 조례 제1445호로 기획실의 통신전산계를 통신계와 전산계로 분리하고 발전기획단을 신설하였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계와 위생계, 부녀복지계를 두었다. 또한 동년 8월 8일 고성군 당항포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제1447호)로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하부 조직으로 관리계를 두었다.

○ 1995년도 고성군기구표(표7)



읍면기구



○ 1996년 2월 16일 조례 제1465호 및 규칙 제791호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를 타 실과로 이관하였다.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변경 하면서 개발계를 신설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다. 기획실에 경영개발계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봉사계, 신설하였다. 기획실의 통신계와 전산계를 내무과로 이관하여 통신전산계로 통합하고, 건설과의 방재계를 폐지하면서 기술지원계를 신설하였다.

또한 보건소의 가족보건계를 가정보건계로, 문화공보실의 관광계를 관광체육계로, 사회복지과의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명칭변경하고 환경관리계를 환경계로, 환경정비계를 공해방지계로, 폐기물관리계를 환경미화계로, 축산과의 초지사료계를 낙농수의계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 1996년 6월 10일 조례 제1475호 및 규칙 제803호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면서 내무과의 감사계를 이관 받았고 내무과에 120기동대를 신설하였다. 문화공보실의 공보계를 문화공보계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 1996년 12월 20일 규칙 제811호로 수산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하였고, 지적과의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경제통상과의 상공계를 상공가스계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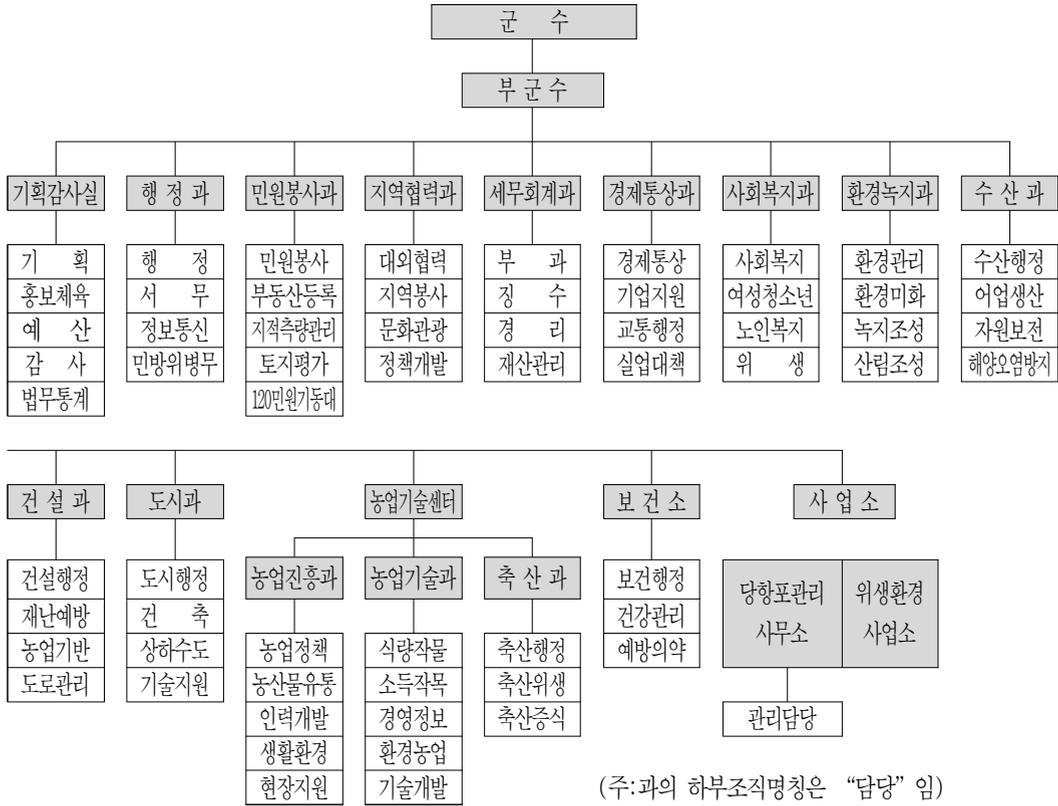
○ 1998년 9월 1일 조례 제1566호 및 규칙 제850호로 제1차 지방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오던 “계”의 명칭을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군 본청 2실 13과 53계를 1실 10과 43담당으로 대폭 축소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14개소의 농민 상담소를 폐지하였으며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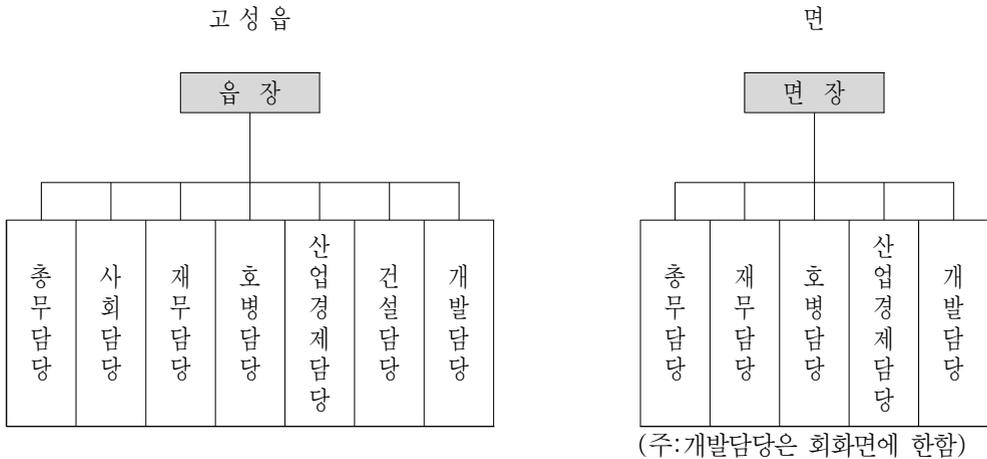
실과별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감사실의 경영개발계와 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홍보담당을 신설하여 하부조직으로 기획, 홍보체육, 예산, 감사, 법무통계담당을 두었다.
- ②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그 소관 업무를 타실과로 이관하였다.
- ③ 내무과를 행정과로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민원처리, 120기동대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로부터 민방위, 병무업무를 이관 받아 하부조직으로 행정, 서무, 정보통신, 민방위 병무담당을 두었다.
- ④ 지적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를 신설하여 민원봉사, 부동산등록, 지적측량관리, 토지평가담당과 120민원기동대를 두었다.
- ⑤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의 경영개발과 발전기획단을 이관 받아 대외협력, 지역봉사, 문화관광, 정책개발담당을 두었다.
- ⑥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담당을 두었다.
- ⑦ 경제통상과에 실업대책담당을 신설하여 경제통상, 기업지원, 교통행정, 실업대책담당을 두었다.
- ⑧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노인복지, 위생담당을 두었다.
- ⑨ 환경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환경녹지과로 하고 환경관리, 환경미화, 녹지조성, 산림조성담당을 두었다.
- ⑩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다.
- ⑪ 수산과에 수산행정, 어업생산, 자원보전, 해양오염방지담당을 두었다.
- ⑫ 건설과는 기술지원계를 도시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건설행정, 재난예방, 농업기반, 도로관리담당을 두었다.
- ⑬ 지역개발과를 도시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개발계를 폐지하고 건설과에서 기술지원 업무를 이관 받아 도시행정, 건축, 상하수도, 기술지원담당을 두었다.
- ⑭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소관 업무를 타 실과로 이관하였다.
- ⑮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 사회지도과와 본청 산업과를 통합하여 농업진흥과로 하고 농업정책, 농산물유통, 인력개발, 생활환경, 현장지원담당을 두었다.
 - 기술 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통합하여 농업기술과로 하고 식량작물, 소득작목, 경영정보, 환경농업, 기술개발담당을 두었다.
 - 본청 축산과를 이관 받아 축산행정, 축산위생, 축산증식담당을 두었다.

○ 1998. 9. 1. 제1차 기구조직 개편(표8)



읍면기구



○ 제1차 지방행정기구 조직개편 이후 1년여 동안 새로운 조직으로 군정을 집행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1999년 8월 1일 조례 제1599호로 제2차 지방행정 기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감사실의 홍보체육담당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였다.

②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행정담당을 행정지원담당으로, 민방위 병무담당을 민방위 기동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③ 민원봉사과의 지적측량관리담당을 지적측량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행정과에서 병무 업무를 이관 받아 병무담당을 신설하였으며 120민원기동대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였다.

④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⑤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의 홍보체육담당을 이관 받았으며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하면서 관광진흥담당과 관광개발담당을 신설하고 정책개발담당을 폐지하였다.

⑥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경제통상담당을 지역경제담당으로, 기업지원담당을 상공진흥담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⑦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을 사회보장담당으로, 여성청소년담당을 여성복지 담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이동청소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이관하였다.

⑧ 환경녹지과에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담당으로, 환경미화담당을 환경관리 담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⑨ 수산과 자원보전담당을 연안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⑩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을 건설지원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상담당을 신설하였다.

⑪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환경농업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농업진흥과에 농업생산담당을 신설하면서, 인력개발, 생활환경, 현장지원담당을 기술보급과로 이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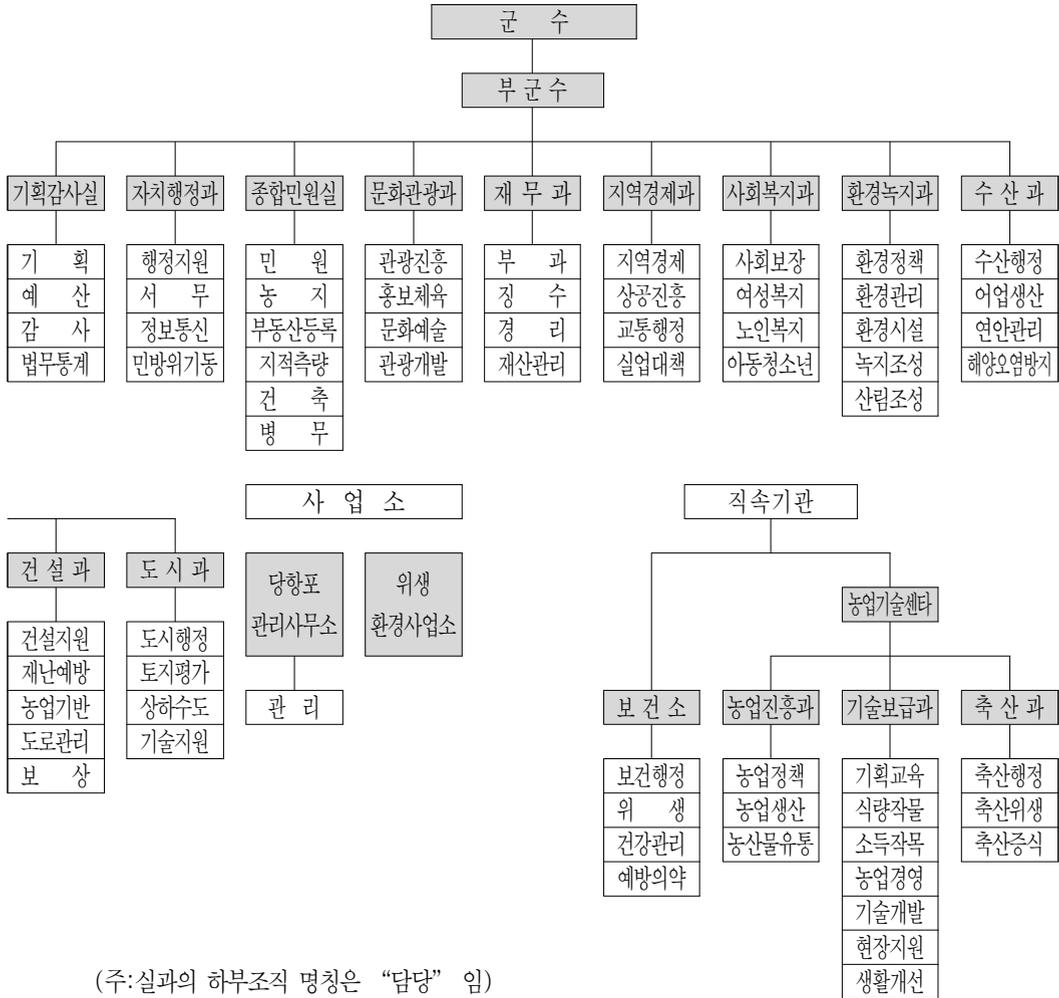
⑫ 읍면직제중, 고성읍과 회화면의 개발담당을 폐지하였다.

○ 1999년 12월 27일 규칙 제888호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기획교육담당을 신설하고 인력개발담당을 폐지하면서 경영정보담당을 농업경영담당으로, 생활환경담당을 생활개선담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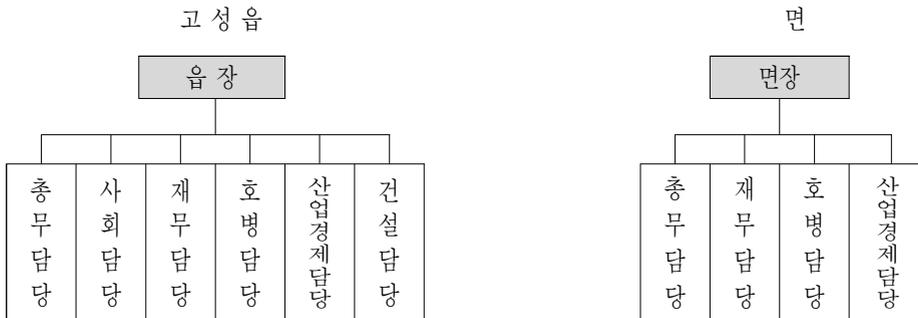
○ 2000년 8월 8일 규칙 제903호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을 신설하고, 지역협력담당을 폐지하면서 그 일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녹지과에 환경시설담당을 신설하였다.

○ 2000년 11월 25일 조례 제1666호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 변경하면서 토지평가 담당을 도시과로 이관하고, 도시과의 건축담당을 이관받았다.

○ 2000년도 고성군 기구표(표9)



읍면기구



○ 2001년 11월 10일 조례 제1703호로 현장민원 해결과를 신설하여 자치지원, 120기동, 현장민원담당을 설치하였고 종합민원실의 병무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민방위와 병무를 통합, 민방위 병무담당으로 변경하였다.

○ 2003년 1월 18일 조례 제1743호로 현장민원 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담당을 이관 받아 현장민원담당과 통합하여 민방위담당으로 하였다.

○ 2003년 11월 7일 조례 제1762호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 체육시설담당을 두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를 농업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농업정책, 농산물유통, 농산물수출, 인력육성, 생활개선담당을 두었고 기술보급과를 농업지원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농업지원, 농업기술, 환경농업, 원예작물, 특수작물담당을 두었다.

○ 2004년 5월 20일 조례 제1783호로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담당을 폐지하고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국제협력담당과 재외향우 담당을 신설하였고 종합민원실에 건축담당을 건축행정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건축지도담당을, 환경녹지과에 산지자원개발담당을, 해양수산과에 해양레저담당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농산물수출담당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공룡박물관운영담당을 각각 신설하였다.

읍면 조직중 하일,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면의 재무담당과 민원담당을 재무민원담당으로 통합하였다.

○ 2004년 7월 8일 조례 제1786호로 당항포관광지 관리사업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의 공룡박물관 운영담당을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상죽암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 2005년 3월 28일 조례 제1806호로 기획감사실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고 혁신분권담당을 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행정과에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고 재외향우담당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으로 이관하였다.

재무과에 과표담당을,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담당을 각각 신설하고 상공진흥 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환경녹지과를 환경과와 녹지공원과로 분리하여 환경과에 환경정책, 환경미화, 환경지도, 환경시설 등 4개 담당을, 녹지공원과에 녹지, 산림, 산지자원개발, 공원관리등 4개 담당을 두었으며 해양수산과 해양레저담당을 해양개발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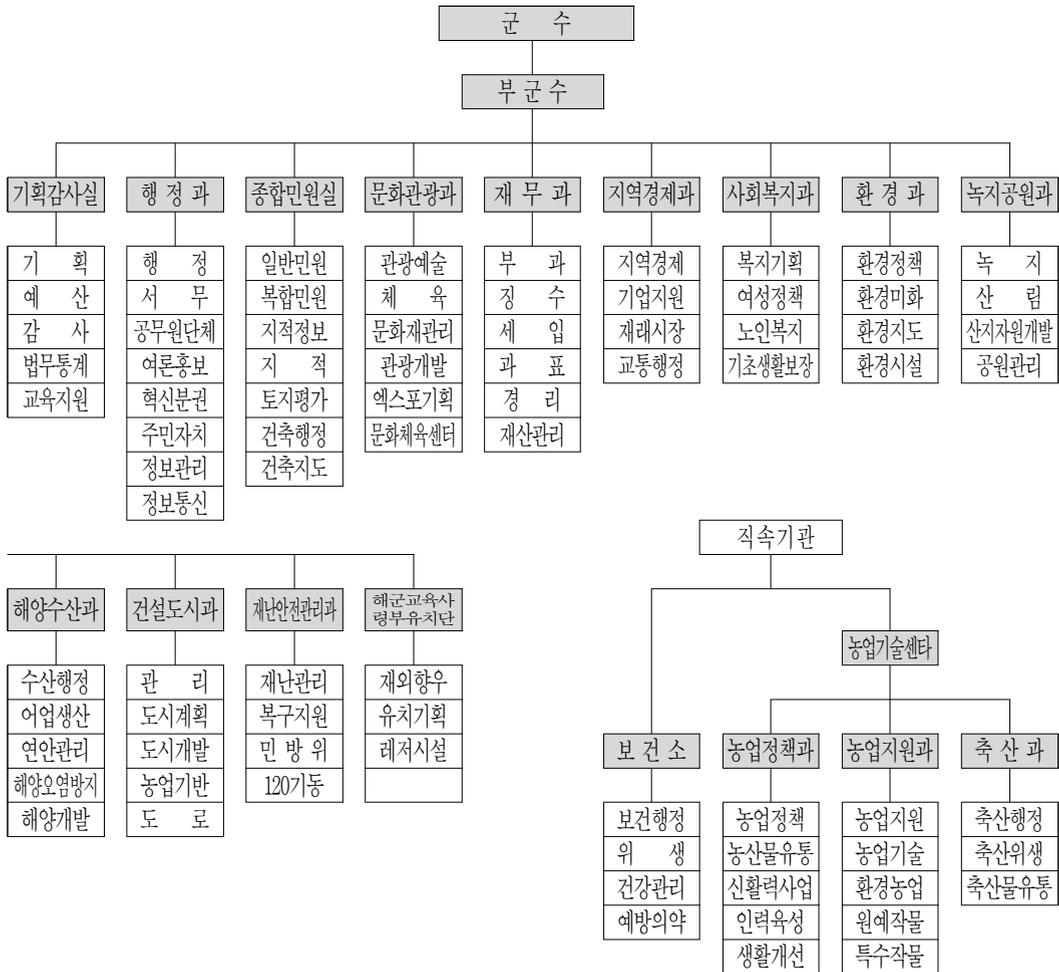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건설도시과로 하고 관리, 도시계획, 도시개발, 농업기반, 도로 등 5개 담당을 두었으며 상수도과 하수도담당을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이관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120기동대 등 4개 담당

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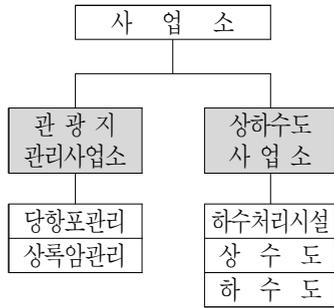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으로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외향우, 유치기획, 레저시설 등 3개 담당을 두었으며, 주민지원관리 자치지원담당을 행정과로, 120기동대와 민방위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로 각각 이관하였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전환하고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 3개 담당을 설치하였으며 폐기물시설담당을 환경과로, 체육시설담당을 문화관광과로 각각 이관하였고, 농업정책과에 신활력사업담당을 신설하고, 농산물수출과 농산물유통을 농산물유통담당으로 통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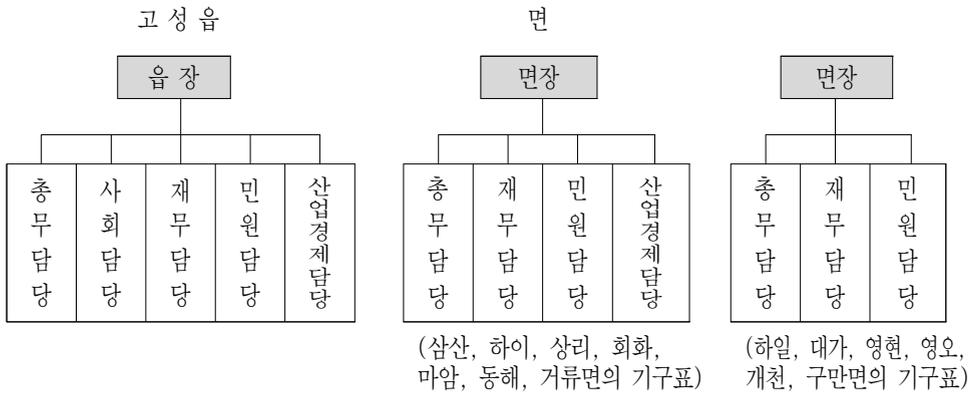
○ 2005년도 고성군 기구표(표10)



(주 : 실과의 하부조직 명칭은 “담당” 임)



읍면기구표



○ 2006년 1월 10일 조례 제1829호 및 규칙 제984호로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고 전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시켜 총무담당을 겸직하게 하였다.

○ 2006년 7월 11일 규칙 제991호로 행정과에 국제협력담당을 신설, 공무원단체담당과 주민자치담당을 폐지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특구추진담당을 신설, 재래시장담당을 폐지하고 농업지원과에 기술개발담당과 시설관리담당을 신설, 특수작물담당을 폐지하였다.

○ 2007년 1월 2일 조례 제1880호로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획조정,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120기동대를, 주민복지과에는 노인장애인, 여성아동, 자활고용담당을 두었고, 문화관광과에 엑스포기획담당을 폐지하였다.

지역경제과에 특구추진담당을 특구1담당과 특구2담당으로 분리 개편하고 재난안전과의 120기동대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하였으며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였다.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당향포관리담당과 상륙암관리담당을 폐지하고 관리담당, 시설운영담당, 기반조성담당을 두었고,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신설하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상륙암관리담당을 이관 받아 운영담당과 관리담당을 신설하였다.

고성읍에 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에 재무담당과 민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재무민원담당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 2008년 2월 1일 조례 1918호로 기획감사실에 재외향우담당을 신설, 행정과에 후생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서무담당을 폐지하였으며, 재무과의 징수담당, 과표담당, 재산관리담당을 세입담당, 과표관리담당, 재산담당으로 개편하였고,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건축행정담당을 폐지하였다.

주민생활 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총괄지원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자활지원담당, 기초생활담당을 두었으며 주민복지과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장애인담당으로 개편하였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담당을 문화재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에 산업단지 조성담당을 신설하면서 특구1담당과 특구2담당을 특구지원과로 이관하였으며 건설도시과에 관리담당을 건설행정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폐지하고 특구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특구1담당, 특구2담당, 지역개발담당, 시설지원담당을 두었다.

농업정책과에 농정기획, 생명환경 농업정책, 자연농업 원예담당을 신설하고, 농업정책, 신활력사업, 생활개선담당을 폐지하였으며, 농업지원과에 생명환경농업지원, 고성쌀생산, 자연농업 자재, 토양환경, 신기술개발, 생활개선담당을 신설하고 농업자원, 환경농업, 원예작물, 기술개발담당을 폐지하였고 축산과에 생명환경축산담당을 신설하고 축산행정담당을 폐지하였다.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주민생활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 2008년 7월 9일 조례 제1926호로 기획감사실의 재외향우담당을 향우담당으로 변경하고 행정과에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고 혁신분권과 국제협력담당을 폐지하였다.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고 종합민원실에 지적담당을 신설하고 건축허가와 건축지도담당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였으며 해양수산과에 해양개발담당을 폐지하였다.

주민생활과는 주민복지과와 통합하면서 총괄지원, 서비스연계, 통합조사관리,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장애인담당을 설치하였고, 건설도시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재난과와 도시개발과로 개편하였으며 건설재난과에 건설행정, 재난관리, 복구지원, 농업기반, 도로, 민방위담당을 두었고 도시개발과에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지도담당을 두었다.

특구지원과에 남해안시대 담당을 신설하고 지역개발담당을 폐지하였고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농업정책과의 자연농업원예담당을, 농업지원과의 토양환경농업담당을 각각 이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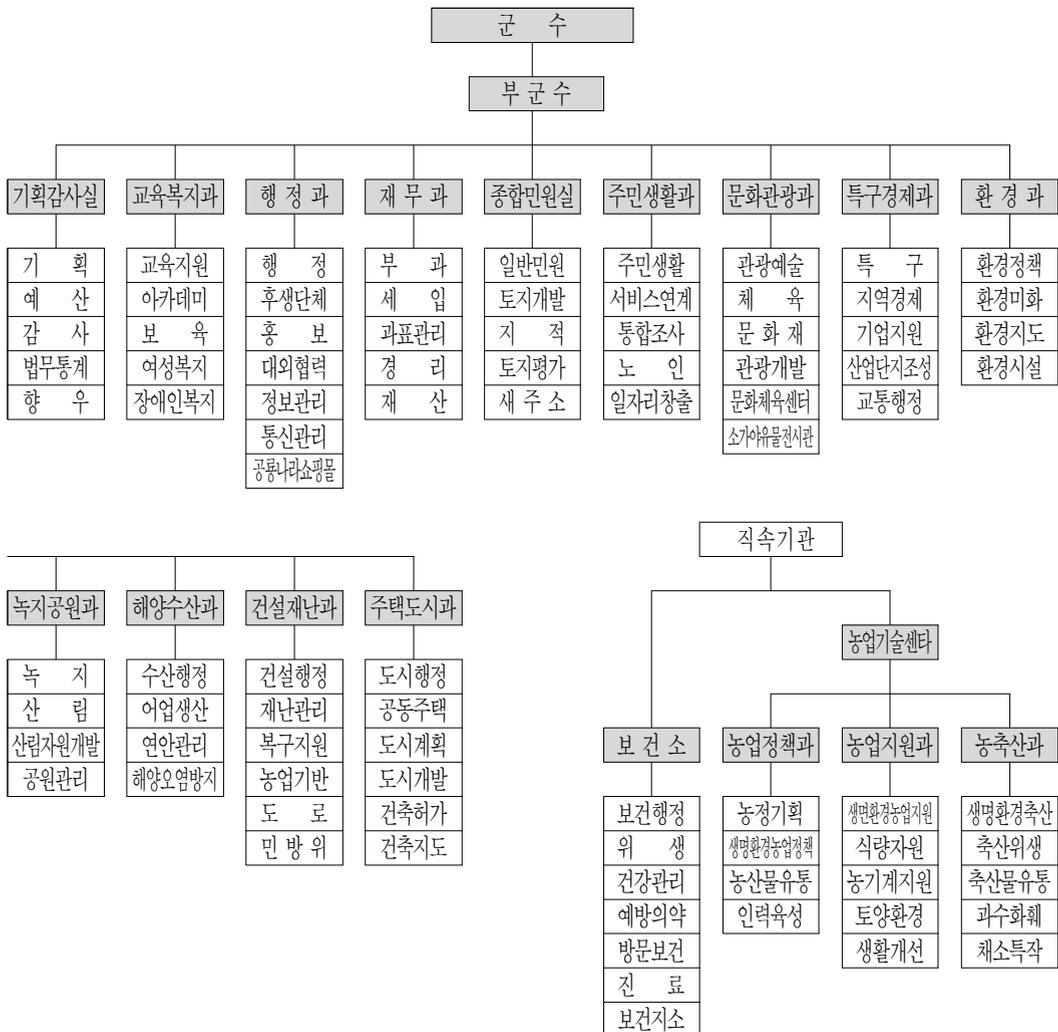
관광지관리사업소를 관광지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면서 해양레포츠담당을 신설하고 읍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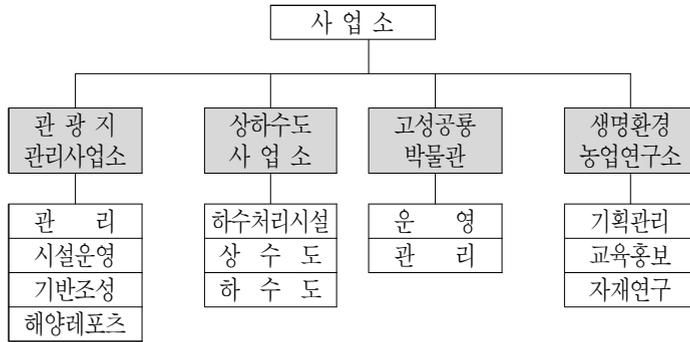
제중 삼산면과 상리면에 주민생활 담당을 폐지하였다.

○ 2010년 8월 2일 조례 제1989호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하면서 교육지원, 아카데미, 보육 담당을 신설하고 주민생활과로부터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담당을 이관 받았으며 주민생활과는 총괄지원담당을 주민생활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였고, 특구지원과를 폐지하면서 지역경제과를 특구경제과로 개편하고 특구담당, 지역경제, 기업지원, 산업단지조성, 교통행정담당을 두었고, 도시개발과를 주택도시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공동주택담당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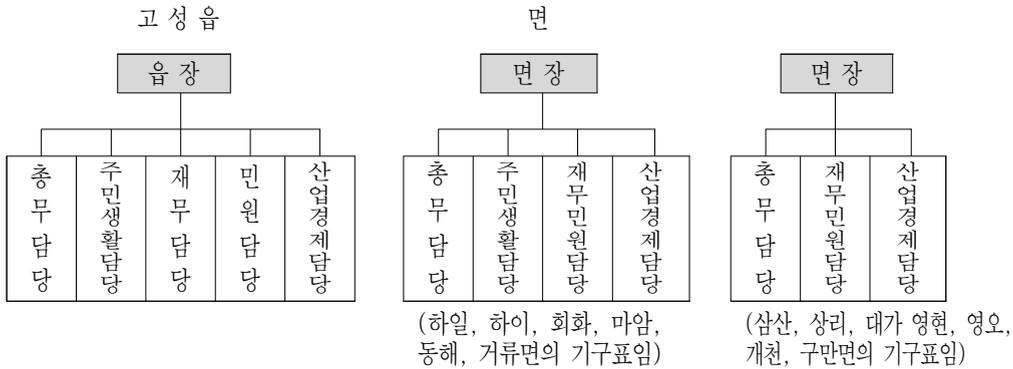
사업소에 생명환경연구소를 신설하여 기획관리, 교육홍보, 자재연구담당을 두었다.

○ 2010년도 고성군 기구표(표11)





읍 면 기 구 표



○ 2011년 4월 8일 조례 제2021호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엑스포지원과를 신설하여 총무, 총괄기획, 홍보지원, 운영담당을 설치하였다.

○ 2012년 1월 9일 해양수산물과 해양오염방지담당을 해양보건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 2012년 7월 2일 조례 제2076호로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담당을, 종합민원실에 개발행위담당과 농산지관리담당을 각각 신설하고, 보건소의 위생담당과 주택도시과의 건축허가담당, 건축지도담당을 이관 받았으며, 주택도시과는 종합민원실의 새주소담당을 이관 받아 정보공간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주민생활과의 일자리창출담당을 특구경제과로 이관하였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문화예술, 관광진흥, 문화재, 체육진흥, 체육시설 담당을 설치하였고 건설재난과를 건설교통과로 개편하고,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교통행정 담당을 두었으며 재난방재과를 신설, 재난방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 담당을 두었다.

엑스포지원과를 폐지하였으며 사업소의 생명환경연구소를 농업기술센터 생명환경 농업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박물관사업소로 개편하면서 문화관광체육과의 소가야유물전시관을 이관 받아 공룡박물관, 고성박물관, 군립공원 담당을 두었다.

교육복지과 아카데미담당을 평생학습담당으로, 주민생활과의 서비스연계담당을 희망복지

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담당을 신설하였다.

농업정책과의 생명환경 농업정책을 생활자원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농업지원과의 생명환경 농업지원, 토양환경, 생활개선담당을 폐지하고 친환경 인증담당을 신설하였다.

농축산과는 과수화훼, 채소특작 담당을 농업지원과로 이관하고 농업경영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보건소의 보건지소담당을 폐지하였다.

읍면 직제중 고성읍에 개발 담당을 신설하였다.

○ 2013년 7월 31일 조례 제2119호로 재난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재난방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바꾸고 행정과 공릉나라 쇼핑몰 담당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다.

○ 2014년 7월 1일 취임한 신임군수는 선거시의 공약사항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13일 조례 제2156호로 직제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 향우담당을 이관 또는 폐지하고 균형발전, 교육평생담당을 신설하였다.

②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 건축지도담당을 통합하여 건축민원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고, 토지평가담당을 재무과로 이관하고 지적재조사담당을 신설하였다.

③ 행정과는 기획감사실의 향우업무를 이관받아 대외협력담당과 통합하여 향우대외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④ 재무과는 종합민원실에서 이관 받은 토지평가담당을 설치하였다.

⑤ 교육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명칭변경하면서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담당을 설치하고, 주민생활과의 노인지원담당을 이관받아 노인복지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⑥ 주민생활과는 주민생활담당을 폐지하고, 노인지원담당을 행복나눔과로 이관하였으며,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였다.

⑦ 문화관광체육과는 체육행정담당을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⑧ 특구경제과를 항공산업경제과로 명칭변경하고, 산업단지조성담당을 폐지하면서 항공산업담당과 발전소지원담당을 신설하였다.

⑨ 안전총괄과의 안전총괄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⑩ 주택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도시행정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다.

⑪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생명환경축산담당을 축산행정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⑫ 생명환경농업과의 기술지원담당과 자재관리담당을 폐지하고 환경농업담당, 미래농업담당을 각각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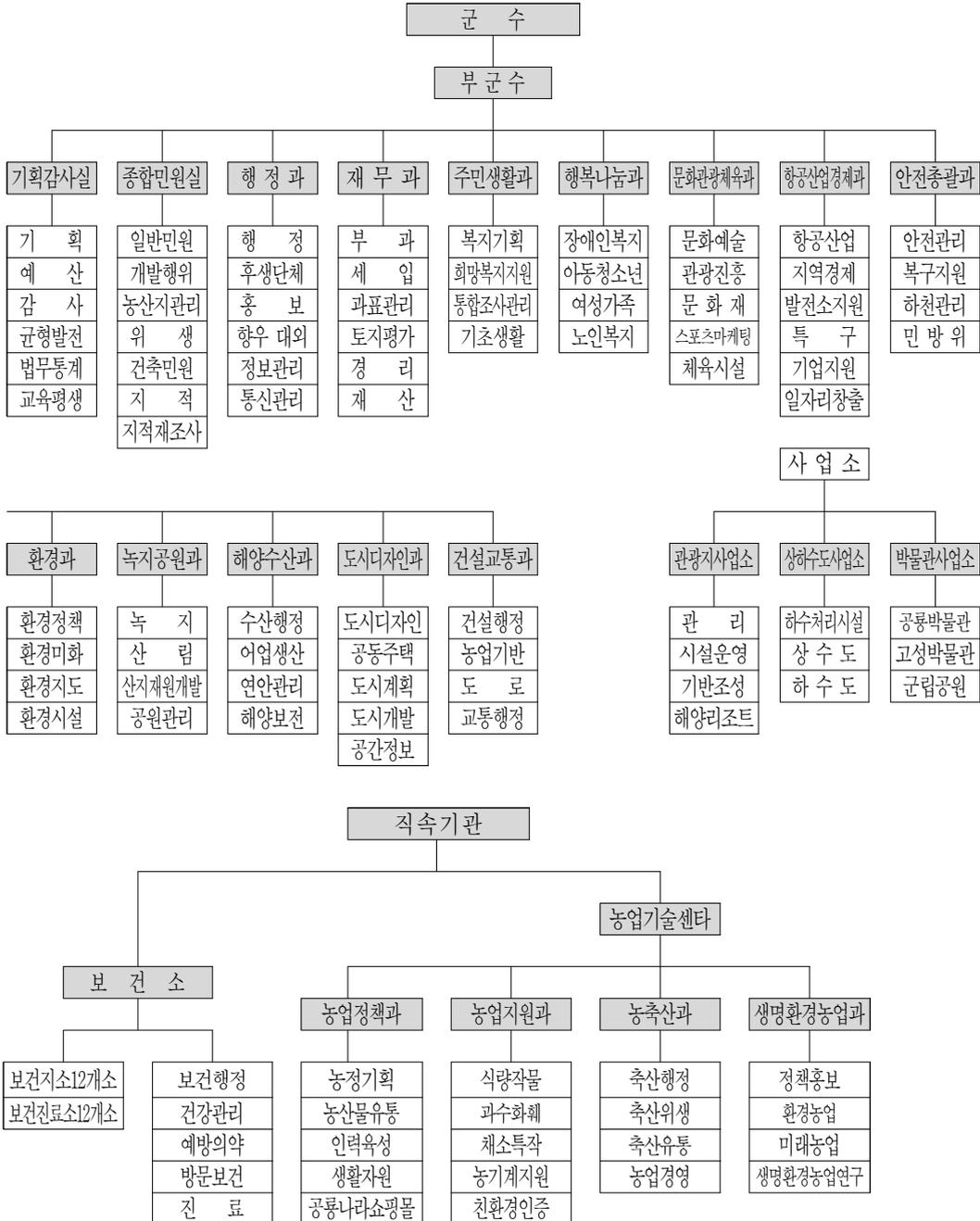
⑬ 한시 기구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⑭ 읍면 조직중 고성읍을 제외한 13개면의 재무민원담당을 민원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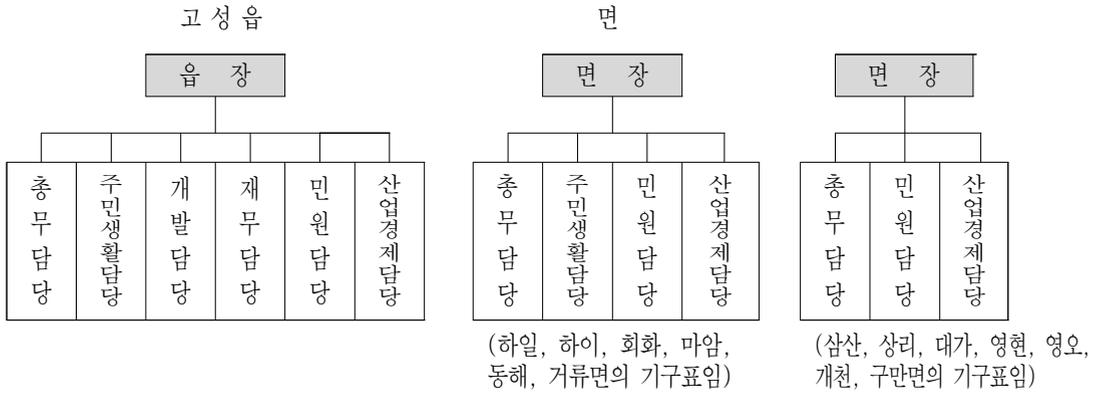
이로서 본청의 2실 12과 70담당이 2실 12과 1단 69담당으로 개편되었다.

(보기: 고성군 행정과 인사발령 대장. 보존문서)

○ 2014년도 고성군 기구표(표12)



읍면기구표



3. 고성군의 산하기관

1)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구 농촌지도소)

(1) 연혁과 기구변천

○ 1957년 6월 1일 고성군 농사교도소를 설치하고 고성읍 서외리 77번지(현 위치)에 사무실을 확보하였다. 당시 상급기관으로 중앙에는 농사개량원 도에는 도농사개량원이 있었다.

○ 1958년 5월 9일 초대 고성군 농사교도소장(서리)을 임명하였고 그 직은 교도원이었으며 일반직원은 촉탁직이었다.

○ 1962년 1월 1일 소장(서리)을 포함한 직원4명 전원을 고성군 산업과로 전보 발령하였다.

○ 1962년 3월 21일 제정공포된 농촌진흥법에 의거 중앙에 농촌진흥청이 발족되고 지방에는 도지사 소속하에 도 농촌진흥원을, 시군에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발족하였다.

○ 1962년 4월 1일 고성군 농사교도소를 고성군 농촌지도소로 명칭 변경하고 산업과에 근무중인 소장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복귀시키면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였고 교도원직을 지도직으로 전환,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지도관보로 승진시켰으며 직원은 농촌지도사 3명, 농촌지도사보 3명, 잠업지도원 3명, 축산지도원 2명, 생활지도사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고성군 농촌지도소가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하부조직은 지도계, 기술1계, 기술2계를 두었으며 계의 책임자는 주무로 명하였다.

○ 1964년 4월 20일 상리, 영오, 회화, 거류면에 지소를 설치하고 그 책임자를 주임으로 명하였다.

○ 1965년 4월 1일 기술1,2계를 기술계로 통합하고 지역개발계를 신설하였다.

○ 1965년 6월 28일 하일, 영현, 개천, 동해면과 본소 직할지소 등 5개의 읍면지소를 신설하였고 그 책임자를 주무에서 지소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였다.

○ 1968년 9월 1일 기술계를 폐지하고 작물계, 주산지계를 신설하였으며 한우 단지에 주재지도사를 두었다.

○ 1976년 6월 21일 마암, 대가면에 지소를 설치하고 직할지소를 고성읍 지소로 전환하였다.

○ 1977년 4월 5일 농촌지도소장 아래 중간관리자인 기술담당관 제도가 시행되었다.

○ 1978년 9월 13일 삼산면 지소를, 1979년 2월 12일에 하이면 지소를, 동년 5월 18일 구만면 지소를 설치함으로써 군내 14개 전읍면에 지소 설립을 완료하였다.

○ 1989년 4월 15일 고성군 농촌지도소의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본소에 12개계를 설치하고 14개읍면에는 지소를 폐지하는 동시에, 고성읍을 제외환 13개면에 주재지도사 근무 체도를 시행하였다.

○ 1989년 8월 16일 고성군 농촌지도소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건평652m²)을 준공하였다.

○ 1990년 1월 1일 농촌지도소의 직제 개편을 통해 기술담당관 제도를 폐지하고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 등 3개과를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12개계를 두었다.

○ 1991년 4월 24일 전읍면 주재지도사 근무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1992년 8월 24일 농민상담소를 직제화 하였다.

○ 1995년 1월 1일 직제 개편을 통하여 지도과를 사회지도과로, 사회개발과를 기술개발과로 명칭 변경하고 3과 9계 체제로 축소 개편하였다.

○ 1998년 9월 1일 제1차 지방행정기구 조직 개편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전읍면에 설치된 농민상담소 14개소를 폐지하였으며 군 본청의 산업과와 축산과를 인계 받아 5과 18계가 3과 13담당으로 대폭 축소 개편되면서 고성군 농촌지도소의 기관명칭이 36년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의 기구 변천은 고성군편에 함께 신는다.

(2)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농촌지도소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업무를 집행하였는바 년대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1960년대

○ 일반작물 분야

벼10 a 당 290~350kg 증산을 위한 적기이앙과 심경, 표준시비 지도, 뽕나무심기, 누에치

기, 논두렁 콩심기 등.

○ 원예 분야

김장채소 및 유료작물 재배지도와, 석회시용 수량 비교 전시

○ 축산 분야

자급사료 생산지도와 품종개량, 우량목초 전시포 운영

○ 인력육성 분야

4-H운동 확대와 4-H과제 이수 지도, 마을단위 4-H 육성과 농민교육, 자원지도자 육성

○ 생활개선 분야

생활개선 구락부 육성과 농촌영양 사업, 절미저축 등.

② 1970년대

○ 일반작물 분야

벼 신품종 확대 보급, 보은 절충못자리 지도, 2조,5조 병목식등의 이앙 방법 개선지도, 통일계통벼 유신 밀양 23호 확대재배 등으로 녹색혁명을 통한 주곡 자급 달성, 토양 정밀 검사와 병해충 예찰, 방제지도.

○ 원예 분야

약초, 김장채소, 특용작물, 유료작물(참깨, 들깨, 땅콩등) 재배 기술지도.

○ 축산 분야

초식가축 시범마을 육성과 한우 비육지도, 서강(고구마)사료 생산과 섬바디 재배 지도.

○ 인력육성, 생활개선 분야

60년대 업무와 동일하게 추진

③ 1980~90년대

○ 일반작물 분야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교육, 특히 부녀자 농기계 교육 강화. 벼 기계이앙과 주수 확보 지도. 보리 휴립 로타리 파종. 벼품종 비교지도포 운영. 벼우량 품종 보급(진주, 동진, 상풍벼)

○ 원예 분야

토마토 억제재배 및 무가온 축성재배, 고추 밀식재배와 풋고추 시설재배, 물커튼 하우스 재배기술 지도, 딸지 축성재배, 단감, 참다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재배 기술지도.

○ 축산 분야

한우 품종 개량과 젖소 사육지도, 돼지 3원 교잡종 보급과 육우, 거세육 사육 지도, 청예 옥수수 보급.

○ 인력육성 분야

마을단위 및 읍면단위 새마을 청소년회 육성, 영농4H, 학생4H, 특수 4H 등 직능단위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 새해영농교육,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경영 정보교육.

○ 생활개선 분야

농가부역개량, 메탄가스 활용지도, 농번기 탁아소 운영, 생활개선회 종합시범마을육성, 농촌여성 일감갓기와 전통생활 문화 전승

④ 2000년대

○ 일반작물 분야

벼 직파재배 및 어린묘 기계이앙 지도, 녹비 작물(자운영) 파종, 친환경 농업과 생명환경 농업지도.

○ 원예 분야

딸기 고설재배, 블루베리 재배 기술지도, 수출농작물(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가지) 재배지도.

○ 축산 분야

가축분뇨 활용과 양질 조사료 생산지도, 가축 질병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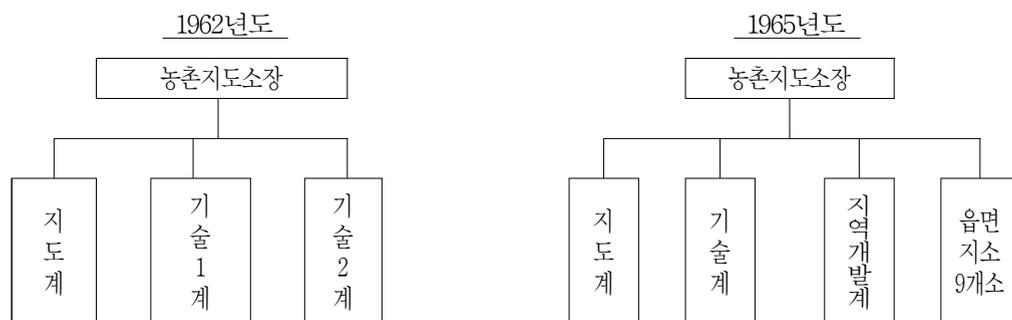
○ 인력육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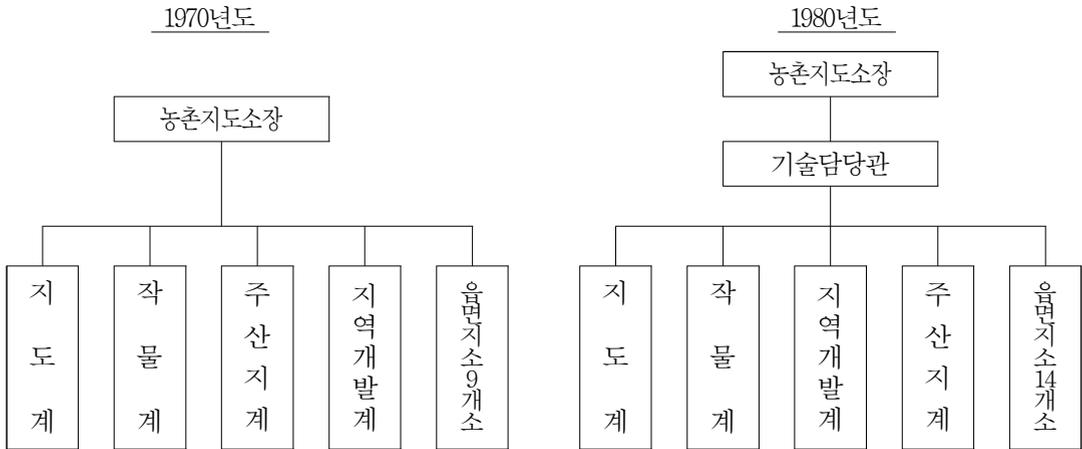
귀농, 귀촌 지원사업과 농업인 대학 개설.

○ 생활개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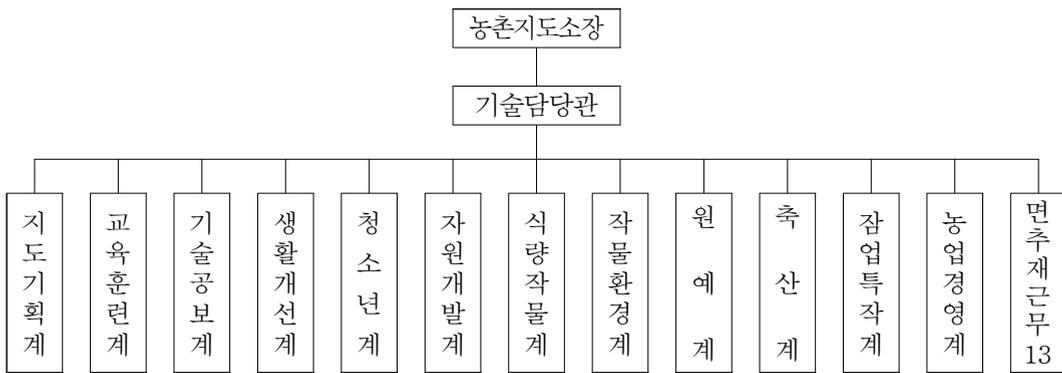
향토음식 맥 잇기와 농촌문화전승, 환경보전 실천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편이 장비지원.

(3) 농촌지도소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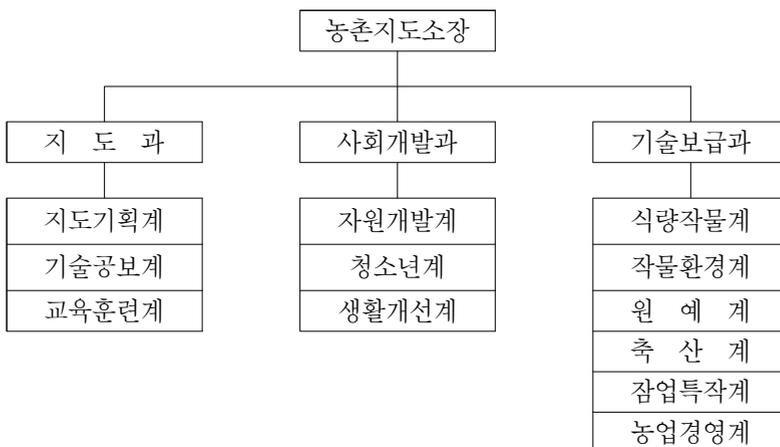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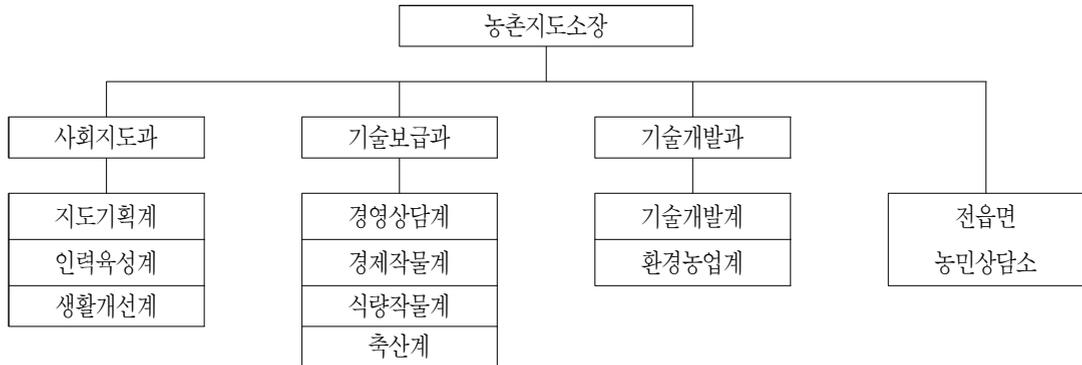
1989. 4. 15 직제개편



1990. 1. 1 직제개편



1995. 1. 1 직제개편



(보기: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보존문서)

2) 고성군 보건소

(1) 설치 근거

○ 1956년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보건소법” 이 제정 공포되고 1958년 6월 30일 “보건소법 시행령” 이, 동년 12월 9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1962년 9월 24일 법률 제 1156호로 “보건소법” 을 전면 개정하여 시·군 보건소를 지방의 보건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을 확립시켰다.

○ 현행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법률명을 “지역보건법” 으로 명칭 변경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고성군 보건소 연혁

○ 1963년 1월 1일 고성군 보건소가 설립되고 보건소장과 하부조직으로 의약계와 방역계를 두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사무실은 고성읍 성내리 72-42번지에 두었다.

○ 1966년 1월부터 당시 국가적으로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였던 가족계획 업무를 지도 계몽하기 위하여 임시직원인 가족계획지도원을 임용, 보건소와 읍면에 근무케 하였다. 읍면은 파견근무 형태였다. 그 외 필요한 직원들 역시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였고 기구조직은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위생계, 모자보건계등 5개계가 구성되었다.

○ 1967년 6월부터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요원을 임시직원으로 임용하여 전읍면에 파견근무시켰다. 그후 모자보건요원은 분만개조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1969년 3월 1일 전읍면의 가족계획계몽원, 결핵관리요원, 분만개조요원을 파견근무

형태에서 주재근무 형태로 변경하였다.

○ 1971년 1월 분만개조요원의 명칭을 모자보건요원으로 다시 환원시켰고 동년 5월 보건소에 분만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1977년 1월 1일 임시직원 신분인 가족계획계몽원,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요원을 잡급직원(7종5율)으로 임용하므로써 직종이나 근무년수에 따라 월 급여액의 차등을 두었으며 상리, 영오, 구만, 회화, 거류면등 6개면에 주재근무 형태를 보건지소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 1981년 9월 15일 잡급직원 신분이었던 가족계획계몽원,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요원 전원을 정규공무원(9급 지방보건기원보시보)으로, 약사감시업무 잡급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되었고 호봉 역시 그 동안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산정 비율에 따라 호봉 책정되어 잡급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기양양책을 시행하였다.

○ 1985년 6월 1일 고성읍을 제외한 13개면에 보건지소를 개설하고 진료원을 추가모집하여 면 보건지소의 의료 기능을 보강하였다.

○ 1988년도에는 면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를 신규 배치하여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건진료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 보건소 개청 당시의 구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임시사무실을 구 농촌지도소 건물로 옮긴후 당초 위치에 1988. 6. 17 대지 766m², 건축면적 271m², 지하1층, 지상2층, 연건축면적 586m²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2000년 1월 10일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미흡함이 대두되어 고성읍 대동리 4번지 만림산 기슭에 부지 3,969m², 건축면적 869m², 지하2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연면적1,348m²의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군민들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2007년 4월 3일 개천면 보건지소와 영오면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영오면 연당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영천통합보건지소를 개설하였다.

(3) 보건소의 법정업무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법정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 ②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 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 ④ 노인보건사업

- 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⑥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⑦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⑧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조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⑩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⑪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⑫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⑮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 사업
- ⑯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인력 현황

(2014년말 현재)

구 분	정 원	현원				결원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 관 수(개소)	-	25	1	12	12	-	
의료인력(명)	84	84	38	34	12		
일반직	소계	57	57	31	14	12	
	4-5급	1	-	-	-	-	-
	5급	1	2	2	-	-	-
	6급	8	26	9	5	12	-
	7급	16	24	16	8	-	-
	8급	27	4	3	1	-	-
	9급	4	1	1	-	-	-
전문직 (공중보 건의사)	소계	27	27	7	20	-	-
	일반의사	16	16	3	13	-	-
	치과의사	3	3	2	1	-	-
	한의사	8	8	2	6	-	-

○ 보건소 의료 활동

0 진료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2년도		2013		2014	
	진료인원	수입액	진료인원	수입액	진료인원	수입액
계	99,191	1,236,728	94,669	1,208,287	99,168	1,299,153
보건소	13,996	153,481	12,219	165,594	13,704	140,534
보건지소 (12개소)	38,149	649,769	42,520	640,391	47,585	737,897
보건진료소 (12개소)	47,046	433,478	39,930	402,302	37,879	420,722

0 보건 민원 처리

(단위 : 건)

구분	2012년도	2013	2014
채용신체검사서등 제증명발급(9종)	7,588	7,480	8,887

0 면 보건지소별 진료현황

보건지소명	소재지	신축년월일	연 진료 인원		
			2012	2013	2014
삼산	삼산면 미룡리	2005. 3. 5	2,565	2,943	2,538
하일	하일면 학림리	2009. 9.18	3,595	4,120	3,758
하이	하이면 덕호리	2003. 6.30	1,461	2,482	2,519
상리	상리면 척번정리	2002. 2. 8	2,625	2,796	3,526
대가	대가면 유흥리	2010. 2.22	3,085	3,341	3,098
영현	영현면 침점리	2004. 2.24	2,454	3,101	4,564
영천통합	영오면 연당리	2007. 4. 3	9,223	9,170	13,345
구만	구만면 광덕리	1992.	2,167	2,921	2,353
회화	회화면 배둔리	2013. 12.1	2,510	2,266	1,504
마암	마암면 도전리	2009. 8.10	2,063	2,968	2,715
동해	동해면 장기리	2008. 9.17	3,582	3,892	3,744
거류	거류면 당동리	2011. 9.23	2,819	2,538	3,921
계	12개소		38,149	42,520	47,585

(4) 보건 진료소

① 설치 근거

0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공포되고 이를 근거로 1981년부터 전국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근무케 하였다.

② 고성군 보건진료소 연혁

0 고성군 오지마을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1981년도에 삼산면 장지, 하일면 수양, 하이면 덕명, 대가면 신전, 영현면 봉발, 개천면 청광, 마암면 신리, 동해면 장좌 등 8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료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를 잡급직원으로 채용하여 1명씩 고정 배치하였다.

0 1984년도에 하일면 춘암, 하이면 봉현 등 2개소, 1985년도에 회화면 어신, 동해면 내신 등 2개소, 1986년도에 삼산면 두포, 대가면 신전, 동해면 매정 등 3개소를 개설함으로써 총 1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0 1992년 4월 2일 15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전원을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여 오지마을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0 2003년 11월 7일 삼산면 두포, 하일면 춘암, 동해면 내산 보건진료소를 통합진료소 운영으로 폐소 시켰으며

0 2007년 12월 3일 삼산면 장지 보건진료소를 삼봉진료소로 신축이전 하였고 2011년 11월 18일 대가면 신전 보건진료소를 송계 보건진료소로, 동년 12월 2일에는 하일면 수양 보건진료소를 수태 보건진료소로 각각 신축이전 하였다.

0 2013년 1월 23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시책에 따라 전원 일반직인 지방 보건진료직으로 전환, 지방보건 진료주사보(7급)로 특별 임용하여 취약지 근무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보건진료소 설치 및 진료 현황

보건 진료소명	소재지	설치년도	건물신축 년월일	진료실적			
				2011	2012	2013	2014
삼봉	삼산 삼봉리	1981년	2007.12.03	5,155	5,141	4,470	4,342
수태	하일 수양리	”	2011.12.02	4,211	4,763	4,279	3,680
덕명	하이 덕명리	”	2005.12.16	4,581	5,110	4,239	3,655

봉현	하이 봉현리	1984	2010.11.16	2,747	2,962	2,506	2,276
송계	대가 송계리	1981	2011.11.18	2,722	3,182	3,012	2,589
연지	대가 연지리	1986	2009.07.30	5,720	5,811	4,833	4,861
봉발	영현 봉발리	1981	2012.10.26	2,377	2,780	1,671	1,583
청광	개천 청광리	"	2012.10.19	1,946	2,586	2,234	2,130
어신	회화 어신리	1985	2013.10.30	2,765	2,870	2,122	2,046
신리	마암 신리	1981	2013.04.02	3,553	3,480	3,133	2,965
장좌	동해 장좌리	"	2006.07.01	2,827	2,726	2,407	2,482
매정	동해 용정리	1986	2013.10.30	4,787	5,635	5,024	5,750
계	12 개소			43,391	47,046	39,930	37,879

(보기:고성군 보건소 보존문서)

3) 관광지 사업소(구 당항포 국민관광지)

(1) 연혁

0 1981년 3월 31일 서울지역 고성향우들이 주축이 되어 이충무공의 숭고한 애국애민정신을 선양하고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사)충무공 고성지역 전승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기금 조성과 함께 기념탑과 사당, 기념관 건립등 당항포 해전대첩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지조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0 고성군은 1981년 7월 성역화 주변 14만여평을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용도 지정하였으며,

0 1983년 9월 16일 당항포지역에 대한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다.

0 1984년 6월 21일 당항포지역을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고 동년 9월 14일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0 1984년 11월 23일 전승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한 기념탑,사당,기념관 등이 준공되었다.

0 1986년 12월 9일 공공투자 부문 시설물이 준공되었다.

0 1987년 4월 15일 당항포관리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문화공보실 소속의 6급 소장을 발령하였다.

0 1987년 11월 10일 군민과 재외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장식을 가졌다.

0 1988년 1월 1일 당항포 국민관광지의 시설관람을 유료화 하였으며 동년 11월 4일 전승기념사업회가 조성한 재산일체를 고성군이 인수하였다.

0 1989년 7월 24일 관광지의 공식명칭을 당항포국민관광지로 정하였으며 사업소 형태의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0 1995년 8월 8일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신설. 5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하부조직으로 관리계를 두었다.

0 2003년 9월 12일 제14호 태풍 “매미” 로 인해 관광지내 시설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2005년 1월 29일 재 개장하였다.

0 2004년 7월 8일 관광지 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공룡박물관 운영담당을 이관 받아 상족암관리담당으로 하여 하부조직으로 관리하였다.

0 2006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0일간, 2009년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42일간, 2012년 3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42일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주행사장 역할을 하였다.

0 2007년 1월 2일 상족암관리담당을 공룡박물관사업소로 이관하고 하부조직에 시설운영 담당과 기반조성담당을 신설하였다.

0 2008년 7월 9일 관광지 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해양레포츠담당을 추가 신설하였다.

0 2014년말 현재 사업소장과 하부조직으로 관리, 시설운영, 기반조성, 해양레포츠담당을 두었고 1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2) 관광지 주요시설 현황

① 성역화 시설 - 5개소

기념사당, 전승기념탑, 전승기념관, 임진란 창의공신 현충탑, 당항포 관광지 연혁비.

② 문화, 관광 시설 - 25개소

자연사 박물관, 수석전시실, 충무공 디오라마관, 거북선 체험관, 엑스포 주체관, 식물원, 생명환경체험관, 공룡캐릭터관, 공룡콘텐츠 산업관, 레이저 영상관, 빗물 체험관, 해군퇴역 함정1척(4,080톤규모),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모험놀이장, 다목적 구기장, 야외공연장,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공룡놀이시설, 야외무대, 미끄럼틀, 자연 예술원, 공룡발자국 탐방로, 펜션, 오토캠핑장, 야영장.

③ 영업 편의시설 - 7개소

매점 3개소, 기념품점 1개소, 스넥코너 및 식당 3개소

④ 관리시설 - 25개소

관리사무실, 매표소(3), 화장실(10), 샤워장 취사장(7), 주차장(3)-1,819면. 오수처리장.

0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년도	총수입액	입장료		주차료		기타		비고
		인원	금액	대수	금액	개소	금액	
2006	635	244,260	474	31,362	49	14	112	엑스포
2007	950	368,416	667	44,134	68	22	214	
2008	1,278	444,991	745	48,752	86	29	447	
2009	772	124,667	438	26,072	39	29	295	엑스포
2010	1,466	392,905	984	58,257	76	28	406	
2011	1,640	278,080	988	45,361	70	25	582	
2012	1,116	94,921	364	12,407	38	23	724	엑스포
2013	2,008	337,886	770	45,850	93	23	1,145	
2014	2,383	281,639	1,018	56,811	149	23	1,216	

주 : 엑스포 기간 중의 관람인원과 입장료는 포함 되지 않음.

(보기:고성군 관광지사업소 보존문서)

4) 읍면

0 개요

우리나라에 말단 행정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읍·면·동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를 다시 군·현으로 나누었으며 말단조직으로 향읍과 촌락이 있었다.

- 고려시대 역시 전국을 5도, 2계로 나누고 경·도호부, 목·부. 그리고 군·현·진을 설치하였다.

-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도 아래에 부·대도호부, 목·도호부, 군·현을 설치하였고 최초로 지방의 말단조직인 면,동,리 5가통을 두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영조41년(1765년) 고성현의 각면의 행정구역을 14개면 - 동읍내면, 서읍내면, 상리면, 하리일운면, 하리이운면, 대둔면, 가동면, 마암면, 구만면, 회현면, 광내일운면, 광내이운면, 도선면, 춘원면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종 광무10년(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로 진주군의 문선면, 남양면, 영이곡면, 오읍곡면, 개천면이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2년 7월 1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29호에 의해 남양면이 사천군에 편입되고,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14개면의 명칭과 구역을 확정하였다. 1918년 철성면이 고성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38년 10월 1일 고성면이 고성읍으로 승격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법률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임기 4년의 읍면장을 읍·면 의회에서 선출토록 하였으나 그 시행이 늦어져 1952년 4월 25일 읍·면 의회 의원선거가 치루어지고, 동년 5월 5일 읍면장이 간선되어 정식 발령되었다.

1961년 5월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읍면장은 별정직 신분으로 군수가 발령하였으며 1995년부터 정규직 5급 공무원을 발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읍면장 제도는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1998년 9월 1일 제1차 지방행정기구 조직 개편시 폐지되었다가 2006년 1월 1일 다시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시키고 총무 담당이 겸직하게 하였다.

○ 고성읍

(1) 연혁

- 옛 고자미동국의 치소(治所)
- 소가야 또는 고자국의 도읍지
- 통일신라, 고려시대 - 고성현 관할
- 조선시대
 - 1895년(고종32년) 고성군 개칭시 서내읍면과 동내읍면으로 나누어짐.
- 일제 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양면을 병합하여 철성면으로 개칭
 - 1918년 10월 1일 고성면으로 개칭
 - 1938년 1월 1일 - 고성읍으로 승격
- 대한민국
 - 1983년 2월 15일 삼산면 이당리와 대독리를 편입.
 - 1984년 8월 22일 고성읍의 법정리동을 5개동 12개리로 확정
 - 1988년 5월 24일 고성읍의 “동” 을 “리” 로 개칭하여 17개 법정리로 확정

(2) 청사

- 1926년 고성읍 성내리 28-1번지 면사무소 개청

0 1978년 고성읍 성내리 27번지로 이전

0 2013년 고성읍 송학로 93으로 이전

(3) 기본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44.12km ²	15.38	19.42	9.32	0.86ha	98%	98%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인 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0,892	2,608	292	7,993	26,264	13,202	13,062	2,4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7	40	92	155	23	1	6	8	7	1

(4) 특산물

0 월평리 옥수수

1992년부터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140농가 87헥타에서 300톤(6만박스/5kg)를 생산하여 연간 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성수기인 6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국도 14호선 도로 양측에 공간을 확보하여 50여 농가가 파라솔을 펼치고 줄지어 늘어선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옥수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가 개선되고, 식욕억제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품이다. 또한 씨눈에 “토코페롤” 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건강과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잇몸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B1이 풍부한 건강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5) 가볼만한 곳

0 남산 공원

고성읍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성의 유일한 공원이다. 공원 입구에는 선인들의 행적비(行蹟碑)가 가지런히 서 있고 84계단을 올라가면 사찰(보광사)과 마주친다. 그 좌측에는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충혼탑과 봉안각, 6.25반공유적비가 세워져 있고 지하수를 끌어 올린 음용수가 항상 준비 되어 있다.

사찰 뒤편 산등성이에는 생활체육시설과 목련 쉼터로서 완벽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많은 읍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곳으로부터 산정(山頂)을 거쳐 수남리와 신월리까지 이어지는 3~4미터 폭의 산책로가 있으며 완주시간은 1시간 정도로 도심속의 산책 코스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상에는 고성만과 고성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남산정이 세워져 있다.

0 갈모봉 산림욕장

2006년 4월에 개장된 갈모봉 산림욕장은 고성읍 이당리 갈봉산(해발374미터) 70여 헥타에 수령 20~50년생의 편백과 삼나무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다.

산림욕장에는 1.6km의 산책로를 비롯하여 삼림욕대, 야외탁자, 숲속의 교실, 수목설명대, 팔각누정, 쉼터 등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이 있고,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주변 경관도 아름다워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갈모봉 산림욕장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피톤치드” 향이 편백림에서 대량으로 뿜어져 나와 심신을 건강하게 가꿀수 있는 자연 건강 단련장으로 소문나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6) 주요 행사

0 고성읍민 한마당 큰잔치

2004년부터 시작된 고성읍의 유일한 읍민이 하나되는 큰 행사이다. 법정리 단위로 팀을 구성하지만 다소 작은 7개리는 2~3개리씩 합쳐 모두 13개팀을 구성한다.

식전행사는 고성읍 농악팀의 길놀이와 한국무용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체육과 민속행사는 풍선기동만들기, 윷놀이, 과제물 릴레이, 5인6각경기 줄다리기로 열띤 대결을 펼치며 어울림 행사로는 고성오광대나 고성농요 공연과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공연이 한층 흥을 돋운다. 초청가수 공연과 읍민노래자랑이 읍민한마당큰잔치의 대미를 장식한다. 장외 특별행사로 고성읍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시식을 겸한 전시회가 열리고, 모두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전국에서 제일 인심 좋다는 월평리 구장술이 지나는 구경꾼의 발길을 붙잡아 온종일 흥청거리는 큰잔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고성읍 체육회 주관으로 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9-10월에 고성군종합운동장에서 개

최된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출전팀 전체에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7) 역대 읍장 현황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착임	이임	재직기간	
1	임병은(林炳殷)	1945.12.23	1946.10.30	10월	
2	박한수(朴澣洙)	1946.11.05	1948.02.10	1년3월	
3	임병은(林炳殷)	1948.03.10	1949.01.05	10월	
4	정성춘(鄭盛春)	1949.01.10	1949.05.30	5월	
5	강종훈(姜宗勳)	1949.06.20	1950.06.10	1년	
6	김성포(金成布)	1950.6.20	1952.04.20	1년 10월	
7	김성포(金成布)	1952.05.05	1952.06.12	1월	의회간선
8	채영준(蔡榮俊)	1952.06.17	1954.07.05	2년1월	의회간선
9	천경두(千璟斗)	1954.07.20	1955.12.02	1년4월	의회간선
10	천경두(千璟斗)	1956.04.01	1958.11.09	2년7월	의회간선
11	박남을(朴南乙)	1959.04.20	1960.08.12	1년4월	의회간선
12	허성숙(許盛淑)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13	배명갑(裴明甲)	1961.07.19	1963.02.08	1년7월	별정직
14	이범수(李範洙)	1963.05.29	1964.12.07	1년6월	
15	김경원(金景元)	1964.12.14	1968.11.21	4년	
16	채희석(蔡熙錫)	1968.12.02	1972.05.15	3년5월	
17	김창석(金唱錫)	1972.06.05	1975.05.01	2년 11월	
18	박경재(朴璟載)	1975.05.08	1984.10.02	9년5월	
19	정해승(丁海昇)	1984.10.22	1990.07.06	5년7월	
20	박진배(朴鎭培)	1990.07.07	1995.05.07	4년 10월	
21	진동규(陳銅圭)	1995.05.08	1997.12.31	2년8월	5급
22	이상우(李相佑)	1998.01.01	1998.08.31	8월	
23	이학길(李鶴吉)	1998.09.01	1999.06.30	10월	
24	정풍대(鄭豐大)	1999.07.01	2000.12.08	1년5월	
25	이원두(李元斗)	2000.12.09	2002.08.16	1년8월	
26	조경석(趙慶錫)	2002.08.17	2004.05.16	1년9월	
27	허안도(許安道)	2004.05.17	2006.01.02	1년8월	
28	이원두(李元斗)	2006.01.11	2007.01.10	1년	
29	이수열(李守烈)	2007.01.11	2009.09.08	1년7월	
30	백문기(白文基)	2009.09.09	2010.08.01	1년	
31	최양호(崔良鎬)	2010.08.02	2012.07.01	1년 11월	
32	김행수(金幸洙)	2012.07.02	2013.06.30	1년	
33	남기길(南基吉)	2013.07.01	현 재		

○ 삼산면

(1) 연혁

0 통일신라, 고려시대 - 어례향, 박달부곡, 번계현에 속함.

0 조선시대

· 1895년(고종32년) 고성군 개칭시 상서면 상남면으로 나누어짐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양면을 병합하여 삼산면으로 개칭

0 대한민국

· 1983년 2월 15일 이당리와 대독리를 고성읍으로 편입

· 1984년 8월 22일 삼산면의 법정리를 6개리로 확정

(2) 청사

· 1914년 미룡리 390번지에 면사무소 개청

· 1926년 병산리 82번지로 이전

· 1927년 화재로 인해 병산리 206-2번지로 이전

· 1990년 3월 22일 미룡리 265번지로 이전 신축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35.10km ²	5.9	26.24	2.96	0.63ha	82%	75%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963	465	226	272	1,911	957	954	2.0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6	14	59	33	10	1	3	2	3	1

(4) 주요행사

0 삼산면민화합한마당 축제

화합한마당축제는 삼산면을 4개구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을 대표하는 산 이름을 따서 매바위팀, 봉화산팀, 성지산팀, 갈모봉팀으로 하여 팔씨름,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와 경로위안행사를 겸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개최하였으며 매년 4월에 삼산초교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삼산면의 대표적인 축제행사이다.

0 정초 지신밟기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음력 정초에 지신밟기패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며 지신을 진압하고 잡귀를 물리쳐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비는 행사와 아울러 정월대보름 용호마을 들녘에 달집을 짓고 많은 면민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달집을 태우는 민속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5) 삼산면 역대 면장 현황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착임	이임	재직기간	
1	윤상우(尹相祐)	1945.08.15	1946.10.25	1년2월	
2	서정원(徐正元)	1946.10.26	1952.05.04	5년6월	
3	서정원(徐正元)	1952.05.05	1956.03.03	3년 10월	의회간선
4	이강봉(李康奉)	1956.04.10	1960.12.25	4년8월	의회간선
5	이강봉(李康奉)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6	전종규(全鍾奎)	1961.07.13	1965.07.10	4년	별정직
7	서정길(徐正吉)	1965.07.15	1970.04.21	4년9월	
8	김수관(金綉權)	1970.04.29	1975.12.29	5년8월	
9	공효일(孔孝一)	1976.02.14	1977.02.14	1년	
10	문기조(文基祚)	1977.03.10	1987.03.16	10년	
11	박진배(朴鎭培)	1987.03.21	1990.07.06	3년4월	
12	이익재(李益宰)	1990.07.07	1995.07.06	5년	
13	안광만(安光萬)	1995.07.07	1997.06.30	2년	5급
14	허용도(許容道)	1997.07.01	1998.08.31	1년2월	
15	박용병(朴庸秉)	1998.09.01	2000.04.25	1년8월	
16	도평진(都平珍)	2000.04.26	2003.04.09	2년 11월	
17	정순태(鄭純太)	2003.04.10	2004.05.16	1년1월	
18	황호원(黃鎬元)	2004.05.17	2006.07.09	1년 11월	
19	제정락(諸廷洛)	2006.07.10	2009.12.31	2년6월	
20	박점석(朴点錫)	2010.02.01	2012.07.01	2년5월	직무대리2010.4.16승진
21	구대준(具汰準)	2012.07.02	2014.07.27	2년1월	
22	김원수(金元守)	2014.07.28	현재		직무대리2014.10.27승진

○ 하일면

(1) 연혁

- 통일신라, 고려시대 - 어례향의 일부
- 조선시대
 - 초기 - 하리 일운면으로 호칭
 - 1895년(고종32년) - 하일면으로 개칭
-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하일면으로 존치
- 대한민국
 - 1984년 8월 22일 하일면의 법정리를 7개리로 확정

(2) 청사

- 1957년 하일면 학림리 791번지 면사무소 개청
- 1991년 2월 28일 학림리 657-1번지 이전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30.98km ²	6.57	21.87	2.54	1.5ha	80%	72%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005	642	258	105	2,001	960	1,041	2.0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7	15	30	36	11	1	4	2	1	2

(4) 특산물

0 참다래와 취나물

하일면은 기후가 온난하고 산록변 경지가 많아 참다래와 취나물의 재배 적지이다.

- 참다래는 현재 82농가 54헥타에서 500여톤의 참다래를 생산하여 연간16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참다래는 원래 중국 양쯔강 유역의 야생다래를 뉴질랜드에서 품종개량하여 “키위”라고 명명하여 전세계에 유통시켰으며 우리나라는 1974년경 뉴질랜드산 키위 묘목을 수입하여 제주도 남해안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양다래”란 이름으로 통용되다가 1997년에 “참다래”로 개칭 국산화하였고, 현재 뉴질랜드, 미국, 칠레산 키위와 경쟁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1981년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그린 키위” 계통이었으나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 “골드 키위” 계통의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취나물은 450농가 62헥타에서 250여톤을 생산하여 연간8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취나물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채소의 하나로 칼륨등 무기질과 비타민C,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한약재료로도 사용되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높다고 한다.

(5) 가볼만한 곳

0 송천1구 정보화 마을

정보화 마을은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여 도농간의 정보 격차를 줄임과 아울러 전자상거래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송천1구 정보화마을은 2008년도에 지정되어 회의실과 정보화교육장등의 시설을 갖춘 정보센터를 신축하여 2009년 3월 4일 개관하였다.

홈페이지 개설과 교육장에 PC 설치, 가정에 PC를 공급하여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에도 노력하고 있는바 봄철에는 취나물 수확, 여름철에는 청정해역 자란만을 활용한 바닷가 생태체험, 가을철에는 참다래, 고구마 수확등 농산물 체험, 겨울에는 자란만에서 생산되는 굴구이 체험등이 있고, 년중체험은 참다래잼 만들기가 있다. 가족단위의 당일코스로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체험활동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6) 주요행사

0 면민체육대회 및 화합한마당큰잔치

격년제로 9월에 열리는 이행사는 올해 21회째를 맞는 면의 가장 큰 행사이다.

줄다리기, 공굴리기 등 체육행사를 1부행사로, 그리고 마을별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을 2부행사로 진행된다. 15개마을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마을간, 이웃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7) 하일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 임	이 임	재직기간	
1	최철일(崔哲一)	1945.08.15	1946.03.30	8월	
2	최동호(崔洞鎬)	1946.03.31	1946.07.23	4월	
3	최찬순(崔贊淳)	1946.07.24	1947.08.11	1년1월	
4	최준호(崔駿鎬)	1947.08.12	1951.05.18	3년9월	
5	김철조(金澈祚)	1951.05.19	1952.05.04	1년	
6	김철조(金澈祚)	1952.05.05	1953.06.21	1년1월	의회간선
7	배현부(裵鉉富)	1953.06.22	1959.08.10	6년2월	의회간선
8	최재훈(崔載熏)	1959.08.11	1960.12.01	1년4월	의회간선
9	이지순(李至純)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10	최재명(崔在明)	1961.07.19	1965.03.11	3년8월	별 정 직
11	최재훈(崔載熏)	1965.04.12	1971.01.16	5년9월	
12	김창석(金唱錫)	1971.01.28	1972.06.04	1년4월	
13	배태홍(裵泰洪)	1972.08.05	1981.04.14	8년8월	
14	최갑모(崔甲模)	1981.04.16	1987.01.19	5년9월	
15	윤용수(尹龍洙)	1987.01.20	1995.05.06	8년3월	
16	조경석(趙慶錫)	1995.05.08	1996.10.03	1년5월	5급
17	윤찬복(尹璨卜)	1996.10.04	1999.06.30	2년9월	
18	이수열(李守烈)	1999.07.01	2002.08.16	3년2월	
19	임재민(林在敏)	2002.08.17	2003.11.09	1년3월	
20	황호원(黃鎬元)	2003.11.10	2004.05.16	6월	
21	고영은(高永恩)	2004.05.17	2006.07.09	2년2월	
22	김행수(金幸洙)	2006.07.10	2007.07.19	1년	
23	정종철(鄭鍾哲)	2007.07.20	2008.06.30	11월	명예퇴직
24	김영도(金永道)	2008.07.15	2010.06.30	2년	
25	제인호(諸麟鎬)	2010.07.01	2011.08.29	1년2월	
26	유영옥(劉永玉)	2012.01.01	2014.10.12	2년 10월	
27	조규춘(曹圭春)	2014.10.13	현 재		

○ 하이면

(1) 연혁

0 통일신라, 고려시대 - 보령향 일부에 속함.

0 조선시대

- 초기 - 하리 이운면으로 호칭
- 1895년(고종32년) - 하이면으로 개칭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하이면 입암리 일부와 사천군 수남면 일부를 병합하였으며 하이면으로 존속

0 대한민국

- 1984년 8월 22일 - 하이면의 법정리를 8개리로 확정

(2) 청사

0 1913 하이면 사곡리 135번지에 면사무소 개칭

0 1958 하이면 덕호리 541-4번지로 이전

0 1989년 2월 27일 - 청사 노후로 신축 개칭

(3) 기본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37.84km ²	7.15	25.13	5.56	1.17ha	75%	75%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297	611	83	603	2,893	1,463	1,430	2.2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8	19	27	35	11	1	4	2	2	2

(4) 주요 시설물

0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에 1983년 8월, 1호기가 준공된 이후 현재 6호기가 준공되어 총 3,245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용연료는 유연탄이다.

다만 고성군에 위치하면서 인근지역 삼천포라는 명칭에 대해 대부분의 고성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바 현 발전소 부근에 건설계획중인 신규 발전소는 반드시 우리지역 명칭으로 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 신규 건설발전소는 2015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2기를 건설하며, 총 2,010MW를 발전할 대형발전소가 된다.

(5) 가볼만한 곳

0 상족암 군립공원

상족암 군립공원은 남해안 한려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해변에는 넓은 암반과 기암절벽이 계곡을 형성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이곳에는 천혜의 석보 상족암과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어 1983년 11월 10일 덕명리와 월흥리 일원 5.10km²(육지 1.33, 해면3.77)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룡발자국 화석은 1982년 1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해안을 따라 약 4km에 걸쳐 용각류, 수각류, 새발자국 등이 2천여쪽에 달하고 있어 공룡 서식 당시의 생태환경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존되어야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또한 상족암은 넓은 암반과 층암 단애로 되어 있고 동서로 되돌아 돌며 암굴로 형성된 밥상다리 모양을 하고 있어 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6) 주요 행사

0 하이면민 어울림 한마당잔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전면민이 함께 참여하는 면의 대표적 행사이다. 인접한 2~4개 마을을 합하여 모두 6개팀으로 구성하고 배구, 줄다리기, 축구공 볼링, 윷놀이, 투호놀이등 체육과 민속행사를 펼치며 면민노래자랑과 연예인 전문공연단의 초청공연 등으로 하루종일 흥겨운 잔치마당이 된다.

그리고 그 외 행사로는 음력 정초에 풍물패가 가정을 돌며 잡귀를 물리치는 지신밟기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으며 매년 11월경에는 면내 전체어르신을 모시고 휴경당 농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경로잔치를 벌이고 있다.

(7) 하이면 역대 면장 현황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착임	이임	재직기간	
1	정윤조(鄭允祚)	1945.10.30	1947.10.30	2년	
2	박재욱(朴載煜)	1947.11.01	1948.03.01	4월	
3	최삼조(崔三祚)	1948.03.07	1952.05.05	3년 10월	
4	박석문(朴錫文)	1952.05.06	1955.08.15	3년3월	의회간선
5	박응실(朴應實)	1955.08.16	1957.03.21	1년7월	의회간선
6	최삼조(崔三祚)	1957.03.22	1960.12.19	3년9월	의회간선
7	강환중(姜煥中)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8	최준호(崔俊鎬)	1961.07.13	1961.11.18	4월	별정직
9	박필진(朴畢晉)	1961.11.19	1964.06.18	2년7월	
10	박낙영(朴洛榮)	1964.07.30	1968.12.20	4년5월	
11	박관옥(朴官玉)	1969.01.15	1969.07.31	7월	
12	박석균(朴錫均)	1970.02.01	1971.08.03	1년6월	
13	박석관(朴錫灌)	1971.01.01	1976.03.09	5년2월	
14	박성욱(朴成煜)	1976.03.10	1981.11.30	5년8월	
15	박완욱(朴完煜)	1981.12.01	1990.01.20	8년2월	
16	백명만(白命萬)	1990.02.20	1992.06.19	2년4월	
17	목정구(睦楨九)	1992.06.20	1995.10.24	3년4월	
18	정영부(鄭永夫)	1995.10.25	1997.03.23	1년5월	5급
19	허안도(許安道)	1997.03.23	1998.09.01	1년5월	
20	이상진(李相珍)	1998.09.01	2000.06.25	1년 10월	
21	정순태(鄭純太)	2000.06.26	2001.11.20	1년5월	
22	조용학(趙鏞鶴)	2001.11.21	2006.07.09	4년8월	
23	정윤준(鄭允俊)	2006.07.10	2008.02.03	1년7월	
24	김영재(金永才)	2008.02.04	2009.01.05	11월	
25	유영옥(劉永玉)	2009.01.06	2009.07.02	6월	
26	강호양(姜鎬亮)	2009.07.03	2011.12.31	2년6월	
27	고재열(高在烈)	2012.01.01	2012.12.13	11월	직무대리 2012.3.9승진
28	박점석(朴点錫)	2012.12.14	2014.10.12	1년 10월	
29	배형관(裵亨罐)	2014.10.13	현재		

○ 상리면

(1) 연혁

0 통일신라, 고려시대 - 보령향의 일부에 속함

0 조선시대

- 초기 - 고성현의 관할
- 1895년(고종32년)- 상리면으로 호칭

0 대한민국

- 1984년 8월 22일 - 상리면의 법정리를 9개리로 확정

(2) 청사

- 1895년(고종32년) - 가동에 면사무소 개청
- 1934년 5월 20일 - 조동리(현 척변정리) 388번지 이전
- 1982년 - 청사 노후로 신축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45.99km ²	6.97	34.65	4.37	1.6ha	85%	86%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871	433	-	438	1,751	863	888	2.0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9	17	51	28	10	1	3	1	4	1

(4) 기불만한 곳

0 상리면 연꽃공원

상리면 연꽃공원은 척번정리 소재 척정 소류지 19,575㎡를 2004년부터 사업착수하여 2012년에 개장되었다. 척정소류지는 당초 척정리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나 1999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리문화마을을 조성함에 따라 소류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상리면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케 되었다.

깊은 수심을 흙으로 메꾸어 연꽃을 심고 제방을 헐어 공터를 늘려 화장실과 주차장, 파고라, 테크 석담과 운동시설을 갖추었으며 연못가운데에 정자2동을 짓고 테크를 만들어 연꽃속에 파묻혀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못에 징검다리를 놓아 어릴적 개울을 건너는 추억을 연상시키기로 한다.

연못속에는 올챙이, 소금쟁이, 다슬기, 왕우렁이, 남생이와 다양한 수생 식물이 자라고 있어 연인끼리, 가족끼리 즐기기에 안성맞춤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연간 일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5) 주요행사

0 상리사랑 한마음축제

상리면 문화마을 오정자나무 숲 일원에서 5월경에 경로행사와 향우들과의 만남을 주제로 농악공연, 연예인초청공연, 민민노래자랑,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등의 축제행사를 격년제로 열고 있다. 2003년 창설하여 상리사랑 발전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2008년 이후는 상리면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다.

(6) 상리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박한수(朴瀚洙)	1945.12.23	1946.10.24	10월	
2	이응수(李應洙)	1946.10.25	1947.09.09	11월	
3	권용기(權鎔基)	1947.09.10	1948.10.06	1년1월	
4	이진수(李摺洙)	1948.10.07	1952.05.04	3년7월	
5	박형선(朴洞善)	1952.05.05	1959.07.17	7년2월	의회간선
6	백갑인(白甲寅)	1959.07.18	1960.10.25	1년5월	의회간선
7	이응수(李應洙)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8	한필권(韓弼權)	1961.08.01	1972.05.15	10년 9월	별 정 직
9	채두근(諸斗根)	1972.06.10	1981.09.15	9년3월	
10	황말용(黃末容)	1981.09.16	1986.09.24	5년	
11	한상우(韓爽愚)	1986.09.25	1995.05.07	8년8월	
12	안한규(安漢圭)	1995.05.08	1995.08.08	3월	5급
13	윤찬복(尹燦卜)	1995.08.09	1996.10.06	1년2월	
14	최득림(崔得林)	1996.10.04	1998.08.31	1년 11월	
15	정영부(鄭永夫)	1998.09.01	1999.06.30	10월	
16	채정진(蔡正辰)	1999.07.01	2000.12.08	1년5월	
17	안충규(安忠圭)	2000.12.09	2003.04.09	2년4월	
18	송정욱(宋正旭)	2003.04.10	2004.07.27	1년4월	
19	김행수(金幸洙)	2004.07.28	2006.07.09	1년 11월	
20	이승상(李承相)	2006.07.10	2007.07.19	1년	
21	정재훈(鄭載勳)	2007.07.20	2010.08.01	3년	
22	우정수(禹貞洙)	2010.08.02	2011.12.31	1년5월	
23	최삼식(崔三植)	2012.01.01	2012.07.01	6월	
24	김호준(金浩駿)	2012.07.02	2013.06.30	1년	
25	김경섭(金敬鐸)	2013.07.01	2014.10.12	1년3월	
26	문상부(文相富)	2014.10.13	현 재		

○ 대가면

(1) 연혁

0 삼한, 삼국시대 - 고자국 또는 소가야 관할

0 조선시대

· 초기 - 고성현의 관할

· 1895년(고종32년) - 고성군 개칭시 대둔면과 가동면으로 나누어짐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양면을 병합하여 대가면으로 개칭

0 대한민국

· 1984년 8월 22일 - 대가면의 법정리를 9개리로 확정

(2) 청사

· 1913년 - 송계리에 면사무소 개청

- 1948년 - 척정리로 이전
- 1964년 - 유흥리 736-5번지로 이전
- 1991년 4월 - 청사 노후로 신축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52.26km ²	10.00	36.40	5.86	1.62ha	76%	88%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885	680	-	205	1,687	828	859	1.9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9	19	49	40	10	1	4	3	.	2

(4) 가볼만한 곳

○ 빙어잡이와 10리 벚꽃길

매년 4월이면 차가운 물속에서 반짝거리며 떼로 뭉쳐 헤엄쳐 다니는 빙어가 전국의 맛객을 유혹한다.

대가저수지에서 겨울을 보낸 빙어는 수만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맘때가 되면 마을 주민은 물론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상류로 이동하는 빙어를 잡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다. 잡은 빙어는 회, 튀김, 조림 등으로 봄철의 별미를 즐길수 있다.

아울러 인근의 10리벚꽃길이 상춘객을 맞이한다. 이 길은 10여년전 마을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의 헌수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금은 대가면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고 있다.

분홍빛 벚꽃터널이 끝없이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마저 드물어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며 오붓하게 걸을수 있어 많은 상춘객들이 이 길을 찾고 있다.

특히 이곳은 충과 효의 의미를 되새길수 있는 충효테마파크와 천왕점 봉수대로 향하는 등산을 겸할수 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마음으로 느낄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5) 주요 행사

0 대가면민 한마음체육대회

면민이 화합하고 즐길수 있는 자리를 마련키 위해 시작된 한마음 체육대회는 1990년대에 시작하여 올해 21회째 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접 마을을 묶어 모두 4개팀을 구성하고 배구, 족구등 체육행사와 투호놀이 등 민속행사, 농악공연, 면민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가면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다.

(6) 대가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이진평(李鎭平)	1945.12.23	1947.06.12	1년6월	
2	이상홍(李相洪)	1947.06.13	1948.06.04	1년	
3	허중두(許宗斗)	1948.06.05	1951.05.09	2년 11월	
4	강진규(姜振奎)	1951.05.10	1952.05.04	1년	
5	강진규(姜振奎)	1952.05.05	1954.08.05	2년3월	의회간선
6	허용중(許龍中)	1954.08.12	1956.04.17	1년8월	의회간선
7	정종주(鄭鍾周)	1956.05.25	1959.05.25	3년	의회간선
8	정종주(鄭鍾周)	1959.05.29	1960.12.25	7월	의회간선
9	정태일(鄭泰逸)	1960.12.26	1961.06.12	6월	민선
10	정태일(鄭泰逸)	1961.06.13	1961.11.30	5월	별 정 직
11	김영백(金英佰)	1961.12.01	1964.08.14	2년9월	
12	이원수(李源洙)	1964.09.01	1968.11.10	4년2월	
13	김중재(金鍾在)	1968.12.01	1972.01.15	3년1월	
14	정차웅(鄭次熊)	1972.01.16	1975.07.09	3년5월	
15	김중복(金鍾卜)	1975.07.28	1978.02.10	2년6월	
16	박기열(朴基烈)	1978.02.11	1981.12.10	3년 10월	
17	허복도(許복道)	1981.12.11	1985.09.05	3년9월	
18	이달수(李達洙)	1985.09.06	1986.04.07	7월	

19	최무호(崔戊鎬)	1986.04.18	1993.06.30	7년2월	
20	최정호(崔正鎬)	1993.07.01	1997.06.30	4년	
21	제정봉(諸廷奉)	1997.07.01	2000.12.08	3년5월	5급
22	박복선(朴福善)	2000.12.09	2003.04.09	2년4월	
23	허안도(許安道)	2003.04.10	2004.05.16	1년1월	
24	제정락(諸廷洛)	2004.05.17	2006.07.09	2년2월	
25	임재민(林在敏)	2006.07.10	2009.01.05	2년5월	
26	송정욱(宋正旭)	2009.01.06	2010.08.01	1년6월	
27	이성열(李成烈)	2010.08.02	2011.12.31	1년5월	
28	김명순(金明順)	2012.01.01	2014.12.31	2년1월	직무대리 2012.3.9승진

○ 영현면

(1) 연혁

0 삼한,삼국시대 - 고자국 또는 소가야 관할

0 통일신라시대 - 고성군 영선현에 속함

0 고려시대 - 진주군에 이속

0 조선시대

· 1906년 9월 24일(광무10년) - 고성군으로 귀속되면서 영현면으로 개칭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14개동리에서 8개리로 조정 개편

0 대한민국

· 1984년 8월 22일 - 영현면의 법정리를 8개리로 확정

(2) 청사

· 1936년 침점리 354-1번지에 면사무소 개청

· 1985년 11월 건물 노후로 신축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32.17km ²	5.26	24.35	2.56	1.25ha	88%	93%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인 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538	388	-	150	949	433	516	1.8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8	16	20	22	9	1	3	2	1	2

(4) 주요행사

○ 민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면민이 화합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체육대회와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리별로 팀을 구성하고 윷놀이, 투호놀이, 발공굴리기 등의 체육행사와 연예인 초청공연, 리별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의 경로위안잔치를 5월중 어버이날에 개최하고 있다. 1970년도 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창설 당시에는 매년 개최하여 오다 지금은 격년제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영현면과 영현면체육회가 공동주관하고 있다.

○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지난해까지는 마을에서 소규모로 달집놀이 행사를 해왔으나 2013년부터 면단위 행사로 통합하여 대규모 행사로 발전시켰다. 자체 농악대를 구성하여 지신밟기를 하고 리별팀을 구성, 윷놀이, 투호놀이를 통하여 흥을 돋운후 민민 모두의 무사안녕과 무병장수를 비는 기원제를 지내고 나면 달집에 불을 질러 액운을 모두 태우고 날려 보내면 달집놀이 행사는 절정을 이룬다. 농악 장단에 모두 하나가 되어 춤을 추면서 행사를 마무리한다. 영현면 청년회가 주관하고 있다.

○ 촌스런 축제

영현면이 주최하고 영현면 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영현면 영부리 소재 영동 둔치 공원에서 군민과 피서객을 대상으로 8월중 3일간 열리는 감성축제로서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서커스, 국악공연, 색소폰연주, 초청가수공연, 어울림마당 영현초등생들의 태권도 시범과 연극공연, 풍물단의 사물놀이 등으로 꾸며지는 공연행사와 분재, 야생화 전시장과 옛 농기구 전시장이 있으며, 깨끗한 자연속에서 생명환경농업으로 재배한 농작물과 전통식품

직거래 장터가 있고, 카누체험, 도자기만들기, 다슬기와 피라미 잡기, 유아 풀장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장과 가까운 거리의 고성곤충생태학교 전시장을 무료개방하여 관람객들에게 더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축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촌스럽게 꾸미고 진행하여 관람객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축제이다.

(5) 영현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강태주(姜太周)	1945.12.23	1946.12.31	1년	
2	백갑조(白甲祚)	1947.01.01	1947.09.30	9월	
3	유재원(劉在源)	1947.10.01	1951.09.19	3년11월	
4	서호직(徐浩直)	1951.09.20	1952.05.04	8월	
5	강휘관(姜彙判)	1952.05.05	1956.08.7	4년 3월	의회간선
6	최종수(崔鐘洙)	1956.08.08	1959.08.15	3년	민선
7	유병수(劉秉秀)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8	강도녕(姜道寧)	1961.07.13	1972.12.04	11년5월	별 정 직
9	강인수(姜仁壽)	1972.12.05	1978.01.09	5년 1월	
10	강윤구(姜允九)	1978.01.10	1987.06.24	9년 5월	
11	조복제(趙福劑)	1987.06.25	1993.06.30	6년	
12	김남균(金南均)	1993.07.06	1998.07.04	5년	
13	김승우(金承右)	1998.09.01	2000.06.25	1년10월	5급
14	이상진(李相珍)	2000.06.26	2003.04.09	2년10월	
15	고영은(高永恩)	2003.04.10	2004.05.16	1년 1월	
16	정순태(鄭純太)	2004.05.17	2006.01.10	1년 8월	
17	이상진(李相珍)	2006.01.11	2006.07.09	6월	
18	조용학(趙鏞鶴)	2006.07.10	2008.02.03	1년 7월	
19	허금중(許今中)	2008.02.04	2009.01.05	11월	
20	우정수(禹貞洙)	2009.01.06	2010.08.01	1년 7월	
21	백문기(白文基)	2010.08.02	2012.07.01	1년11월	
22	배형관(裴亨觀)	2012.07.02	2014.10.12	2년 3월	
23	강덕중(姜德中)	2014.10.13	현 재		

○ 영오면

(1) 연혁

0 본래 진주군 지역으로서 영이곡면이라 호칭

0 조선시대

· 1906년 9월 24일 진주군에서 고성군으로 편입되면서 영이곡면과 오읍곡면으로 분리됨.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양면을 병합하여 영오면으로 개칭

0 대한민국

· 1984년 8월 22일 영오면의 행정리를 7개리로 확정

(2) 청사

· 1926년 6월 영오면 영대리 985번지 면사무소 개칭

· 1960년 2월 6.25 전쟁으로 파손, 재건축

· 1982년 1월 영산리 240-7번지로 이전

(3) 기본 현황

o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22.77km ²	6.21	12.99	3.57	0.7ha	95%	96%

o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788	532	1	255	1,600	788	812	2.0

o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7	15	23	28	9	1	3	1	3	1

(4) 특산물

0 애호박과 추키니 호박

영오면 영산리, 오동리를 중심으로 114농가 40ha의 시설하우스에서 2,900여톤을 생산하

여 년간 22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곳은 영오천 하류의 비옥한 토지와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일조량이 충분한데다 축분 퇴비 공장이 가까이 소재해 퇴비의 밀거름 시비량이 충분하여 애호박과 주키니 호박 재배의 적지로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이 생산되고 있다.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생산되며 농협공판장을 이용하거나 생산농가의 개별판매를 하고 있다.

애호박은 비닐짚을 이용하여 25cm 정도의 표준규격품을 생산하며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해 다양한 요리는 물론 유아 이유식으로 좋은 식품이며 주키니 호박은 일명 마디 호박으로도 불리며 40~50cm 정도의 비교적 굵고 기다란 모형이다. 소화가 잘되는 당질과 비타민 A가 풍부하며, 어떠한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식재료 들로서 날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재배면적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5) 주요행사

0 영오면민의 날

영오면민의 날은 그동안 개별단위로 개최하여 오던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화합행사 등을 통합, 5월 8일을 영오면민의 날로 지정하고 1996년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다.

영오면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결정하고 체육회장이 겸임토록 하여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즐길수 있는 윷놀이, 복불복 낚시, 단체줄넘기, 2인삼각경기 등을 진행하며 면내에서 자체활동중인 밴드팀(징검다리밴드)의 악기공연과 면민노래자랑으로 영오면민의 날을 마무리한다.

(6) 특기사항

0 영오시장

영오면 영산리 낙안마을에 위치한 영오시장은 매2일과 7일에 열리는 5일장으로 1954년부터 개설되었으며, 1996년 시장부지 1,203㎡에 건축면적 595㎡의 현대식 상가로 재건축되었다.

고성군과 진주시의 5개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전형적인 시골장터로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류와 곡류, 과일류, 인근 지역의 해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영오시장은 어른들에게는 질곡의 지난 삶을 돌이키며 이웃과의 풋풋한 정을 나누는 곳으로, 학생들에게는 진솔한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소로서 손색이 없는 전

통시골 장터이다.

(7) 영오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성종률(成鍾律)	1945.12.23	1948.02.10	2년1월	
2	최학림(崔鶴林)	1948.02.20	1949.06.10	1년3월	
3	김덕수(金德秀)	1949.06.20	1952.05.05	2년 11월	
4	김기영(金琪榮)	1952.05.06	1953.03.17	10월	의회간선
5	김평조(金坪祚)	1953.03.18	1956.06.25	3년3월	의회간선
6	김채로(金塚魯)	1956.07.29	1959.07.27	3년	의회간선
7	김봉조(金琮祚)	1959.07.29	1960.11.30	1년4월	의회간선
8	김봉조(金琮祚)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9	이해간(李海衍)	1961.07.13	1965.10.20	4년2월	별 정 직
10	최연섭(崔然灑)	1965.10.21	1971.02.14	5년4월	
11	윤석룡(尹碩龍)	1971.02.15	1979.07.04	8년5월	
12	김성태(金成泰)	1979.07.05	1987.01.20	7년6월	
13	김경택(金京澤)	1987.01.21	1993.06.30	6년5월	
14	정삼동(鄭三東)	1993.07.03	1996.07.05	3년	
15	강익수(姜益秀)	1996.07.10	1998.08.31	2년2월	5급
16	유금석(柳金石)	1998.09.01	1999.06.30	10월	
17	김행수(金幸洙)	1999.07.01	2002.02.28	2년8월	
18	정종우(鄭鍾楯)	2002.03.01	2003.04.09	1년1월	
19	박복선(朴福善)	2003.04.10	2004.05.16	1년1월	
20	조규춘(曹圭春)	2004.05.17	2006.07.09	2년2월	
21	정순태(鄭純太)	2006.07.10	2007.07.19	1년	
22	백남규(白南圭)	2007.07.20	2008.06.30	11월	명예퇴직
23	황호원(黃鎬元)	2008.07.15	2010.08.01	2년	
24	김도권(金道權)	2010.08.02	2011.08.23	1년1월	명예퇴직
25	김정년(金正年)	2011.08.29	2013.06.30	1년 10월	
26	고재열(高在烈)	2013.07.01	2014.10.12	1년3월	
27	김경섭(金敬攝)	2014.10.13	현 재		

○ 개천면

(1) 연혁

0 본래 진주군의 지역으로서 개천면으로 호칭

0 조선시대

- 1906년 9월 24일 - 진주군에서 고성군으로 편입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고성군 개천면으로 존치

0 대한민국

- 1973년 7월 1일 - 마암면 좌연리가 개천면으로 편입
- 1983년 2월 15일 - 나선리 선동이 구만면 화림리로 편입
- 1984년 8월 22일 - 개천면의 법정리를 9개리로 확정

(2) 청사

- 1907년 5월 - 청광리에 면사무소 개청
- 1928년 3월 20일 - 명성리로 이전
- 1987년 12월 - 건물 노후로 신축

(3) 기본 현황

o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40.45km ²	6.26	30.87	3.32	0.98ha	95%	78%

o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626	448	-	178	1,266	609	657	2.0

o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9	17	27	18	9	1	3	2	1	2

(4) 주요행사

0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우리 고유의 민속행사인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천면 청년회 주관으로 많은 면

민의 참여 속에 옥천사 진입로 입구 영오천변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정월 보름날 오후부터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윷놀이가 시작되고 이어서 마을별 노래자랑이 흥을 돋운다. 초대가수와 밴드의 공연을 마치면 장소를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평안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액을 담은 쪽지를 불태운다.

달이 뜨면 달집에 불을 지르고 달님을 향해, 불꽃을 향해 절을 올리며 희망찬 새해를 기약한다.

0 개천면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개천면은 고성군민체육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천면 체육회 주관으로 9월중에 개천초교운동장에서 마을별로 팀을 구성하고 줄다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놀이행사와 장수상 시상, 연예인초청공연, 마을별 노래자랑 등의 경로행사를 행하고 있다.

(5) 가볼만한 곳

0 연화산 도립공원

연화산은 고성읍에서 서북쪽 15킬로미터 거리에 해발 528미터의 산으로 옥녀봉, 선도봉, 망선봉의 세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 기슭에는 유서 깊은 사찰 옥천사가 있고, 4개의 암자가 있다.

연화산은 장엄한 편은 아니지만 수수하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산이다.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당항포의 쪽빛 바다가 보이고 연봉속에 파묻힌 옥천사의 전경도 눈에 들어 온다. 옥천사에는 주요문화재가 상당수 보존되어 있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옥천샘도 있다.

인근 원동마을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물놀이 터가 있고, 주차장, 화장실, 매점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여름 휴가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와 즐기고 있다.

0 청광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지역

개천면 청동, 청남, 가천, 차치, 나동 5개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 2009년 고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담정비, 쉼터조성, 박진사 고가 주변정비, 새들녘센터를 조성하고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청광 들녘센터는 본사업의 핵심으로 숙박, 세미나, 야영, 특산물 구매와 울창한 편백림과 소나무숲속에서의 휴식은 물론, 겨울철에는 몽골지역에서 찾아오는 독수리의 월동지가 있어 독수리의 비행도 관찰할 수 있다.

(6) 특기사항

0 아동복지시설 - 보리수 동산

30여년전 옥천사 청련암 승욱스님이 부모와 인연이 짧은 아이들을 하나, 둘 품에 거두어 들인 것이 씨앗이 되어 2002년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를 설립하고 2003년 1월 13일 아동복지시설인 보리수동산의 문을 열었다. 현재 63명의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으며 아울러 개천면 지역공동체를 위한 어르신 사랑 한마당잔치, 송년음악회, 팔죽행사, 다문화가족 배움행사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7) 개천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입	이 입	재직기간	
1	최낙선(崔洛銑)	1945.08.15	1947.03.31	1년7월	
2	김동광(金東光)	1947.04.01	1948.06.05	1년2월	
3	최낙구(崔洛久)	1948.06.06	1949.05.17	11월	
4	최상노(崔相魯)	1949.05.18	1952.03.29	3년 10월	
5	박용계(朴容啓)	1952.05.08	1953.06.17	1년1월	의회간선
6	김동길(金東吉)	1953.06.25	1954.03.02	8월	의회간선
7	채종만(蔡鍾萬)	1954.03.05	1956.05.28	2년3월	의회간선
8	최도형(崔道亨)	1956.05.29	1960.07.30	4년2월	의회간선
9	박용계(朴容啓)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10	전종열(全宗烈)	1961.07.13	1961.11.30	5월	별 정 직
11	김길수(金吉洙)	1961.12.01	1965.12.10	4년	
12	최길호(崔吉鎬)	1965.12.14	1972.06.15	6년6월	
13	김동규(金東奎)	1972.06.20	1975.04.28	2년 10월	
14	이진석(李鎭石)	1975.04.29	1980.07.11	5년2월	
15	김귀현(金貴鉉)	1980.08.10	1993.01.12	12년 5월	
16	김영치(金英治)	1993.01.19	1998.01.18	5년	
17	이상진(李相珍)	1998.03.10	1998.08.31	6월	5급
18	임재민(林在敏)	1998.09.01	2002.08.16	4년	
19	강익수(姜益秀)	2002.08.17	2005.05.22	2년9월	
20	최삼식(崔三植)	2005.05.23	2006.07.09	1년1월	
21	채정진(蔡正辰)	2006.07.10	2008.06.30	1년 11월	명예퇴직
22	제인호(諸麟鎬)	2008.07.15	2010.06.30	2년	
23	김호준(金浩駿)	2010.07.01	2012.07.01	2년	
24	허옥희(許玉熙)	2012.07.01	2014.10.12	2년3월	직무대리 2012.10.12승진

(※이후 공석임)

○ 구만면

(1) 연혁

0 통일신라, 고려시대 - 의선향의 일부에 속함.

0 조선시대

- 초기 - 고성현에 존속
- 1895년(고종32년) - 구만면으로 호칭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행정구역 개편시 회현면(현 회화면)의 녹명 일부를 병 합하여 구만면으로 존치

0 대한민국

- 1983년 2월 15일 개천면 나선리 선동이 구만면 화림리에 편입
- 1984년 8월 22일 구만면 법정리를 6개리로 확정

(2) 청사

- 당초(년도미상) 구만면 효락리 829번지에 면사무소 개청
- 1990년 3월 건물 노후로 신축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22.23km ²	6.56	12.88	2.79	1.11ha	86%	86%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610	405	-	205	1,152	556	596	1.8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6	14	23	19	10	1	3	3	2	1

(4) 주요행사

0 면민화합 한마당잔치

면민화합 한마당잔치는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있다. 경로위안행사, 연예인 초청공연, 동,서팀 줄다리기, 마을별 노래자랑, 남녀 장수상 시상 등으로 진행되는 면민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뜻있는 행사다.

198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구만면 체육회가 주관하고 구만면의 기관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0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그동안 마을별로 진행되었던 달집태우기 행사를 2012년부터 통합하여 구만면 청년회가 주관하고 있다.

구 구만중학교 앞 들녘에서 많은 면민들의 참여 속에 풍물놀이,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소망글쓰기, 안녕기원제, 마을별 노래자랑 등을 통하여 우리 고유민속행사를 한 차원 높은 문화축제행사로 승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5) 구만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최낙현(崔洛顯)	1945.08.15	1946.10.24	1년2월	
2	최용호(崔庸鎬)	1946.10.25	1948.10.06	2년	
3	최낙구(崔洛九)	1948.10.07	1950.12.14	2년2월	
4	최낙구(崔洛九)	1950.12.15	1952.05.04	1년5월	
5	최낙구(崔洛九)	1952.05.04	1952.12.19	7월	의회간선
6	이상오(李祥五)	1952.12.20	1956.07.27	3년7월	의회간선
7	최진호(崔晉鎬)	1956.07.28	1959.07.29	3년	의회간선
8	최진호(崔晉鎬)	1959.07.30	1960.02.25	1년7월	의회간선
9	최진호(崔晉鎬)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10	이중수(李鐘洙)	1961.07.13	1962.08.12	1년1월	별 정 직
11	이상갑(李相甲)	1962.08.13	1966.01.09	3년5월	
12	문쾌도(文快道)	1966.01.10	1970.08.14	4년7월	
13	최필락(崔弼絡)	1970.08.15	1976.10.09	6년2월	
14	최갑호(崔甲鎬)	1976.10.10	1984.07.10	7년9월	
15	이재호(李在鎬)	1984.07.11	1992.11.05	8년4월	
16	이병열(李炳烈)	1992.11.14	1997.11.13	5년	
17	임재민(林在敏)	1997.12.01	1998.08.31	9월	5급

18	최득림(崔得林)	1998.09.01	1999.08.01	11월	
19	정병오(鄭炳五)	1999.08.02	2002.08.16	3년1월	
20	허종옥(許宗玉)	2002.08.17	2004.05.16	1년9월	
21	김성태(金成泰)	2004.05.17	2007.01.10	2년8월	
22	유영옥(劉永玉)	2007.01.11	2009.01.05	2년	
23	이길열(李吉烈)	2009.01.06	2010.12.31	2년	
24	정대춘(鄭大春)	2011.01.07	2012.06.30	1년6월	명예퇴직
25	백문기(白文基)	2012.07.02	2013.06.30	1년	
26	천익희(千翼熙)	2013.07.01	현 재		

○ 회화면

(1) 연혁

0 삼한,삼국시대 - 고자국 또는 소가야 관할

0 통일신라,고려시대 - 녹명향의 일부

0 조선시대

· 초기 - 고성현에 존속

· 1895년(고종32년) - 고성군 개칭시 회현면과 화양면으로 분리됨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양면과 구만면 덕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회화면으로 개칭

0 대한민국

· 1984년 8월 22일 회화면의 법정리를 6개리로 확정

(2) 청사

· 당초(년도미상) 회화면 배둔리 820-4번지에 면사무소 개청

· 1969년 배둔리 344-7번지로 이전

(3) 기본 현황

o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29.65km ²	6.95	18.39	4.31	0.9ha	88%	98%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919	748	63	1,108	4,039	2,002	2,037	2.1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6	16	28	52	13	1	5	3	3	1

(4) 주요행사

○ 회화면민 한마음대잔치

면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화합하고 면의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한마음 대잔치를 마련하였다.

회화면 체육회 주관으로 리별 6개팀을 구성하여 씨름, 달리기, 제기차기등 체육행사와 면민노래자랑을 곁들이는 행사로서 2000년부터 격년제로 3~4월경에 개최하고 있다.

○ 그 외 행사

한가위 면민노래자랑과 장터개설 행사를 1995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8.15경축 리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5) 특기사항

○ 배둔장

배둔5일장(매4일과 9일)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100여년이 훨씬 넘었으며 당초에는 배둔천 둔치에 넓은터를 자리잡아 가축시장과 일반시장이 함께 형성되어 인근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축, 당항만의 해산물이 주종을 이루었고, 부산,마산,창원,통영 등지의 상인들이 몰려들어 성시를 이루었으며 팔린 물건들은 육로보다는 당항만을 통한 해상 수송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다만 비가 많이 오면 시장이 물에 휩쓸려 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불편함도 자주 있었다고 하며 그후 1960년대 마을 가운데로 장터를 옮겼다고 한다.

그때부터 300여개의 장옥, 점포가 설치되고 곡물시장, 어시장, 과일 채소시장, 각종생활잡화 시장이 열리고 인근 하천변에는 소, 돼지, 염소, 닭 등의 가축시장과 빨감시장도 형

성 되었으며 당항만의 염전에서 대량 생산된 소금도 배둔장을 통해 직거래 되는 등 하루종일 성시를 이루었다.

특히 일가친척,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전하며 맛있기로 유명한 염소국밥 한그릇과 막걸리 한사발에 고된 삶을 잠시 내려 놓았다가 해질녘 과장이 되어서야 다음장날 만남을 약속하면서 헤어지던 모습이 당시 5일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젊은 세대의 도시이주와 농촌 인구 감소,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5일장이 그 기능을 잃어 가게 되자 시장 현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9년 시장장옥을 신축하였으며 2012년에는 비가림 시설을 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였으나 현재는 30여개의 점포가 열리고 노점상은 60~70대 노인들로 형성되어 대부분 12시경 과장이 되고 있다.

(6) 회화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김동기(金東琪)	1945.12.27	1946.07.23	7월	
2	박홍덕(朴洪德)	1946.07.24	1947.07.19	1년	
3	김경수(金敬守)	1947.07.20	1952.05.05	4년 10월	
4	김경수(金敬守)	1952.05.06	1954.06.04	2년1월	의회간선
5	박홍덕(朴洪德)	1954.06.05	1956.07.13	2년1월	의회간선
6	김이곤(金二坤)	1956.07.14	1959.07.12	3년	의회간선
7	김이곤(金二坤)	1959.07.13	1960.12.25	1년6월	의회간선
8	박만석(朴萬石)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9	도갑출(都甲出)	1961.07.13	1964.01.26	2년6월	별 정 직
10	김길조(金吉祚)	1964.01.27	1969.12.20	5년 10월	
11	박익영(朴益英)	1970.01.01	1972.06.15	2년5월	
12	류병훈(劉炳勳)	1972.06.21	1976.05.17	3년 11월	
13	정재동(鄭載東)	1976.05.20	1984.04.12	7년 11월	
14	정영권(鄭榮權)	1984.04.14	1992.08.05	8년4월	
15	박수일(朴秀一)	1992.08.16	1995.12.18	3년4월	
16	이학길(李學吉)	1995.12.19	1997.12.31	2년	5급
17	김승우(金承右)	1998.01.01	1998.08.31	8월	
18	안광만(安光萬)	1998.09.01	1999.06.09	9월	
19	빈영호(賓榮浩)	1999.06.10	2000.08.09	1년2월	

20	이상중(李相鍾)	2000.08.09	2003.04.09	2년8월	
21	김상수(金相洙)	2003.04.10	2004.05.16	1년1월	
22	김영재(金永才)	2004.05.17	2006.07.09	2년2월	
23	고영은(高永恩)	2006.07.10	2007.07.19	1년	
24	남기길(南基吉)	2007.07.20	2010.08.01	3년	
25	최정운(崔正雲)	2010.08.02	2011.08.28	1년	
26	정윤준(鄭允俊)	2011.08.29	2013.06.30	1년 10월	
27	김영재(金永才)	2013.07.01	현 재		

○ 마암면

(1) 연혁

0 삼한,삼국시대 - 고자국 또는 소가야 관할

0 통일신라,고려시대 - 곤의부곡, 활촌부곡의 일부

0 조선시대

· 초기 - 고성현에 속함

· 1895년(고종32년) 고성군 개칭시 동마면과 서마면으로 분리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양면과 화양면(현 회화면)의 배둔 일부를 편입하여 마암면으로 개칭

0 대한민국

· 1973년 7월 1일 - 마암면 좌연리를 개천면에 편입

· 1984년 8월 22일 - 마암면의 법정리를 9개리로 확정

(2) 청사

· 년도미상. 마암면 도전리 670-8번지에 면사무소 개청

· 1985년 건물노후로 신축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33.70km ²	8.93	20.12	4.65	1.4ha	88%	72%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935	631	10	294	2,008	993	1,015	2.1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9	17	48	41	11	1	4	2	2	2

(4) 가볼만한 곳

0 마동호

마암, 동해, 거류 3개면의 경계지점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 통영, 거제지사가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담수호가 있다.

2002년 12월부터 총사업비 1,181억원을 투입하여 마암면과 동해면을 잇는 방조제 834미터, 배수갑문 1개소, 진입도로 2.6킬로미터, 양수장 4개소, 용수로 49킬로미터 등의 시설 물을 2018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말 현재 공정은 61%이다. 배수 갑문은 폭10미터, 높이6미터 규모의 9련이 설치되고, 통선문 겸 어도를 만들어 산란을 위한 물고기나 소형어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9,600헥타의 광활한 유역 내에서의 환경변화나 기상변경 등을 대비한 친환경 시설은 현재 정밀 재검토중에 있다.

마동호의 총저수량은 741만톤으로서 고성읍,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 등 6개 읍면 1,400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마동호와 인근 당항포 관광지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할 경우 고성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방조제의 4차선 도로는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안정국가공단, 동해면 해양산업특구와 일반산업단지 등의 원자재 완제품 수송에 엄청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주요행사

0 마암면민 화합한마당 및 경로잔치

면민의 화합과 경로효친 사상을 길러주기 위한 이 행사는 화합한마당 행사와 경로행사를

구분하여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화합한마당 행사는 리별로 팀을 구성하고 족구, 윷놀이, 달리기, 제기차기, 2인3각경주, 투호놀이, 바구니 티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경로행사는 마을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연예인 초청공연 등으로 어버이날을 뜻있고 즐겁게 해드리고 있다.

두 행사 모두 마암면 체육회가 주관하며, 마암면과 관내 기관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6) 마암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허우중(許羽中)	1945.09.01	1947.06.04	1년9월	
2	배상진(裴相晉)	1947.06.05	1948.04.02	10월	
3	최세열(崔世烈)	1948.04.03	1949.02.06	10월	
4	이인갑(李仁甲)	1949.02.07	1949.12.04	10월	
5	최경호(崔景鎬)	1949.12.14	1952.05.19	2년5월	
6	허택도(許澤道)	1952.05.20	1954.05.10	2년	의회간선
7	김도현(金道鉉)	1954.05.25	1955.05.25	1년	의회간선
8	최원대(崔元大)	1955.06.05	1960.06.05	5년	의회간선
9	정수영(鄭洙英)	1960.06.10	1960.11.21	5월	의회간선
10	정수영(鄭洙英)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11	이일권(李逸權)	1961.07.19	1965.12.31	4월5월	별 정 직
12	최석원(崔碩元)	1966.01.06	1972.01.15	6년	
13	최복락(崔福洛)	1972.02.10	1973.06.10	1년4월	
14	도갑출(都甲出)	1973.08.01	1975.01.19	1년5월	
15	이응주(李應柱)	1975.01.20	1980.05.07	5년4월	
16	허종철(許宗喆)	1980.05.08	1991.04.24	10년11월	
17	최근호(崔謹鎬)	1991.05.01	1996.04.27	5년	
18	이원두(李元斗)	1996.05.28	1998.08.31	2년3월	5급
19	김일대(金一大)	1998.09.01	2000.07.12	1년 10월	
20	정재훈(鄭載勳)	2000.07.13	2003.04.09	2년9월	
21	이상진(李相珍)	2003.04.10	2004.05.16	1년1월	

22	이승상(李承相)	2004.05.17	2006.07.09	2년2월	
23	조규춘(曹圭春)	2006.07.10	2007.07.19	1년	
24	최낙년(崔洛年)	2007.07.20	2009.12.31	2년6월	
25	김경섭(金敬鐸)	2010.02.01	2011.12.31	1년 11월	직무대리 2010.7.1승진
26	문상부(文相富)	2012.01.01	2014.10.12	2년9월	

(※이후 공석임)

○ 동해면

(1) 연혁

- 0 삼한,삼국시대 - 고자국 또는 소가야 관할
- 0 통일신라,고려시대 - 해빈부곡의 일부
- 0 조선시대
 - 초기 - 고성현에 존속
 - 1895년(고종32년) - 고성군으로 개칭시 포도면과 광이면으로 나누어짐
-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양면을 병합하여 동해면으로 개칭
- 0 대한민국
 - 1973년 7월 1일 - 동해면 감서리를 거류면에 편입
 - 1984년 8월 22일 - 동해면 법정리를 9개리로 확정

(2) 청사

- 연도미상 동해면 장기리 346-2번지에 면사무소 개청
- 1983년 4월 30일 - 청사 노후로 신축

(3) 기본 현황

o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53.88km ²	9.19	38.91	5.78	0.8ha	67%	60.5%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817	969	617	231	3,689	1,912	1,777	2.0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9	22	49	52	12	1	4	1	4	2

(4) 주요행사

○ 국민체육대회 및 경로위안행사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이 화합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대회 및 경로위안잔치가 가정의 달 5월에 장거리 소재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줄다리기와 윷놀이, 다양한 경로위안행사, 마을별 노래자랑, 연예인 초청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동해면 체육회 주관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 새해 해맞이 행사

매년 1월 1일 내산리 소재 해맞이 공원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전국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5천여명의 관광객이 운집한 가운데 행사주관단체에서 준비한 떡국나눠먹기, 신바람 농악단공연,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살풀이 공연 등에 참여하여 새해의 꿈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인근 동진교 부근의 이름다운 풍광까지 덩으로 즐긴 후 동해바다에서 솟는 새해 기운을 듬뿍 받아 돌아간다.

이 행사는 2002년부터 동해면이 주관하고 면내 전 기관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5) 특기사항

○ 고성 해양산업특구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

· 2007년 7월 25일 동해면 양촌용정지구 1,668,837㎡를 조선산업특구로 지정하였다가 그 후 내산,장좌지구까지 포함한 3,884,176㎡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였고 사업기간도 당초 2007년부터 2015년을 2018년까지 3년을 연장하였다.

사업비 역시 당초 6,048억원에서 1,904억원이 늘어난 7,952억원으로 확정하고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설비생산, 대형, 특수선박등을 생산토록 3개의 특화사업자를 지정하여 현

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장은 가동 중에 있다.

· 내산, 봉암, 장좌, 대가룡, 장기 등 5개 지역 1,682,102㎡를 일반산업단지로 승인하여 현재 준공1개지구 공사중 3개지구 미착공이 1개지구다.

· 동해면 내에는 해양산업특구, 일반산업단지, 기타산업체 등 총22개의 대형산업체가 가동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부지 총면적이 약6,0km²에 달해 동해면 전체면적 53.88 km²의 11.1%가 공장부지로 개발되고 있어 군내에서 제일 넓은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 현재 동해면에 가동중인 18개 업체에 종업원 4,45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고성군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6) 동해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최병선(崔秉善)	1945.12.26	1950.04.30	4년4월	
2	김학래(金鶴來)	1950.05.01	1952.05.04	2년	
3	김학래(金鶴來)	1952.05.05	1956.06.23	4년2월	의회간선
4	천학수(千學洙)	1956.06.28	1960.12.25	3년4월	의회간선
5	최인복(崔寅復)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6	이용조(李龍祚)	1961.07.13	1964.08.14	3년1월	별 정 직
7	황성욱(黃性沃)	1964.08.30	1970.04.20	5년8월	
8	정정갑(鄭丁甲)	1970.04.21	1976.01.03	5년8월	
9	김생규(金生奎)	1976.01.04	1986.03.28	10년 3월	
10	강임순(姜任淳)	1986.04.08	199306.30	7년3월	
11	이혜신(李惠信)	1993.07.01	1997.06.18	4년	
12	정풍대(鄭豐大)	1997.07.01	1998.08.31	1년2월	5급
13	허종옥(許宗玉)	1998.09.01	2000.12.08	2년3월	
14	제정봉(諸廷奉)	2000.12.09	2002.08.16	1년8월	
15	진윤생(陳潤生)	2002.08.17	2003.08.25	1년	
16	이원두(李元斗)	2003.08.26	2004.05.16	9월	
17	최양호(崔良鎬)	2004.05.17	2006.07.09	2년2월	
18	천익희(千翼熙)	2006.07.10	2009.01.05	2년6월	
19	김호준(金浩駿)	2009.01.06	2010.06.30	1년6월	
20	최삼식(崔三植)	2010.07.01	2011.12.31	1년6월	
21	조규춘(曹圭春)	2012.01.01	2013.06.30	1년6월	
22	이성열(李成烈)	2013.07.01	현 재		

○ 거류면

(1) 연혁

- 0 삼한,삼국시대 - 고자국 또는 소야가 관할
- 0 통일신라,고려시대 - 진여부곡, 적진향의 일부
- 0 조선시대
 - 초기 - 고성현에 존속
 - 1895년(고종32년) - 고성군 개칭시 광일면과 광남면으로 나누어짐
- 0 일제강점기
 - 1914년 3월 1일 - 양면을 병합하여 거류산의 이름을 따서 거류면으로 개칭
- 0 대한민국
 - 1973년 7월 1일 - 동해면 감서리를 거류면에 편입
 - 1984년 8월 22일 - 거류면 법정리를 9개리로 확정

(2) 청사

- 1914년 거류면 당동리 173-9번지에 면사무소 개청
- 1983년 거류면 당동리 75-6번지로 이전

(3) 기본 현황

○ 면적

(2013년말 현재)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호당 경지면적	수리 안전답율	경지 정리율
36.57km ²	14.40	18.30	3.87	1.2ha	62%	75%

○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가구당 인구
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2,572	1,670	221	691	5,159	2,711	2,448	2.0

○ 행정구역과 공무원

행정구역				공무원 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9	22	49	63	14	1	4	5	2	2

(4) 주요행사

0 거류면민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초등학교 학군별로 5개팀을 구성하여 거류체육공원및 보조경기장에서 4월에 개최하고 있다.

축구, 배구, 육상, 큰공굴리기, 윷놀이, 지게받이 고무신넣기, 줄다리기, 투호놀이, 농악대 시범공연등 체육경기와 민속놀이를 아울러 진행하며 면민노래자랑 등을 통해 면민이 하나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2006년부터 시작하여, 격년제로 열리고 있으며, 거류면 체육회가 주관하고 면내 전 기관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5) 가볼만한 곳

0 엄홍길 전시관과 거류산, 그리고 만화방초

고성군 출신 엄홍길 산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엄홍길전시관(2007년 10월 27일 개관)이 거류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전시관에는 세계의 최고봉들을 두발로 디디고 올라선 산악인 엄홍길의 일생과 16년동안 히말라야 8천미터 16좌를 완등하기 까지의 과정과 그 산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엄홍길 산악인이 기증한 등반장비가 전시되어 있고 눈덮힌 히말라야 고봉들의 그림과 모형으로 재현한 영상관, 세계적인 산악인들의 소개와 등반기술 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면 주차장에서 짐을 챙겨 곧바로 거류산(해발570.5m) 등반을 즐길수 있다.

진달래길, 소나무길, 기암 절벽을 지나 정상에 오르면 고성 전역과 한려해상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초축되고 수차례 수축을 거쳐 조선시대까지 군사시설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류산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엄홍길전시관과 거류산을 소재로 한 특별한 행사가 매년 11월에 이곳에서 열린다.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공룡나라 거류산 등산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고성군이 주최하고 거류면 의용소방대와 거류면 여성소방대가 주관하며 군내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대규모축제 행사다. 도내 산악인 단체회원과 군내 초,중,고 학생 군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무료 찻집, 먹거리장터, 엄홍길대장 사인회가 진행된후 등산 행사로 이어진다. 참여자 모두는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등산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거류산을 오르지 않고는 고성의 산을 안다고 말할수 없을 것이다. 주차장으로 하산한 후 시간이 남는다면 온갖 꽃과 향기로운 풀이 가득한 만화방초가 인근에 있다. 자연을 아끼고

고향을 사랑하는 어느 부부에 의해 십수년동안 정성들여 가꾸어 오던 비밀화원을 몇 년 전 부터 개방하였다. 가족단위나 연인끼리라면 더욱 보람된 시간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6) 거류면 역대 면장 현황

대 수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착임	이 임	재직기간	
1	최임출(崔壬出)	1946.10.20	1949.05.07	2년7월	
2	최유범(崔遺範)	1949.07.10	1951.05.20	1년 10월	
3	박남기(朴南基)	1951.07.13	1952.02.20	7월	
4	허 도(許 道)	1952.09.29	1956.06.23	3년9월	의회간선
5	김용옥(金容玉)	1956.07.28	1959.07.27	3년	의회간선
6	김병준(金秉俊)	1959.07.29	1960.11.29	1년4월	의회간선
7	임봉회(林鳳會)	1960.12.26	1961.06.21	6월	민선
8	최대식(崔大植)	1961.07.19	1970.08.14	9년1월	별 정 직
9	이영조(李永兆)	1970.08.15	1972.07.20	1년 11월	
10	이영현(李永鉉)	1972.08.01	1979.01.13	6년5월	
11	허복만(許福萬)	1979.01.15	1990.07.26	11년 6월	
12	이용구(李龍九)	1990.08.07	1995.08.06	5년	
13	김일대(金一大)	1995.08.09	1997.12.31	2년4월	5급
14	정화성(鄭和聖)	1998.01.01	1998.08.31	8월	
15	이원두(李元斗)	1998.09.01	1999.06.09	9월	
16	강익수(姜益秀)	1999.06.10	2000.06.25	1년1월	
17	김진용(金鎭龍)	2000.06.26	2003.04.09	2년9월	
18	정종우(鄭鍾楯)	2003.04.10	2003.06.09	2월	
19	허용도(許容道)	2003.06.09	2004.05.16	11월	
20	김차영(金且英)	2004.05.17	2006.07.09	1년 11월	
21	최삼식(崔三植)	2006.07.10	2008.07.14	2년	
22	조규춘(曹圭春)	2008.07.15	2010.08.01	2년	
23	황호원(黃鎬元)	2010.08.02	2011.12.31	1년5월	
24	김경섭(金敬鑷)	2012.01.01	2013.06.30	1년6월	
25	김 근(金 根)	2013.07.01	현 재		

(보기: 고성군 행정과 인사발령대장. 읍면 제출자료, 전화, 현지 확인)

제 5절 고성군의의회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議事機關)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표란 근대정치학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의 대표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의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다수의 의원에 의한 기관의사의 결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다수결의 원리가 채택되는 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기관의사의 결정제도를 합의체라 한다.

지방의회는 오늘날의 이른바 간접민주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다. 원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평등한 주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정되고,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이른바 직접민주제가 이상적이겠으나, 오늘날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그 구역과 주민수 등에 비추어 실제·기술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총의를 대신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구성하여 그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자치운영에 반영하는 이른바 간접민주제(대표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에도 주민청구·투표 등 직접민주제가 대의제의 보완책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대의제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실제적 지위와 권한은 지방정부조직이 기관통합주의에 입각하는 경우와 기관 대립주의에 입각하는 경우에 각각 다르다.

2. 권력구조와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국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전제적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의 분립을 통한 권력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국정에서와 같이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립이 아니라, 입법·행정권 사이의 분립이 기본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있어서 권력분립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이 아니고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구체적인 형태를 달리한다. 즉, 권력의 분립과 견제·균형을 엄격히 실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권력을 분할하되 어느 한쪽의 우위를 인정하는 경우, 권력을 분립하되 상호 대립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권력을 분립하지 아니하고 통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권력분립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지방의회가 가지는 지위와 기능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지방의회는 권능(지위와기능)은 그야말로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

- ① 의결권 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유형
- ② 의결권을 가지고 집행작용에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형
- ③ 단순한 자문적 권능만을 가지고 있는 유형

제1유형에는 전술한 기관통합형, 즉 영국의 의회, 미국의 위원회, 프랑스의 신지방분권법에 의한 의회의장등이 포함되고, 제2유형에는 대부분의 나라의 지방의회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그 권능의 강약에 따라 또한 여러 가지로 나누일 수 있다. 제3유형은 기초적 자치단체는 그 예가 거의 없고 광역권 준자치단위에 그 예가 다소 보일 뿐이다.

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 구성의 연혁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을 설치한 역사는 꽤 길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청(鄕亭)제도,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제도, 일제 강점기의 도회(道會), 부회(府會), 읍회(邑會)제도 등이 모두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향청은 엄격히 말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보다는 양반·토호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아닌 일종의 자문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았고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는 의결권을 가진 근대적 지방의회는 효시였으나 당시의 정치적 혼란속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자 함께 폐지되고 말았으며 일제 강점기의 도회·부회·읍회는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지방의회는 조건을 거의 갖춘 것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일본의 조선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붙은 것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근대적 지방의회 제도가 채택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부터 였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서 역사적인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계속되는 정치의 불안과 더구나 뒤이은 6.25전쟁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를, 5월 10일에 시·도 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후 값진 지방자치의 경험을 쌓게 되었으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고(동 헌법 부칙 제7호 제3항), 제4공화국은 조국통일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동 헌법 부칙 제10조), 제5공화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순차적 구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하지 않아(동 헌법 부칙 제10조) 계속 지방의회의 구성이 미루어져 왔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광역시·도는 내무부장관,(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 시·군은 도지사(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8년 4월 6일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법의 규정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지방선거의 실시 시기를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1991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동년 6월 20일에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4년 임기의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1995년에 구성되는 지방의회만은 국회의원 선거와의 간격을 고려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하였고 1998년에 다시 4년 임기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방의회의 지위

1)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오늘날에는 여러가지 이유에 의하여 간접민주정치가 불가피한 상황인바, 이러한 간접민주정치에서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립이 그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설치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의 회의조직과 운영 여하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18조 제2항)

2)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사의 결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즉 그 확정은 다른 기관의 결정을 기다려야하는) 이른바 자문기관과 다르다 이렇게 볼때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 체제 아래서 입법권의 행사를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이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제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규칙이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아니면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 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의 귀속 여부는 자주성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4) 행정 감사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대표기관 의결기관 및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에 그와 같은 감독, 확인의 기능이 부여되지 아니할때에는 의회의 대표기능과 의결기능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이러한 감독, 확인의 기능은 필수적인 기능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행정 감시 기관적 지위로 중요한 지위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참고: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3. 고성군 의회의 구성

1) 의원의 정수

○ 1990년 12월 31일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법률 제4311호) 제14조에 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초과하는 매2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7인 미만인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라고 하여 하한선을 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에서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함에 따라 1991년 2월 18일 경상남도 조례 제2022호로 경상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정수를 고성읍 2인 13개면 1인씩 총15명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제1대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제2대 고성군의회 의원 정수 역시 15인이었다.

○ 1998년 6월 4일 실시한 제3대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는 19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되어 동년 5월 8일 경상남도 조례 제2559호로 의원 정수를 고성읍을 1인으로, 전체 14인으로 확정하여 선거를 실시하였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제4대 고성군의회 의원 정수 역시 14인 이었다.

○ 제5대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는 2005년 8월 4일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정수를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선거구 확정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구를 획정하고, 지역구 별로 선출할 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아울러 비례대표는 시·군 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고 하여 처음으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2006년 1월 12일 경상남도 조례 제3131호로 고성읍을 가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2인. 삼산, 하일, 하이, 상리면을 나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2인. 대가, 영현, 영오, 개천, 마암면을 다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2인. 구만, 회화, 동해, 거류면을 라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3인등 총9인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1인이었다.

○ 제6대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를 고성읍, 삼산, 하일면을 가선거구로 정하고 의원 정수 4인, 하이,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면을 나선거구로 하여 의원정수 2인,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을 다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3인으로 정함으로써 전체 의원 정수 9인은 변함없이 지역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선거구를 재 획정하여 2010년 6월 2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자치구, 시, 군 의원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은 2018년 6월 30일 임기 만료시까지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여, 이번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제7대에만 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고성읍, 삼산면을 고성군 가선거구로 하고, 의원 정수 3인,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면을 고성군 나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3인,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을 고성군 다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3인등 9인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2인을 포

함하여 제7대 고성군의회의원 정수는 11인이었다.

2) 고성군 의회의 기구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부조직 기구를 가진다. 그 조직 기구에는 일반적으로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회 및 사무조직이 있다. 3개 상임위원회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464호)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 의장단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 유지 및 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의원 가운데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1인을 선거한다. 의장단의 선거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그 불신임 의결은 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설치 이유는 본회의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규모 회의체에서 토론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으며 행정의 전문화에 의회의 전문화를 부응시킬수 있다는데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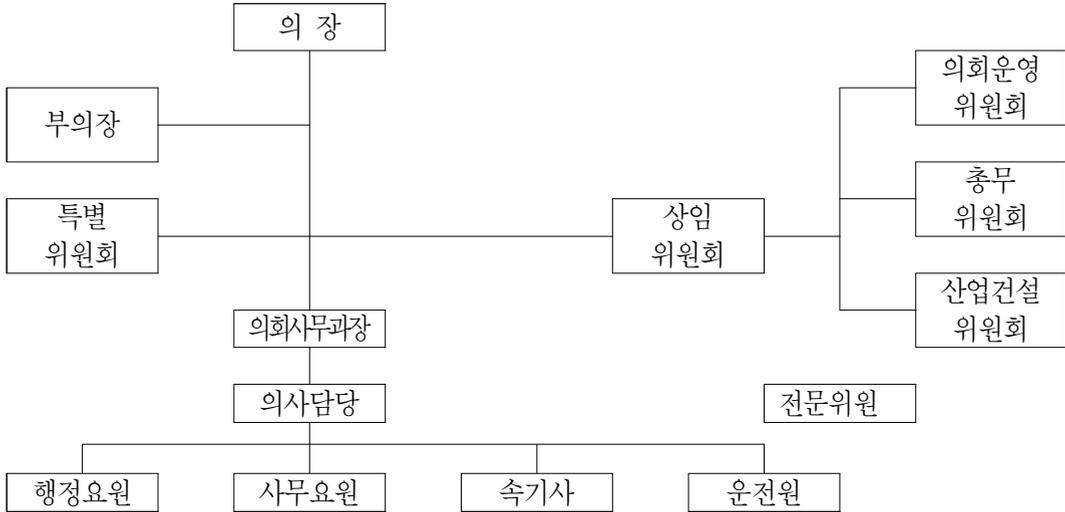
○ 의회 사무과

지방의회 사무를 전담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조직이다. 그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 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등 의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을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진행을 보좌하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검토 보고서 및 심사 보고서 작성,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담당한다.

3) 고성군 의회 기구표



○ 제1대 고성군의회 의원

(1991.4.15 ~ 1995.6.30)

지역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임기중 의회 직위	
				전반기	후반기
고성읍	김영철	1921.12.27	수산업	-	총무위원장
고성읍	박경재	1936.02.14	회사원	-	-
삼산면	황석도	1944.08.03	수산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하일면	김행정	1943.12.13	농업	-	-
하이면	박장일	1940.11.27	건설업	-	산업건설위원장
상리면	곽근영	1954.01.01	농업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대가면	김동봉	1940.07.31	축산업	총무위원회간사	-
영현면	강환영	1931.10.21	농업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영오면	하진권	1948.07.25	농업	-	-
개천면	한종구	1945.05.06	상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구만면	김익수	1939.12.18	농업	-	총무위원회 간사
회화면	김대산	1935.01.20	건설업	부의장	부의장
마암면	정채용	1943.01.01	농업	산업건설위원장	-
동해면	전완중	1928.03.25	농업	의장	의장
거류면	허복만	1935.09.08	농업	총무위원장	-
	15				

○ 제1대 의회 활동 상황

· 회의 및 의안 처리

(1991.4.15. ~ 1995.6.30)

구 분	계			정례회			임시회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1991하반기	6	56	85	1	30	38	5	26	47
1992	7	60	94	1	30	21	6	30	73
1993	7	60	114	1	30	34	6	30	80
1994	9	79	128	1	35	39	8	44	89
1995상반기	4	24	58	-	-	-	4	24	58
계	33	279	479	4	125	132	29	154	347

· 특별 위원회 활동

구분	계		예산결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기타사무감사			
	회수	일수	회수	일수	인원	회수	일수	인원	지적	회수	일수	인원	지적
1991 하반기	5	18	3	12	21	1	3	14	36건	1	3	7	40
1992	5	13	3	10	21	1	3	14	33	1	8	7	12
1993	6	18	4	10	28	1	3	14	20	1	5	14	9
1994	4	24	2	10	14	1	6	14	105	1	8	14	32
1995 상반기	-	-	-	-	-	-	-	-	-	-	-	-	-
계	20	73	12	42	84	4	15	52	194	4	24	42	93

· 기타 의정 활동

구분	계	1991하반기	1992	1993	1994	1995상반기
계	86	20	24	21	14	7
군정질문	86	20	24	21	14	7
4분자유발언	-	-	-	-	-	-

· 민원 처리

계	1991하반기	1992	1993	1994	1995상반기	비고
25	5	5	-	9	6	

○ 제2대 고성군 의회 의원 (1995.7.1. ~ 1998.6.30)

지역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임기중 의회 직위	
				전반기	후반기
고성읍	김성규	1937.12.13	상업	부의장	-
고성읍	안수일	1946.05.29	관광업	-	-
삼산면	이익수	1935.03.21	농업	-	-
하일면	김행정	1943.12.13	상업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하이면	윤정호	1939.08.01	기타	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상리면	박태공	1961.10.10	기타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대가면	이상근	1953.11.19	상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영현면	박상수	1945.07.27	상업	총무위원회 간사	-
영오면	하진권	1948.07.25	농업	산업건설위원장	부의장
개천면	박현규	1949.01.10	농업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구만면	이재호	1941.09.20	농업	-	총무위원회 간사
회화면	박충용	1941.10.10	기타	-	의장
마암면	정채용	1943.01.01	농업	의장	-
동해면	김문수	1943.02.24	농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산업건설위원장
거류면	최정훈	1957.09.06	건설업	-	-
	15				

○ 제2대 의회 활동 상황

· 의회 및 의안 처리

(1995.7.1 ~ 1998.6.30)

구분	계			정례회			임시회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1995하반기	7	56	81	1	35	33	6	21	48
1996	9	80	126	1	35	36	8	45	90
1997	8	80	92	1	35	30	7	45	62
1998상반기	3	23	36	-	-	-	3	23	36
계	27	239	335	3	105	99	24	134	236

· 특별 위원회 활동

구분	계		예산결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기타사무감사			
	회수	일수	회수	일수	인원	회수	일수	인원	지적	회수	일수	인원	지적
1995 하반기	5	20	4	13	28	1	7	14	42건	-	-	-	-
1996	4	67	3	10	21	1	7	14	73	1	50	7	26
1997	5	18	4	11	28	1	7	14	55	-	-	-	-
1998 상반기	1	2	1	2	7	-	-	-	-	-	-	-	-
계	15	107	12	36	84	3	21	42	170	1	50	7	26

· 기타 의정 활동

구분	계	1995하반기	1996	1997	-	1998상반기
계	70	14	19	31		6
군정질문	57	14	16	23		4
4분자유발언	13	-	3	8		2

· 민원 처리

계	1995하반기	1996	1997	-	1998상반기	비고
21	6	8	7		-	

○ 제3대 고성군 의회 의원

(1998.7.1. ~ 2002.6.30)

지역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임기중 의회 직위	
				전반기	후반기
고성읍	안수일	1949.05.29	관광업	의장	-
삼산면	정재욱	1942.02.17	어업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하일면	이계수	1948.12.02	농업	의회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하이면	고형호	1939.12.11	상업	-	총무위원회 간사
상리면	곽근영	1954.01.01	농업	총무위원장	-
대가면	이상근	1953.11.19	상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영현면	김명하	1946.07.07	농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영오면	정재근	1935.01.04	상업	-	의장
개천면	김복전	1940.07.28	농업	총무위원회 간사	-

구만면	최현덕	1950.12.16	농업	-	의회운영위원장
회화면	박충용	1941.10.10	기타	-	-
마암면	허중철	1939.06.27	농업	부의장	-
동해면	김문수	1943.02.24	농업	-	부의장
거류면	최정훈	1957.09.06	건설업	-	총무위원장
	14				

○ 제3대 의회 활동 상황

· 회의 및 의안 처리

(1998.7.7. ~ 2002.6.30)

구 분	계			정례회			임사회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1998하반기	6	57	80	1	35	30	5	22	50
1999	8	80	128	1	35	36	7	45	92
2000	9	80	119	2	35	48	7	45	71
2001	9	80	118	2	35	37	7	45	81
2002상반기	3	21	30	-	-	-	3	21	30
계	35	318	475	6	140	151	29	178	324

· 특별 위원회 활동

구분	계		예산결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기타사무감사			
	회수	일수	회수	일수	인원	회수	일수	인원	지적	회수	일수	인원	지적
1998 하반기	4	21	3	7	20	1	7	14	86	-	-	-	-
1999	5	15	4	8	19	1	7	13	94	-	-	-	-
2000	6	16	5	9	26	1	7	13	118	-	-	-	-
2001	6	18	5	11	25	1	7	12	106	-	-	-	-
2002 상반기	-	-	-	-	-								
계	21	70	17	35	90	4	28	52	404	-	-	-	-

· 기타 의정 활동

구분	계	1998하반기	1999	2000	2001	2002상반기
계	74	12	25	21	14	2
군정질문	60	9	19	19	11	2
4분자유발언	14	3	6	2	3	-

· 민원 처리

계	1998하반기	1999	2000	2001	2002상반기	비고
-	-	-	-	-	-	

○ 제4대 고성군 의회 의원

(2002.7.1. ~ 2006.6.30)

지역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입기중 의회 직위	
				전반기	후반기
고성읍	황수갑	1950.12.23	관광업	-	-
삼산면	박태훈	1959.05.25	수산업	산업건설위원장	-
하일면	이계수	1948.12.02	농업	-	부의장
하이면	고형호	1939.12.11	상업	-	-
상리면	박태공	1961.10.10	기타	의회운영위원장	-
대가면	제준호	1948.01.11	건설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장
영현면	최갑중	1947.08.21	농업	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영오면	송정현	1959.03.25	농업	총무위원회 간사	총무위원장
개천면	강중구	1949.10.18	농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산업건설위원장
구만면	이재호	1941.09.20	농업	의장	의장
회화면	하학열	1958.07.29	도정업	총무위원장	-
마암면	정임식	1952.11.01	농업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동해면	정명갑	1941.05.03	농업	(2002.12.21사직)	-
동해면	정호용	1955.02.15	기타	(2003.4.24보궐선거)	총무위원회 간사
거류면	공점식	1956.09.20	축산업	-	-
	14				

○ 제4대 의회 활동 상황

· 회의 및 의안 처리

(2002.7.1. ~ 2006.6.30)

구분	계			정례회			임시회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2002하반기	7	59	77	2	35	39	5	24	38
2003	9	80	96	2	35	39	7	45	57
2004	9	80	109	2	35	35	7	45	74
2005	9	80	103	2	42	44	7	38	59
2006상반기	3	23	41	-	-	-	3	23	41
계	37	322	426	8	147	157	29	175	269

· 특별 위원회 활동

구분	계		예산결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기타사무감사			
	회수	일수	회수	일수	인원	회수	일수	인원	지적	회수	일수	인원	지적
2002 하반기	5	28	4	21	21	1	7	13	77건	-	-	-	-
2003	6	37	5	30	28	1	7	13	86	-	-	-	-
2004	5	29	4	22	21	1	7	13	82	-	-	-	-
2005	5	31	4	24	21	1	7	14	84	-	-	-	-
2006 상반기	1	11	1	11	7	-	-	-	-	-	-	-	-
계	22	136	18	108	98	4	28	53	329	-	-	-	-

· 기타 의정 활동

구분	계	2002하반기	2003	2004	2005	2006상반기
계	36	8	9	10	8	1
군정질문	25	4	8	8	5	-
4분자유발언	11	4	1	2	3	1

· 민원 처리

계	2002하반기	2003	2004	2005	2006상반기	비고
17	-	-	1	11	5	

· 환경보전 특별위원회 활동

① 목적

삼산면 병산마을내 폐광산의 오염물질이 주변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켜 쌀이 오염되고 이를 먹은 주민들이 “이타이,이타이”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2004.3.4)로 인해 고성군의 농산물 홍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고, 상리면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허가됨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 마암면과 동해면의 경계지점인 마동호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전등 환경위해요소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다.

② 위원회 구성

2004년 6월 18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864호로 채택되어 위원장

에 공점식의원, 간사에 정임식의원, 위원에 박태훈, 박태공, 송정현, 하학렬, 정호용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활동기간은 당초 2004년 6월 22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활동 결과 방대한 업무량으로 인해 2005년 6월 21일까지 1차 연장하고 또다시 2006년 6월 21일까지로 연장하여 총 활동기간이 2년간이었다.

활동 범위는 군내 폐광산과 그 주변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 현장, 마동호 건설현장, 그리고 군내 환경오염 우려시설 등으로 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③ 활동 상황

고성군의 관련부서로 부터 5회에 걸쳐 실태와 대책보고를 받았고 관내 폐광산 4개소에 3회, 마동호 2회, 울대농공단지 1회 등 총 6회의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타지역 폐광산 복구 현장 견학을 위해 부산시 기장군 일광광산과 경기도 광명시 강학 광산을 방문하였다. 또한 마동호 연안주민들의 간담회를 5회, 울대농공단지 인근 주민 간담회 1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정취하였다.

④ 활동 결과

· 폐광산 지역 공해 방지 사업 추진

삼산면 병산리 폐광산 주변 지역에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2차에 걸쳐 국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공해방지사업을 완료 자연 및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 언론사에 대한 조치

“오염된 쌀 먹은탓” 등을 왜곡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2004년 6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중재를 신청하여 동년 7월 15일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였으며 동년 12월 9일 “이타이 이타이” 질병이 아니며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환경부에서 공식 발표하였고 고성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국내 신문·방송사에 제공하여 방송, 보도케 하였다.

· 병산 주민 건강 관리

병산마을 전체 주민들에 대하여 고성군 보건소와 마산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대부분 건강장애 없음이 밝혀졌고 그중 일부주민이 2차 검진대상으로 확정되어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다.

· 울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에 군비 5억8백만원, 관련업체에서 3억5천만원 등 총공사비 8억5천8백만원을 투입, 폐수종말시설 악취 저감공사를 발주하

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 상리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중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문제점이 해소되어 활동치 않았다.

○ 제5대 고성군 의회 의원

(2006.7.1. ~ 2010.6.30)

지역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임기중 의회 직위	
				전반기	후반기
가선거구 (고성읍)	어경효	1957.03.10	축산업	총무위원장	-
	김홍식	1962.10.27	건축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산업건설위원장
나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면)	박태훈	1959.05.25	수산업	총무위원회 간사	-
	최을석	1955.05.16	농업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다선거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마암면)	제준호	1948.01.11	건설업	의회운영위원장	의장
	송정현	1959.03.25	농업	부의장	부의장
라선거구 (구만, 회화, 동해, 거류면)	하학열	1958.07.29	도정업	의장	-
	최계몽	1949.01.20	농업	-	총무위원장
	황대열	1949.06.18	법무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비례대표	김관돌	1947.02.07	농업	-	-
	10				

○ 제5대 의회 활동 상황

· 회의 및 의안 처리

(2006.7.1 ~ 2010.6.30)

구분	계			정례회			임시회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2006하반기	7	57	84	2	38	39	5	19	45
2007	9	84	114	2	36	38	7	48	76
2008	9	85	100	2	37	37	7	48	63
2009	8	84	99	2	37	40	6	47	59
2010상반기	2	12	29	-	-	-	2	12	29
계	35	322	426	8	148	154	27	174	272

· 특별 위원회 활동

구분	계		예산결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기타사무감사			
	회수	일수	회수	일수	인원	회수	일수	인원	지적	회수	일수	인원	지적
2006 하반기	3	14	2	7	12	1	7	9	86건	-	-	-	-
2007	6	39	5	32	30	1	7	9	78	-	-	-	-
2008	5	32	4	25	24	1	7	9	89	-	-	-	-
2009	6	39	5	32	30	1	7	9	85	-	-	-	-
2010 상반기	1	4	1	4	6	-	-	-	-	-	-	-	-
계	21	128	17	100	102	4	28	36	338	-	-	-	-

· 기타 의정 활동

구분	계	2006하반기	2007	2008	2009	2010상반기
계	22	3	8	2	6	3
군정질문	4	-	2	-	2	-
4분자유발언	18	3	6	2	4	3

· 민원 처리

계	2006하반기	2007	2008	2009	2010상반기	비고
40	7	5	14	11	3	

○ 제6대 고성군 의회 의원

(2010.7.1. ~ 2014.6.30)

지역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임기중 의회 직위	
				전반기	후반기
가선거구 (고성읍, 삼산, 하일면)	박태훈	1959.05.25	수산업	의장	
	최을석	1955.05.16	농업		부의장
	김홍식	1962.10.27	기타		총무위원장
	정도범	1951.04.06	기타	총무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나선거구 (하이,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송정현	1959.03.25	농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기선	1949.09.21	기타	의회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다선거구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	황대열	1949.06.18	법무사	부의장	의장
	정임식	1952.11.01	농업	(2012.1.5. 사망)	
	황보길	1962.08.03	어업	(2012.4.11. 보궐선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호용	1955.02.15	기타	산업건설위원장	총무위원회 간사
비례대표	류두옥	1952.02.15	농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10				

○ 제6대 의회 활동 상황

· 의회 및 의안 처리

(2010.7.1-2014.6.30)

구 분	계			정례회			임시회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회수	일수	의안처리
2010하반기	6	71	93	2	34	44	4	37	49
2011	8	88	108	2	38	42	6	50	66
2012	9	83	127	2	40	40	7	43	87
2013	8	89	116	2	39	41	6	50	75
2014상반기	2	11	17	-	-	-	2	11	17
계	33	342	461	8	151	167	25	191	294

· 특별 위원회 활동

구분	계		예산결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기타사무감사			
	회수	일수	회수	일수	인원	회수	일수	인원	지적	회수	일수	인원	지적
2010 하반기	5	13	4	6	14	1	7	9	98	-	-	-	-
2011	6	22	5	14	17	1	8	9	145	-	-	-	-
2012	5	38	4	9	14	1	9	9	127	-	-	-	-
2013	6	18	5	9	18	1	9	9	105	-	-	-	-
2014 상반기	-	-	-	-	-	-	-	-	-	-	-	-	-
계	22	91	18	38	63	4	33	36	475	-	-	-	-

· 기타 의정 활동

구분	계	2010하반기	2011	2012	2013	2014상반기
계	26	3	4	2	16	1
군정질문	9	-	-	-	9	-
4분자유발언	17	3	4	2	7	1

· 민원 처리

계	2010하반기	2011	2012	2013	2014상반기	비고
29	3	4	15	6	1	

(보기:고성군의회 의사과 보존문서)

○ 제7대고성군의회 의원

(2014. 7. 1 ~ 2018. 6. 30)

지역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임기중 의회 직위	
				전반기	후반기
가선거구 (고성읍.삼산면)	김홍식	1962.10.27	기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도범	1951.04.06	기타	-	
	김상준	1959.05.10	농업	-	
나선거구(하일·하이 ·상리·대가· 영현·영오·개천면)	최을석	1955.05.16	농업	의장	
	강영봉	1957.04.01	기타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1961.06.11	축산업	-	
다선거구 (구만·회화·마암 ·동해·거류면)	공점식	1956.09.20	농업	총무위원장	
	황보길	1962.08.03	수산업	부의장	
	박용삼	1960.06.27	축산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비례대표	박덕해	1955.01.06	수산업	의회운영위원장	
	이쌍자	1968.03.15	기타	총무위원회 간사	
	10				

제 6절 고성군 읍·면 지방의회

1. 읍·면 지방의회의 연혁

1) 일제 강점기

1930년 전면적인 지방제도 개정이 단행되어 도·부·읍에 의결기관(지방의회)인 도회(道會), 부회(府會), 읍회(邑會)가 설치되고 면(面)에는 면장의 자문기관인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2) 미 군정기

일제의 패망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면서 서구식 정치, 행정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는 바 그중 지방의회인 도회, 부회, 읍회, 면 협의회를 해산시켰다.

3) 대한민국

(1) 지방자치의 시행

정부수립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읍·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와 도 및 시·읍·면으로 한정하였다.
- ② 시·읍·면장은 해당 시·읍·면 의회에서 선거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 ③ 지방의회는 임기 4년의 명예직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였다. 또한 의회에 시·읍·면장 불신임권을, 시·읍·면장에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였다.

- 의원수의 산정기준

· 읍은 인구 3만 미만일 때는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3만 이상일 때는 3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3천명에 대하여 1인을 추가한다.

· 면은 인구 5천 미만일 때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천이상 1만 미만일 때는 5천을 초과하는 인구 매 1천명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 이상일 때는 1만을 초과하는 2천명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가. 제1대 읍·면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지방자치법이 제정은 되었으나 계속되는 정치의 불안정과 더구나 뒤이은 6.25전쟁 등으

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전쟁중인 관계로 지방선거 실시 가능지역에 한하여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고성군은 14개 읍·면에 총 162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어 1952년 5월, 읍·면별로 지방의회를 각각 구성하였으며, 제일 먼저 읍·면장을 의회 간선으로 선출하였다.

나. 제2대 읍·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읍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하고, 그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였다.

②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역시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권을 폐지하였다.

③ 의원정수의 산정기준을 읍은 인구 3만명까지는 13인을 정원으로 하고, 3만이상일 때는 매 1만명에 1인을 증가하였으며, 면은 인구 1만명까지 11인을 정원으로 하고 1만명이상일 때는 매 1만명에 1인을 증가하였다.

○ 1956년 7월 8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그중 읍·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동법 부칙에 본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 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1956년 2월 12일 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임기로 한다 라고 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상의 기득권을 인정하였다.

○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장과 읍·면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고성군은 14개읍·면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 157인을 전원 선출하였으나 읍·면장의 경우 14개읍·면중 하일면과 영현면에서만 면장선거가 실시되고 나머지 12개 읍·면장은 전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직 읍·면장의 임기상의 기득권이 인정되어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 195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다시 연장하였다.

다. 제3대 읍·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 1960년 4.19학생의거후에 수립된 제2공화국은 민주정치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 동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읍·면을 주민의 직접선거제로 하고, 그 임기를 4년으로 하였으며, 의원 정수는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였다.

○ 1960년 12월 19일에 시·읍·면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12월 26일에 시·읍·면장의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고성군에서는 14개 읍·면에서 지방의회의원 157인과 읍·면장 14인을 선출하여 읍·면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61년 5월 군사혁명에 의해 그 구성 6개월 만에 해산되었다.

(2) 지방자치의 중단

○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써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서울특별시, 도지사는 내각이,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하여 전면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읍·면 지방자치는 그 시행 10년만에 막을 내렸다.

(3) 지방자치의 재 시행

○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법률 제707호, 1961년 10월1일 시행)을 제정하여 종래의 읍·면자치제 대신 군(郡)단위 자치제를 규정하고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 임시조치법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그 후 오랜기간 동안 지방자치의 재 시행과 관련하여 진통을 거듭하면서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1991년 3월 26일 시·군 단위를 기초의회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고성읍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홍 태 주	洪 泰 柱	1920.03.18	고성읍 수남리 69	
"	김 태 동	金 泰 東	1872.01.16	고성읍 수남리 37	
"	김 용 근	金 龍 根	1915.07.14	고성읍 성내리 54-2	
"	김 일 도	金 一 道	1917.07.08	고성읍 무량리 190	
"	김 갑 성	金 甲 聲	1899.04.25	고성읍 수남리 66	
"	김 영 만	金 榮 晩	1904.03.11	고성읍 대평리 20	
"	남 일 동	南 一 東	1917.08.13	고성읍 수남리 508	
"	김 기 봉	金 基 鳳	1906.02.02	고성읍 교사리 784	
"	김 남 도	金 南 道	1904.05.23	고성읍 수남리 37	

"	박능출	朴能出	1913.02.16	고성읍 월평리 422	
"	김범주	金凡柱	1923.03.05	고성읍 송학리 243-20	
"	최규일	崔圭駟	1916.07.17	고성읍 우산리 397	
"	김보문	金普文	1917.09.30	고성읍 성내리 146	
"	이진태	李鎭泰	1879.08.22	고성읍 이당리 609	
"	허성숙	許盛淑	1924.07.27	고성읍 송학리 467	
제2대	이강훈	李康焄	1909.07.17	고성읍 성내리 33	
"	김용근	金龍根	1915.07.14	고성읍 성내리 54-2	
"	이극성	李極星	1924.06.29	고성읍 교사리 235	
"	류점득	柳点得	1911.06.06	고성읍 수남리 92	
"	권한수	權翰洙			미확인
"	남일동	南一東	1917.08.13	고성읍 수남리 508	
"	박능출	朴能出	1913.02.16	고성읍 월평리 422	
"	구평만	具平萬	1922.01.18	고성읍 동외리 480	
"	박봉재	朴奉在			미확인
"	김재주	金在柱			미확인
"	김정태	金楨泰	1916.07.19	고성읍 우산리 384	
"	김보문	金普文	1917.09.30	고성읍 성내리 146	
"	박지조	朴之祚			미확인
제3대	강희봉	姜喜奉	1909.12.28	고성읍 교사리 272	
"	권동조	權東祚	1914.03.14	고성읍 성내리 322-1	
"	이권수	李權秀	1920.09.25	고성읍 동외리 503	
"	류점득	柳点得	1911.06.06	고성읍 수남리 92	
"	구평만	具平萬	1922.01.18	고성읍 동외리 480	
"	김범주	金凡柱	1923.03.05	고성읍 송학리 243-20	
"	조기석	趙琪碩	1923.01.01	고성읍 기월리 433	
"	최인호	崔人鎬	1918.08.03	고성읍 우산리 18	
"	임원조	林元祚	1911.04.19	고성읍 죽계리 366	
"	하정만	河晶萬	1934.03.10	고성읍 덕선리 501	
"	박삼주	朴三柱	1918.08.09	고성읍 신월리 635	
"	김정호	金正鎬	1917.05.07	고성읍 월평리 763	

○ 삼산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이강봉	李康奉	1919.09.09	삼산면 병산리 177	
"	구일대	具一大	1915.10.02	삼산면 두포리 1163	
"	구필서	具弼書	1926.02.15	삼산면 두포리 1323	
"	서병교	徐炳校	1897.05.21	삼산면 병산리 474	
"	김봉진	金奉辰	1909.03.17	삼산면 삼봉리 287	
"	김수구	金守九	1913.03.09	삼산면 미룡리 635	
"	심정섭	沈正燮	1916.04.12	삼산면 장치리 296	
"	윤상구	尹相九	1903.04.16	삼산면 삼봉리 597	尹相祐 개명
"	전두석	全斗錫	1902.09.25	고성읍 대독리 289	
"	박중기	朴仲基	1906.04.24	고성읍 이당리 306	
"	최점석	崔点石	1907.11.15	고성읍 이당리 784	
제2대	구필서	具弼書	1926.02.15	삼산면 두포리 1323	
"	김월천	金月川	1905.06.06	삼산면 미룡리 1153	
"	김경영	金經永			미확인
"	구일대	具一大	1915.10.02	삼산면 두포리 1163	
"	심정섭	沈正燮	1916.04.12	삼산면 장치리 296	
"	문창수	文昌守	1921.06.02	삼산면 미룡리 431	
"	김호업	金好業	1910.09.09	삼산면 삼봉리 946	
"	김수덕	金守德	1914.08.09	삼산면 삼봉리 801	
"	안우수	安羽秀	1911.05.14	삼산면 판곡리 457	
"	김희규	金喜奎			미확인
"	배상찬	裴相贊	1914.12.24	고성읍 이당리 554	
제3대	강종래	姜宗來	1923.12.17	삼산면 두포리 1277	
"	서정권	徐正權	1928.07.16	삼산면 병산리 474	
"	이수일	李秀一	1928.08.22	삼산면 두포리 225	
"	김우영	金禹永	1915.01.18	삼산면 판곡리 93	
"	문정규	文正奎	1913.03.10	삼산면 미룡리 402-1	
"	진길성	陳吉成	1923.04.30	삼산면 장치리 867	
"	강봉진	姜鳳振	1928.07.29	삼산면 삼봉리 234	
"	김봉호	金奉浩	1923.06.18	삼산면 삼봉리 585	
"	이민수	李珉洙	1935.05.27	고성읍 이당리 640	
"	이상석	李相碩	1916.08.03	고성읍 대독리 116	
"	정한수	鄭漢洙	1897.02.27	고성읍 이당리 333	

○ 하일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최 변 호	崔 汴 鎬	1906.08.15	하일면 용태리 256	
"	이 기 수	李 基 洙	1913.06.17	하일면 용태리 162	
"	이 성 대	李 成 大	1905.06.19	하일면 수양리 738	
"	배 을 흥	裴 乙 洪	1925.07.26	하일면 학림리 331	
"	배 현 부	裴 鉉 富	1914.02.26	하일면 송천리 373	
"	최 승 호	崔 升 鎬	1901.01.05	하일면 학림리 801	
"	최 재 효	崔 載 孝	1914.04.10	하일면 학림리 927	
"	용 문	龍 文	1925.09.12	하일면 동화리 187	
"	김 문 조	金 文 祚	1912.10.05	하일면 춘암리 466	
"	이 석 제	李 奭 濟	1892.06.04	하일면 오방리 643	
"	조 천 호	曹 千 浩	1925.11.15	하일면 춘암리 830	
제2대	이 기 수	李 基 洙	1913.06.17	하일면 용태리 162	
"	최 승 호	崔 升 鎬	1901.01.05	하일면 학림리 801	개명
"	이 성 대	李 成 大	1905.06.19	하일면 수양리 738	
"	배 을 흥	裴 乙 洪	1925.07.26	하일면 학림리 331	
"	이 병 춘	李 丙 春	1924.10.18	하일면 송천리 185	
"	최 재 수	崔 載 洙	1931.06.12	하일면 송천리 802	
"	이 동 열	李 東 烈	1922.08.07	하일면 학림리 434	
"	이 석 제	李 奭 濟	1892.06.04	하일면 오방리 643	
"	김 수 갑	金 守 甲			미확인
"	박 재 봉	朴 在 鳳			미확인
"	김 석 곤	金 碩 坤	1931.01.08	하일면 춘암리 71	
제3대	이 기 수	李 基 洙	1913.06.17	하일면 용태리 162	
"	최 진 모	崔 震 模	1914.03.24	하일면 수양리 565	
"	이 기 호	李 基 鎬	1926.04.01	하일면 수양리 737	
"	최 준 환	崔 濬 煥	1930.07.24	하일면 학림리 929	
"	심 귀 남	沈 貴 南	1911.09.02	하일면 학림리 1009	
"	배 성 준	裴 成 俊	1913.03.07	하일면 송천리 360	
"	배 현 규	裴 鉉 圭	1916.10.21	하일면 송천리 376	
"	정 명 호	鄭 明 浩	1928.05.16	하일면 동화리 412	
"	김 홍 곤	金 洪 坤	1921.04.20	하일면 춘암리 426	
"	조 응 택	曹 應 澤	1916.08.05	하일면 춘암리 832	
"	이 정 수	李 楨 洙	1919.04.13	하일면 오방리 237	

○ 하이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박응실	朴應實	1907.10.15	하이면 덕호리 1099	
"	이기경	李基慶	1912.01.01	하이면 덕호리 619	
"	최위형	崔渭衡	1915.05.13	하이면 사곡리 436	
"	박윤봉	朴潤奉	1919.07.24	하이면 덕호리 347	
"	정갑석	鄭甲奭	1922.04.25	하이면 덕명리 359	
"	박정옥	朴鉦沃	1915.01.25	하이면 월흥리 191	
"	박석문	朴錫文	1915.02.20	하이면 월흥리 351	
"	고청백	高淸伯	1897.12.30	하이면 봉원리 322-2	
"	정태호	鄭太浩	1898.11.25	하이면 와룡리 291	
"	손인호	孫仁浩	1923.03.02	하이면 석지리 325	
제2대	박종옥	朴鐘玉			미확인
"	최낙영	崔洛榮	1913.12.22	하이면 사곡리 440	
"	박상호	朴相昊	1912.08.04	하이면 석지리 308	
"	정판모	鄭判模	1920.10.26	하이면 덕명리 293	
"	박윤권	朴潤灌			미확인
"	박석권	朴錫灌	1918.07.27	하이면 월흥리 352	
"	박수열	朴樹烈	1922.05.03	하이면 월흥리 205	
"	박능출	朴能出	1914.05.07	하이면 와룡리 346	
"	손결순	孫結淳	1913.07.20	하이면 석지리 153	
"	박창욱	朴昌煜	1927.05.25	하이면 봉원리 366	
"	손인세	孫仁世	1925.06.29	하이면 석지리 128	
제3대	박상호	朴相昊	1920.02.04	하이면 덕호리 555	
"	박상원	朴相沅	1919.02.23	하이면 덕호리 638	
"	최낙영	崔洛榮	1913.12.22	하이면 사곡리 440	
"	강호기	姜鎬機	1932.12.13	하이면 월흥리 487	
"	박수열	朴樹烈	1922.05.03	하이면 월흥리 205	
"	양명호	梁明昊	1929.11.06	하이면 덕명리 265	
"	정판모	鄭判模	1920.11.21	하이면 덕명리 293	
"	강윤석	姜允錫	1930.07.16	하이면 봉현리 135	
"	박능출	朴能出	1914.05.07	하이면 와룡리 346	
"	손인세	孫人世	1925.06.29	하이면 석지리 128	
"	박병욱	朴柄煜	1922.04.09	하이면 석지리 429	

○ 상리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한 필 권	韓 弼 權	1920.12.30	상리면 척번정리 379	
"	이 종 춘	李 鐘 春	1910.07.21	상리면 고봉리 836	
"	김 기 대	金 基 大	1903.04.26	상리면 고봉리 442	
"	채 찬 수	蔡 讚 洙	1917.12.23	상리면 오산리 415	
"	강 익 순	姜 益 淳	1898.08.16	상리면 신촌리 281	
"	이 강 범	李 康 汎	1917.01.09	상리면 척번정리 330	
"	백 형 순	白 亨 舜	1910.12.10	상리면 부포리 234	
"	백 용 덕	白 龍 德			미확인
"	황 임 용	黃 壬 容	1922.09.04	상리면 망림리 998	
"	최 수 호	崔 水 鎬	1912.12.29	상리면 무선리 663	
"	이 응 수	李 應 洙	1911.04.28	상리면 척번정리 72	
제2대	이 응 수	李 應 洙	1911.04.28	상리면 척번정리 72	
"	김 락 실	金 樂 實	1898.03.07	상리면 동산리 272	
"	이 종 춘	李 鐘 春	1910.07.21	상리면 고봉리 836	
"	진 순 기	陣 順 基	1909.08.18	상리면 오산리 616	
"	이또명수	李又命秀	1915.11.10	상리면 신촌리 263	
"	박 인 성	朴 人 成			미확인
"	백 인 옥	白 寅 玉	1922.01.09	상리면 부포리 461	
"	박 성 옥	朴 聖 煜	1924.11.30	상리면 망림리 692	
"	최 갑 수	崔 甲 壽	1914.11.20	상리면 자은리 169	
"	이 용 년	李 鎔 年	1888.03.21	상리면 무선리 667	
"	백 갑 인	白 甲 寅	1915.08.26	상리면 부포리 229	
제3대	한 필 권	韓 弼 權	1920.12.30	상리면 척번정리 379	
"	문 윤 수	文 潤 洙	1915.03.22	상리면 척번정리 497	
"	박 달 원	朴 達 源	1901.09.07	상리면 고봉리 317	
"	최 익 수	崔 翼 守	1922.06.13	상리면 망림리 1201	
"	권 삼 수	權 三 壽	1910.10.20	상리면 척번정리 424	
"	권 병 현	權 丙 鉉	1914.05.21	상리면 무선리 663	
"	백 상 만	白 尙 萬	1912.11.24	상리면 부포리 591	
"	이 영 도	李 英 道	1918.03.29	상리면 부포리 57	
"	백 형 두	白 亨 杓	1916.11.22	상리면 부포리 223	
"	백 중 옥	白 鍾 玉	1930.01.27	상리면 부포리 248	
"	이 상 찬	李 相 瓚	1929.06.06	상리면 무선리 698	

○ 대가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이진부	李鎭富	1918.08.23	대가면 송계리 793	
"	이진택	李鎭澤	1916.09.05	대가면 송계리 780	
"	임영수	林泳水			미확인
"	허종칠	許宗七	1905.07.20	대가면 갈천리 1379	
"	이진평	李鎭平	1896.01.28	개천면 청광리 292	
"	허용중	許龍中	1914.04.10	대가면 금산리 389	
"	이찬규	李燦奎	1900.02.29	대가면 갈천리 1012	
"	정병택	鄭炳澤	1891.11.16	대가면 척정리 1104	
"	박희병	朴熙秉	1906.06.25	대가면 연지리 67	
"	김봉주	金鳳注	1909.11.03	대가면 유흥리 1054	
"	박점형	朴点亨	1905.07.17	대가면 양화리 496	
"	김동열	金東烈	1926.04.05	대가면 유흥리 690	
제2대	이진부	李鎭富	1918.08.23	대가면 송계리 793	
"	이진택	李鎭澤	1916.09.05	대가면 송계리 780	
"	허종칠	許宗七	1905.07.20	대가면 갈천리 1379	
"	강진규	姜振奎			미확인
"	제복근	諸復根	1921.03.09	대가면 척정리 13	
"	조필제	趙弼濟	1923.07.08	대가면 금산리 696	
"	정수정	鄭守正	1922.10.01	대가면 금산리 1130	
"	최명규	崔明圭	1904.03.15	대가면 유흥리 625	
"	이상철	李相哲	1928.06.14	대가면 유흥리 1100	
"	제정순	諸廷純	1926.09.02	대가면 척정리 877	
"	박척병	朴拓秉			미확인
제3대	허진호	許鎭昊	1922.11.27	대가면 갈천리 1169	
"	이윤도	李潤道	1917.11.14	대가면 금산리 167	
"	최말생	崔末生	1901.05.16	대가면 송계리 593	
"	임장우	林章雨	1923.01.01	대가면 신전리 1099-28	
"	제복근	諸復根	1921.03.09	대가면 척정리 13	
"	허태을	許泰乙	1918.01.28	대가면 척정리 1482	
"	정봉률	鄭奉律	1907.05.28	대가면 금산리 1066	
"	배기윤	裴基潤	1934.02.17	대가면 연지리 935	
"	최규조	崔圭祚	1916.04.02	대가면 유흥리 666	
"	정상범	鄭相範	1915.02.24	대가면 암전리 330	
"	한점술	韓奭述	1923.06.06	대가면 양화리 183	

○ 영현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강 휘 관	姜 彙 判	1904.08.18	영현면 침점리 205	
"	김 광 건	金 光 健	1910.09.06	영현면 대법리 79	
"	양 한 탁	梁 漢 鐸	1890.05.30	영현면 봉발리 850	
"	정 종 섭	鄭 鐘 聶	1906.06.20	영현면 영부리 854	
"	강 은 위	姜 銀 渭	1908.05.26	영현면 봉발리 505	
"	김 원 규	金 元 圭	1911.10.17	영현면 봉발리 837	
"	김 형 태	金 炯 台	1902.01.02	영현면 추계리 56	
"	정 병 진	鄭 炳 進	1914.02.12	영현면 연화리 632	
"	최 종 수	崔 鐘 洙	1918.12.16	영현면 연화리 730	
"	장 한 주	張 翰 周	1915.02.16	영현면 연화리 149	
"	김 철 백	金 哲 伯	1893.11.29	영현면 신분리 425	
제2대	김 태 모	金 泰 模	1909.02.14	영현면 영부리 873	
"	오 재 영	吳 在 永	1920.03.21	영현면 영부리 251	
"	박 미 수	朴 米 守	1901.03.17	영현면 대법리 16	
"	강 상 육	姜 相 六	1909.06.06	영현면 침점리 146-2	
"	정 일 규	鄭 一 奎	1913.12.14	영현면 대법리 491	
"	김 일 봉	金 一 奉	1910.05.17	영현면 봉발리 1124	
"	마 종 락	馬 宗 樂	1929.11.10	영현면 추계리 1124	
"	김 철 백	金 哲 伯	1893.11.29	영현면 신분리 425	
"	서 명 권	徐 孟 權	1922.06.10	영현면 연화리 655	
"	김 동 한	金 東 漢	1923.12.10	영현면 연화리 307	
"	백 만 도	白 萬 道	1910.07.10	영현면 신분리 910	
제3대	윤 성 석	尹 誠 錫	1914.11.14	영현면 봉림리 165	
"	박 정 기	朴 正 基	1927.11.19	영현면 대법리 16	
"	임 병 기	林 炳 基	1926.05.15	영현면 침점리 519-1	
"	백 정 옥	白 正 玉	1907.02.02	영현면 대법리 291	
"	한 용 호	韓 龍 浩	1918.02.21	영현면 봉발리 179	
"	양 홍 기	梁 洪 琦	1913.12.04	영현면 봉발리 850	
"	백 갑 조	白 甲 祚	1915.09.15	영현면 영부리 324	
"	박 재 고	朴 在 槁	1908.05.08	영현면 연화리 651	
"	정 병 진	鄭 炳 進	1914.02.12	영현면 연화리 632	
"	강 명 구	姜 明 九	1934.05.13	영현면 신분리 749	
"	박 용 식	朴 龍 植	1924.08.15	영현면 신분리 838	

○ 영오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윤 석 용	尹 碩 龍	1916.11.17	영오면 오서리 322	
"	서 정 복	徐 正 福	1921.12.05	영오면 오동리 323	
"	서 정 환	徐 廷 煥	1902.02.10	영오면 오동리 336	
"	김 채 노	金 採 魯	1907.11.06	영오면 영산리 45	
"	김 평 조	金 坪 祚	1923.03.19	영오면 영대리 742	
"	김 한 국	金 漢 國	1886.11.06	영오면 영대리 794	
"	김 기 영	金 琪 榮	1902.01.17	영오면 영산리 418	
"	김 상 오	金 相 五	1926.09.11	영오면 양산리 802	
"	김 재 학	金 載 學	1889.02.11	영오면 양산리 801	
"	김 영 기	金 永 己	1893.10.30	영오면 양산리 694	
"	이 홍 대	李 洪 大	1911.07.21	영오면 양산리 680	
제2대	서 종 인	徐 鐘 仁	1909.09.09	영오면 오동리 427	
"	서 몽 세	徐 夢 世	1918.09.06	영오면 오동리 308	
"	윤 석 용	尹 碩 龍	1916.11.17	영오면 오서리 322	
"	김 영 규	金 瑩 奎	1925.04.02	영오면 영대리 743	
"	우 대 섭	禹 大 燮	1927.03.20	영오면 성곡리 766	
"	김 필 수	金 弼 水	1916.12.20	영오면 성산리 448	
"	김 상 영	金 尙 永	1916.03.23	영오면 영대리 980	
"	하 상 수	河 尙 守	1897.02.10	영오면 연당리 263	
"	김 성 태	金 成 泰	1928.04.09	영오면 양산리 484	
"	이 점 관	李 点 判	1922.01.12	영오면 양산리 90	
"	김 사 현	金 士 鉉	1916.03.23	영오면 연당리 809	
제3대	이 정 열	李 貞 烈	1926.12.24	영오면 오서리 223	
"	윤 석 용	尹 碩 龍	1916.11.17	영오면 오서리 322	
"	서 웅 환	徐 雄 煥	1922.05.12	영오면 오동리 213	
"	우 대 섭	禹 大 燮	1927.03.20	영오면 성곡리 766	
"	김 한 섭	金 漢 燮	1920.02.28	영오면 영대리 765	
"	김 병 옥	金 炳 玉	1929.09.02	영오면 영대리 844	
"	김 낙 영	金 洛 永	1921.10.25	영오면 영산리 433	
"	김 석 곤	金 錫 坤	1913.04.03	영오면 영산리 415	
"	서 호 진	徐 鎬 鎭	1928.04.30	영오면 양산리 289	
"	류 을 수	柳 乙 壽	1923.05.01	영오면 양산리 569	
"	김 상 배	金 商 培	1928.10.23	영오면 양산리 67	

○ 개천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김 동 윤	金 東 允	1923.12.05	개천면 용안리 992	金琮彬으로 개명
"	김 동 원	金 東 元	1917.06.11	개천면 명성리 432	
"	채 종 만	蔡 鐘 萬	1925.02.05	개천면 예성리 190-2	
"	김 동 길	金 東 吉	1907.01.02	개천면 예성리 158	
"	김 형 수	金 亨 洙	1911.06.26	개천면 청광리 592	
"	김 복 만	金 福 萬	1916.08.05	개천면 용안리 998	
"	최 상 노	崔 相 魯	1913.02.09	개천면 용안리 78	
"	박 용 계	朴 容 啓	1919.05.05	개천면 나선리 877	
"	최 식 립	崔 式 林	1906.04.17	개천면 가천리 248	
"	최 도 형	崔 道 亨	1914.12.03	개천면 청광리 338	
제2대	유 병 진	劉 炳 珍	1924.04.02	개천면 명성리 292	
"	김 동 지	金 東 之	1928.02.06	개천면 명성리 460	
"	강 대 조	姜 大 祚	1929.02.09	개천면 명성리 564-1	
"	김 동 승	金 東 承	1916.02.29	개천면 명성리 466	
"	김 형 수	金 亨 洙	1911.06.26	개천면 청광리 592	
"	김 성 두	金 成 斗	1915.03.25	개천면 봉치리 401	
"	김 봉 구	金 鳳 九	1921.10.22	개천면 용안리 947	
"	최 갑 호	崔 甲 鎬	1916.05.29	개천면 가천리 64	
"	박 용 계	朴 容 啓	1919.05.05	개천면 나선리 877	
"	황 두 연	黃 斗 淵	1916.05.27	개천면 나선리 421	
"	강 계 수	姜 桂 秀	1923.03.22	개천면 가천리 218	
제3대	강 현 대	姜 賢 大	1912.11.15	개천면 명성리 564	
"	심 재 종	沈 載 鐘	1924.01.24	개천면 명성리 433	
"	채 종 주	蔡 鐘 柱	1922.10.07	개천면 예성리 188	
"	김 동圭	金 東 圭	1924.11.14	개천면 예성리 526	
"	김 성 두	金 成 斗	1915.03.25	개천면 봉치리 401	
"	김 길 수	金 吉 洙	1927.01.15	개천면 용안리 631	
"	최 도 형	崔 道 亨	1914.12.03	개천면 청광리 338	
"	김 해 용	金 海 龍			미확인
"	박 용 섭	朴 容 燮	1927.01.11	개천면 나선리 848	
"	김 종 석	金 宗 錫	1913.05.03	개천면 가천리 787	
"	최 갑 금	崔 甲 金	1905.12.09	개천면 가천리 248	

○ 구만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김 종 문	金 鐘 汶	1916.07.10	구만면 광덕리 29	
"	이 선 탁	李 善 鐸	1920.06.16	구만면 효락리 753	
"	문 쾌 도	文 快 道	1919.04.06	구만면 광덕리 805	
"	성 용 석	成 龍 碩	1909.04.07	구만면 광덕리 832	
"	곽 종 식	郭 鐘 植	1915.10.20	구만면 효락리 144	
"	조 태 회	趙 泰 會	1896.09.17	구만면 주평리 489	
"	최 임 수	崔 壬 秀	1922.06.22	구만면 화림리 497	
"	최 을 대	崔 乙 大	1905.04.02	구만면 화림리 467	
"	최 진 호	崔 晋 鎬	1902.10.07	구만면 광덕리 820	
"	이 택 수	李 澤 洙	1914.08.18	구만면 저연리 248	
"	이 태 수	李 台 洙	1883.08.09	구만면 저연리 258	
제2대	이 두 원	李 斗 元	1909.01.15	구만면 효락리 663	
"	이 양 대	李 良 大	1901.02.02	구만면 용화리 90	
"	최 재 호	崔 宰 鎬	1907.11.16	구만면 광덕리 811	
"	최 정 의	崔 正 義	1905.04.02	구만면 화림리 467	
"	곽 두 성	郭 斗 星	1910.10.02	구만면 효락리 146	
"	최 영 호	崔 永 鎬	1916.09.01	구만면 화림리 718	
"	조 대 길	曹 大 吉	1911.09.08	구만면 주평리 503	
"	이 태 수	李 台 洙	1883.08.09	구만면 저연리 258	
"	이 택 수	李 澤 洙	1914.08.18	구만면 저연리 248	
"	이 상 국	李 相 國	1918.08.16	구만면 용화리 628	
제3대	조 대 길	曹 大 吉	1911.09.08	구만면 주평리 503	
"	곽 두 성	郭 斗 星	1910.10.02	구만면 효락리 146	
"	이 선 탁	李 善 鐸	1920.06.16	구만면 효락리 763	
"	이 태 삼	李 泰 三	1917.02.03	구만면 저연리 279	
"	이 진 상	李 鎭 祥	1920.12.18	구만면 저연리 223	
"	이 택 수	李 澤 洙	1914.08.18	구만면 저연리 248	
"	최 영 호	崔 永 鎬	1916.09.01	구만면 화림리 718	
"	이 연 형	李 淵 炯	1911.01.25	구만면 광덕리 687	
"	김 종 순	金 鐘 淳	1925.04.25	구만면 광덕리 67	
"	이 수 성	李 壽 星	1914.06.07	구만면 용화리 79	
"	최 성 진	崔 聖 鎭	1918.02.13	구만면 광덕리 826	

○ 회화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박인규	朴仁奎	1937.08.01	회화면 배둔리 432	
"	김상오	金相五	1928.10.09	회화면 당항리 434	
"	방기용	房基用	1897.12.05	회화면 당항리 506	
"	최익도	崔翼都	1918.01.17	회화면 배둔리 447	
"	구상갑	具相甲	1919.08.13	회화면 배둔리 400	
"	김선수	金善洙	1902.06.25	회화면 어신리 295	
"	허학중	許學中	1898.12.27	회화면 어신리 712	
"	이재봉	李在琫	1912.10.10	회화면 봉동리 264	
"	이상삼	李相三	1918.02.03	회화면 봉동리 671	
"	박홍당	朴洪堂	1898.08.02	회화면 삼덕리 1559	
"	박홍덕	朴洪憲	1919.06.21	회화면 삼덕리 1579	
"	이도영	李道榮	1920.12.17	회화면 배둔리 449	
제2대	박인규	朴仁奎	1937.08.01	회화면 배둔리 432	
"	구상갑	具相甲	1919.08.13	회화면 배둔리 400	
"	김상오	金相五	1928.10.09	회화면 당항리 434	
"	강정오	姜正五	1921.05.09	회화면 배둔리 435	
"	이문식	李文植	1926.11.25	회화면 봉동리 473	
"	배상주	裴相柱	1907.01.27	회화면 당항리 521	
"	김경수	金敬守	1907.02.14	회화면 어신리 664	
"	김종복	金鐘福	1916.04.17	회화면 봉동리 1109	
"	박홍두	朴洪豆	1888.05.19	회화면 삼덕리 1541	
"	도득섭	都得燮	1894.02.19	회화면 삼덕리 840	
"	한쌍용	韓雙龍	1912.08.17	회화면 녹명리 328	
제3대	김대산	金大山	1935.01.20	회화면 배둔리 827	
"	최익도	崔翼都	1918.01.17	회화면 당항리 506	
"	김상오	金相五	1928.10.09	회화면 당항리 434	
"	한학진	韓學振	1946.04.14	회화면 배둔리 434	
"	박인규	朴仁圭	1937.08.01	회화면 배둔리 432	
"	이재봉	李在琫	1912.10.10	회화면 봉동리 264	
"	심쌍오	沈雙五	1905.07.15	회화면 어신리 835	
"	김종복	金鐘福	1916.04.17	회화면 봉동리 1109	
"	박홍도	朴洪道	1910.01.27	회화면 삼덕리 1561	
"	강형구	姜炯九	1922.10.21	회화면 삼덕리 836	
"	박홍영	朴洪瑩	1942.01.01	회화면 삼덕리 17	

○ 마암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최 세 열	崔世烈	1891.05.13	마암면 삼락리 153	
"	신 중 도	辛中道	1910.01.13	마암면 보전리 125	
"	최 석 원	崔碩元	1921.03.05	마암면 삼락리 1231	
"	이 중 우	李鐘宇	1905.08.18	마암면 삼락리 722	
"	김 도 선	金道善	1902.04.04	마암면 도전리 360	
"	정 갑 이	丁甲伊	1911.05.23	마암면 화산리 167	
"	김 윤 성	金允性			미확인
"	배 권 열	裴權烈	1921.03.01	마암면 화산리 1030	
"	허 홍 도	許洪道	1905.02.18	마암면 장산리 184	
"	최 인 옥	崔仁玉			미확인
"	최 원 대	崔元大	1911.07.02	마암면 성전리 62	
"	김 재 현	金載鉉	1911.05.19	개천면 좌연리 852	
제2대	최 세 열	崔世烈	1891.05.13	마암면 삼락리 153	
"	이 중 우	李鐘宇	1905.08.18	마암면 삼락리 722	
"	최 석 원	崔碩元	1921.03.05	마암면 삼락리 1231	
"	김 용 상	金龍尙	1909.07.24	마암면 도전리 108	
"	이 병 도	李炳道	1916.09.13	마암면 화산리 524	
"	김 종 대	金鐘大	1928.01.27	마암면 화산리 161	
"	정 갑 이	丁甲伊	1911.05.23	마암면 화산리 167	
"	최 인 락	崔寅洛	1920.06.18	마암면 장산리 192	
"	허 순	許淳	1910.06.01	마암면 장산리 166	
"	이 상 섭	李相燮	1923.05.20	마암면 석마리 409	
"	김 도 현	金道鉉	1924.01.10	개천면 좌연리 222	
제3대	이 점 용	李点龍	1917.02.04	마암면 삼락리 731	
"	신 중 도	辛中道	1910.01.13	마암면 보전리 125	
"	최 석 원	崔碩元	1921.03.05	마암면 삼락리 1231	
"	김 갑 성	金甲性	1926.02.18	마암면 도전리 466	
"	김 용 상	金龍尙	1909.07.24	마암면 도전리 108	
"	정 갑 이	丁甲伊	1911.05.23	마암면 화산리 167	
"	이 병 도	李炳道	1916.09.13	마암면 화산리 524	
"	배 순 열	裴順烈	1923.05.15	마암면 장산리 200	
"	이 상 립	李相林	1929.02.08	마암면 신리 154	
"	허 만 중	許萬中	1933.12.09	마암면 장산리 90	
"	최 원 대	崔元大	1911.07.02	마암면 성전리 62	

○ 동해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최 판 조	崔 判 祚	1897.09.15	동해면 용정리 234	
"	최 인 복	崔 寅 馥	1912.08.04	동해면 양촌리 969	
"	전 영 준	田 永 俊	1919.08.12	동해면 장기리 449	
"	김 상 조	金 祥 祚	1909.02.10	동해면 내산리 11	
"	정 화 갑	鄭 和 甲	1918.12.05	동해면 장기리 933	
"	천 영 수	千 榮 洙	1891.03.04	동해면 장좌리 300	
"	천 대 영	千 鐵 永	1925.11.17	동해면 용정리 746	
"	천 학 수	千 鶴 壽	1890.12.28	동해면 장좌리 210	
"	김 형 오	金 炯 五	1924.10.25	동해면 내곡리 1089	
"	이 순 기	李 淳 己	1897.09.02	동해면 외곡리 447	
"	박 문 주	朴 文 柱	1907.09.05	거류면 감서리 881	
"	강 우 순	姜 佑 淳	1918.03.21	동해면 봉암리 1055	
"	최 기 열	崔 基 烈	1918.03.28	동해면 외곡리 514	
제2대	박 두 천	朴 斗 千	1927.02.15	동해면 양촌리 1284	
"	이 상 훈	李 祥 薰	1922.11.09	동해면 내산리 126	
"	김 두 만	金 斗 萬	1925.09.04	동해면 양촌리 988	
"	문 상 옥	文 祥 玉	1921.01.16	동해면 양촌리 989	
"	최 원 호	崔 元 鎬	1930.04.07	동해면 용정리 478	
"	김 영 인	金 英 寅			미확인
"	김 경 조	金 敬 祚			미확인
"	이 형 수	李 亨 洙	1919.11.02	동해면 외곡리 732	
"	이 계 승	李 啓 勝	1914.09.12	거류면 감서리 254	
"	황 종 열	黃 鐘 烈	1927.02.07	거류면 감서리 245	
"	최 맹 석	崔 孟 碩	1912.03.19	동해면 봉암리 837	
"	김 형 오	金 炯 五	1924.10.25	동해면 내곡리 1089	
제3대	김 두 만	金 斗 萬	1925.09.04	동해면 양촌리 988	
"	박 두 천	朴 斗 千	1927.02.15	동해면 양촌리 1284	
"	김 상 갑	金 祥 甲	1922.11.20	동해면 외산리 735	
"	황 길 성	黃 吉 星	1918.12.12	동해면 양촌리 591	
"	정 화 갑	鄭 和 甲	1918.12.05	동해면 장기리 933	
"	진 영 목	陣 永 穆	1931.03.16	동해면 장좌리 41-2	
"	천 토 부	千 土 富	1923.11.24	동해면 장좌리 363	
"	정 해 갑	鄭 海 甲	1925.02.09	동해면 외곡리 172	
"	최 상 옥	崔 祥 玉	1914.08.09	동해면 봉암리 994	
"	박 형 규	朴 亨 圭	1918.02.05	거류면 감서리 882	
"	장 남 권	張 南 權	1916.08.14	거류면 감서리 926	
"	이 흠 조	李 欽 祚	1915.06.28	동해면 외곡리 445	

○ 거류면 의회의원 명단

대수	성명		생년월일	본적(원적)	비고
	한글	한자			
제1대	임 봉 회	林 鳳 會	1914.07.22	거류면 신룡리 1228	
"	변 경 도	卞 京 道	1899.04.28	거류면 신룡리 726	
"	최 유 범	崔 遺 範	1905.12.23	거류면 당동리 339	
"	김 용 옥	金 容 玉	1917.02.22	거류면 당동리 120	
"	김 병 준	金 秉 俊	1911.10.17	거류면 당동리 141-1	
"	김 진 일	金 振 日	1912.04.29	거류면 거산리 293	
"	이 계 실	李 桂 實	1907.09.14	거류면 가려리 825	
"	허 도	許 道	1908.12.17	거류면 송산리 1245	
"	최 금 수	崔 金 水	1901.04.14	거류면 은월리 1158	
"	박 성 환	朴 成 煥	1914.09.22	거류면 은월리 690	
"	김 청 윤	金 淸 允	1911.06.17	거류면 은월리 339	
"	강 기 수	姜 基 守	1908.03.05	거류면 용산리 195	
제2대	김 동 기	金 東 基	1921.09.12	거류면 당동리 141-2	
"	이 현 수	李 鉉 秀	1898.02.22	거류면 신룡리 747	
"	강 태 홍	姜 泰 弘			미확인
"	공 용 석	孔 龍 碩	1901.12.28	거류면 당동리 38	
"	최 한 걸	崔 漢 杰	1926.06.06	거류면 당동리 371	
"	구 상 우	具 商 佑	1922.05.15	거류면 송산리 905	
"	황 용 암	黃 鏞 岩	1910.04.08	거류면 가려리 947	
"	백 남 순	白 南 淳	1928.06.12	거류면 가려리 752	
"	구 봉 근	具 琿 根	1919.05.15	거류면 송산리 131	
"	백 춘 기	白 春 基	1922.06.23	거류면 용산리 374	
"	이 길 실	李 吉 實			미확인
제3대	김 용 훈	金 容 薰	1922.01.09	거류면 신룡리 1028-1	
"	김 재 주	金 在 朱	1916.06.28	거류면 당동리 70	
"	김 행 곤	金 行 坤	1929.08.28	거류면 신룡리 972	
"	김 봉 삼	金 奉 三	1928.02.13	거류면 당동리 574	
"	남 광 옥	南 光 玉	1919.01.26	거류면 신룡리 295	
"	이 권 수	李 權 洙	1908.07.21	거류면 가려리 769	
"	강 한 진	姜 漢 鎭	1931.11.29	거류면 가려리 371	
"	허 상	許 尙	1916.01.03	거류면 송산리 1245	
"	김 대 권	金 大 權	1904.02.01	거류면 은월리 298	
"	백 춘 기	白 春 基	1922.06.23	거류면 용산리 374	
"	박 성 환	朴 成 煥	1914.09.22	거류면 은월리 690	
"	임 상 경	林 尙 景			미확인

제 7절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 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작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건전재정의 원칙과 둘째, 국가정책준수의 원칙, 셋째, 재정질서의 유지 원칙, 넷째, 장기적 재정안전의 원칙이다.

2. 고성군 재정 규모

지방자치 이후 지역주민의 공공복지에 관한 욕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에 상응하는 시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많은 지방재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1975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노력봉사와 아울러 더 많은 지방재정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 1970년의 재정규모가 408백만원에서 10년후인 1980년에는 무려 14배가 증가한 5,715백만원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1990년에는 36,777백만원으로서 10년동안 8배나 증가하였다.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고성군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는 민선군수가 선출됨에 따라 더 많은 지방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재정규모가 155,313백만원이나 계상되어 1990년에 비해 4.2배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2006년부터 3년 간격으로 개최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2008년부터 고성군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생명환경농업정책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지방재정이 편중되는 현상까지 초래하였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 순 기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도 대폭 증가 하였는바 2014년의 재정규모는 481,845백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3.1배나 증가하였다.

3. 고성군 지방세 징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등의 수입을 확보

하고 있으며 지방세가 자주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세종, 세율, 과세표준, 감면 등을 국가가 법률로서 정한다.(지방자치법제 135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세, 지방세의 조정문제의 모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행 법령에 의해 부과 징수 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90년에는 도세 4개세목, 군세9개 세목으로 총액4,69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1995년에는 총액12,196백만원으로 5년간 2.6배나 신장되었다.

그 중 도세는 취득세가 3.2배 군세는 담배소비세가 1.4배였다.

2000년에 자동차 주행세가, 2001년에는 지방교육세가 신설되고 2005년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징수총액은 27,578백만원으로서 2000년에 비해 65%증가하였고 2000년부터는 주민세가 담배소비세를 앞질렀다.

2006년에 지역개발세가 폐지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었으며 2010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사업소세와 주민세 중 소득할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고 2011년에는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고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이관 과세 하였으며 도축세는 완전 폐지 되었다.

2014년말 현재 도세 4개 세목, 군세 5개 세목으로 대폭 통·폐합하였고 총 징수액은 51,116백만원으로서 그중 도세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군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년평균 14.5%정도가 증가하였다.

○ 고성군 지방세 년도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 년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합계	4,691	12,196	16,725	27,578	42,144
도 세	소계	1,145	4,411	5,963	13,961	22,170	27,267
	취득세	588	1,897	2,201	5,201	9,431	15,243
	등록세	503	2,329	2,993	5,068	6,347	-
	등록면허세	-	-	-	-	-	1,467
	지역자원시설세	-	-	-	-	12	4,415
	지방교육세	-	-	-	3,031	4,787	5,382

	과년도수입및기타도세	25	185	769	661	1,593	760
군 세	소계	3,546	7,785	10,762	13,617	19,974	23,849
	주민세	160	1,476	3,292	4,867	48	1,321
	지방소득세	-	-	-	-	5,243	5,504
	재산세	142	348	546	1,307	4,349	6,853
	자동차세	232	1,200	1,756	1,551	3,088	5,372
	주행세	-	-	213	1,252	1,786	-
	담배소비세	2,452	3,408	3,039	3,048	4,155	4,196
	종합토지세	315	577	631	-	-	-
	도시계획세	91	214	358	413	673	-
	사업소세	89	272	445	572	-	-
	과년도수입및기타군세	65	290	482	607	632	603

4.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중 지방세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는 과표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주민의 과중한 조세 부담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은 그 수입근거와 종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동이나 행정서비스 강화 등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신장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안정과 재정활동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자주적재원이라는 점에서 그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성군의 세외수입 징수 상황을 살펴보면,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가 개최된 해인 2006년에는 군세수입보다 19%. 2009년에는 25%. 2012년에는 15%를 초과하는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2014년에는 군세수입보다 2%를 초과한 24,340백만원을 징수하였다.

○ 고성군 세외수입 년도별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세목		년도					
		2001	2005	2006	2009	2012	2014
합계		9,306	11,717	16,082	22,132	24,501	24,340
경상적	소 계	8,513	9,266	14,964	9,653	9,282	10,443

세외 수입	재산임대수입	150	157	200	381	295	211
	사용료 수입	962	1,608	8,814	1,896	2,251	3,675
	수수료 수입	912	1,103	862	781	1,030	1,169
	사업수입	752	777	825	828	1,051	1,240
	징수교부금수입	412	477	431	930	888	1,174
	이자수입	5,325	5,144	3,832	4,837	3,767	2,974
임시적 세외 수입	소계	793	2,451	1,118	12,479	15,219	13,897
	재산매각수입	18	76	104	428	2,953	953
	부담금	32	566	31	30	68	4
	기타수입	612	1,664	891	11,841	11,931	12,523
	지난년도수입	131	145	92	180	267	417

(보기:고성군 재무과 보존문서)

5. 고성군의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적재원과 의존적재원 두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자주적재원에는 첫째, 보통세, 목적세, 가산세로 구성되는 지방세가 있고, 둘째,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기부금, 이월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있으며 셋째,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차입하는 지방채가 있다.

의존적재원에는 첫째, 국가가 기준재정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있고 광역시,도가 도세징수액의 일정액을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양여금. 넷째, 국가가 비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주적재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고성군은 지난 10년간 비교분석표의 내용과 같이 전국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의 1/3 수준에 지나지 않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실정이나 전국 군평균 수준이나 경남도내 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도의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준 통일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증액시켜 재정 규모를 늘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아무리 확충하더라도 이를 따라 갈 수 없어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만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건전성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 고성군 재정자립도 비교분석표

(단위:%)

구분 \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평균 (순계규모)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44.8
전국군평균 (총계규모)	16.6	16.5	16.1	16.6	17.2	17.8	18.0	17.0	16.4	16.1	11.4
경남도군평균 (총계규모)	14.4	14.7	15.3	14.3	13.8	14.8	15.1	14.7	14.2	14.1	8.6
고성군 (총계규모)	13.9	16.4	21.8	13.3	13.7	14.7	14.9	15.7	16.7	14.5	9.6

(보기:2014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발췌)

제 8절 민방위

1. 민방위의 창설

우리나라에 민방위 제도가 도입된 동기는 1960년대에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침투와 울산삼척 사태, 1975년 4월 월남의 패망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 등 극도로 불안한 안보 정세하에서 만일의 적의 침공이나 불시의 공습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민 자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마저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비 조직의 필요성에 의하여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법률 제2776호)이 제정되고 동년 8월 22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년 9월 22일 전국 일제히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이러한 민방위 제도는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안전보장이나 재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유럽 여러나라에서 시작되어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여 만약의 전시 사태나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례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이 아닌 민간인의 지도 하에 활동하며 비군사적인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쟁시

군사적 행위로부터 보호받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잠깐 유럽의 민방위 제도중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스위스의 민병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면서, 무장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국민개병(國民皆兵) 주의에 입각한 민병제(民兵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남자는 시민인 동시에 군인이며 20-50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방의 주체인 민병은 단기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은후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원훈련을 받다가 유사시 전원 동원되어 국토방위를 수행한다.

그리고, 군복, 무기, 탄약을 각자의 집에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소집에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집명령 후 48시간 이내에 100만명의 민병을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일반 건물 뿐만 아니라 개인주택도 모두 지하 방공호를 갖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5%를 소개(疏開)할 수 있는 27만개의 대피소와 핵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3,500개의 대피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중 500개에는 의료시설까지 겸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명령이나 법과 체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만은 아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유럽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나라로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의 수많은 전쟁속에서도 곳곳이 중립을 지킬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잘사는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2. 민방위대 조직의 변천

○ 1975년 9월 22일 전국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창설된 민방위대는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에서 17세이상 5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되고 다만 특수직종 근무자는 제외하며 위 규정 이외의 남자나 여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18조에서는 민방위대의 편성은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구분하며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 단위로 기술지원대는 읍·면단위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교육 훈련은 년10일 50시간을 받도록 하였다.

○ 1979년 12월 28일 내무부 장관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기 또는 수시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 공포 하였고 이에 따라 1980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9850호로 매월 15일을 “민방위 날” 로 지정하여 민방위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1981년 3월 27일 법률을 개정하여 읍·면단위 기술지원대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시켜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편성하도록 변경하였다.

○ 1988년 12월 31일 민방위기본법을 개정(법률 제4056호)하여 민방위 대원의 조직 연령을 당초 17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 하였고 교육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에는 교육 훈련을 금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가 선거에 이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 2000년 1월 12일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법률 제6116호)하여 민방위대의 조직 연령을 20세부터 50세까지를 20세부터 45세까지로 상한 연령을 5년 낮추었으며 단서 조항으로 국무총리는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 20세부터 50세까지 조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비상사태를 대비하였다.

○ 2004년 3월 11일 법률 개정하여 민방위업무의 소관청을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이관하였으며 2006년 9월 22일 법률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연령을 20세부터 40세까지로 다시 5년을 낮추었다. 그리고 여자와 조직 연령 이외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편성, 조직하도록 하였다.

3. 고성군 민방위 조직과 운영

1) 민방위대 조직 편성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편성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조직 되며 지방의회 의원, 경찰, 예비군, 원양어선 선원,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청원 경찰, 의용소방 대원, 신체 장애자 등은 편성 제외 대상이다.

그리고 민방위 편성 의무자를 제외한 17세이상의 남,여 지원자도 민방위 대원에 조직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고성군의 민방위대는 지역대129개대, 직장대 2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154개대에 4,085명이 편성되어 있다.

○ 고성군 민방위대 편성 현황

(2014년말 현재)

구분	대수	대 원 수 (명)		
		계	의무자	지원자
계	154	4,085	3,396	689
지역대	129	2,945	2,942	3
직장대	24	1,110	424	686
기술지원대	1	30	130	-

2)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후 1~4년차 대원과 민방위 대장, 민방위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화생방, 재난 및 대테러 대비, 주민신고, 응급처치 요령 등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생활 민방위 실기 실습 위주의 대원 참여 교육으로 전환하여 민방위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014 민방위 교육 실적

구 분	교육과정	시 간	대 상	참 석
계	-	-	1,498	1,497
일반교육	지역대원	4	1,162	1,161
	직장대원	4	116	116
전문기술 요원교육	기술지원대	4	61	61
	화생방분대	4	8	8
특별교육	지역대장	4	127	127
	직장대장	4	24	24

3) 민방위 날 훈련

예기치 못한 재난사태나 적의 침공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의 행동요령을 숙지시켜 유사시 재난사태 발생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방공 훈련 3회, 군 단위 민방위 날 훈련 1회, 비상소집 1회 등 년 5회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내용은 고성읍 시가지 3개 지역 진입로의 교통 통제와 건물내 주민 대피 훈련등 민방공 훈련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풍수해, 지진, 교통사고, 화재등 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4) 주민 신고

국가 안보나 지역사회 안정을 저해하는자, 각종 범죄, 민생사범, 환경오염, 각종 재난 사고 등 사회 불안 요소를 주민신고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 예방하거나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행정지도와 계몽 홍보를 강화 하고 있다.

○ 주민 신고망 운영

(단위:개소)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원
1,289	858	130	161	240

5) 민방위 시설, 장비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유사시 사태 수습에 대비하여 민방위 비상시설과 장비, 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구조와 화생방 방호장비를 보강하여 사태 발생시 신속한 구조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민방위 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
28	2	4	22

○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

(단위:점)

계	지휘용앰프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교통신호봉	휴대용조명등
237	30	73	26	19	44	45

○ 화생방 장비 보유 현황

(단위:점)

계	방독면	오염제독기
1,308	1,307	1

○ 인명구조 장비 보유 현황

계	로프	구명환	구명의	써치라이트	헬멧	로프총	메가폰
99	12	7	21	2	37	1	19

(보기:고성군 안전총괄과 보존문서)

제 9절 고성군민상

1. 군민상의 개요

고성군민상은 지역사회개발, 농수산진흥, 향토문화창달, 체육진흥, 애향 등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헌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군민을 발굴하고 이를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군민상 시상 방안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1971년 10월 이후 10여년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고성군의 문화 축제 행사인 가야문화제가 부활되어 1983년부터 개최하게 됨에 따라 거군적인 행사에 우수 군민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것이 행사를 더욱 알차게 하고 군민상의 품격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984년 7월 19일 고성군민상 포상 조례를 제정 공포(고성군 조례 제854호)함으로써 고성군민상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군민상 연혁

1984년 9월 23일 제10회 가야문화제 행사 개최식에 맞추어 지역사회 개발분야 2인, 농수산 진흥분야 3인, 문화체육 분야 2인등 총7인에 대하여 제1회 고성군민상을 시상하였다.

그러나, 시상 이후 한 분야에 여러명을 시상함은 군민상의 위상에 적절치 않다는 등의 여론과 문제가 제기되어 1985년부터 1988년까지 4년간 시상이 중단되었다가 1989년 8월 14일 시상 부문 조정과 시상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군민상 시상 조례를 개정 공포한 후 제2회 군민상은 3개부문 3인에게 시상하였으나 군민상에 대한 관심과 홍보 부족등으로 인해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한, 두명 또는 공적이 미흡한 자가 추천됨으로서 심사 결과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992년도에는 1인만 시상하였고 1993년도에는 4인의 후보자가, 1994년도에는 2인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자 관련 부서에서는 군민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러 경로를 통한 수상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한 결과 1995년도에는 4개 부문에 14인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며 심의 결과 2개부문 2인에게 포상하였다.

1996년도에는 3개부문 6명이 추천되었으나 1개부문 1인에게 시상하였고 1997년도에는 2개부문에 4인이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2001년도에는 1개부문 2인, 2003년도에는 2개부문 3인이 추천되었으나 수상대상자가 없었다.

이러하듯 수상후보자는 추천되었으나 심의 결과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되자 고성군민상 포상조례중 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같은 부

문에 복수 인원이 추천 되었을 경우 1차 투표에서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고성군은 2009년 6월 8일 애항부문은 공적이 현저할 경우 2인을 수상할 수 있고 수상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 후보자 별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최다득표자 또는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 한다는 내용의 심의 방법을 개선하는 개정 조례를 공포하였다.

2013년도에는 1인이 추천되었으나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시상하지 못하였고 2014년도에는 애항부문에만 2인이 추천되어 심사결과 1인을 시상하였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1년동안 21회에 걸쳐 42인에게 고성군민상을 시상하였다.

○ 역대 군민상 수상자 현황

(2014년말 현재)

연번 (호수)	포상년월일	수상자			시상부문	비 고
		주소	성별	성명		
1	1984.09.23	고성읍	남	李極星	지역사회개발	
2	"	고성읍	"	金相來	농수산진흥	
3	"	고성읍	"	裴還甲	지역사회개발	
4	"	고성읍	"	尹相福	농수산진흥	
5	"	고성읍	"	黃敬潤	문화체육	
6	"	고성읍	"	金永鐵	문화체육	
7	"	고성읍	"	趙京文	농수산진흥	
8	1989.09.19	고성읍	"	李根玉	지역사회개발	
9	"	상리면	"	南玉鉉	농수산진흥	
10	"	고성읍	"	千萬又	문화체육	
11	1990.11.04	고성읍	"	金永甲	지역사회개발	
12	"	고성읍	"	文桂煥	농수산진흥	
13	1991.12.30	고성읍	"	崔金龍	지역사회개발	
14	"	동해면	"	許宗福	문화체육	
15	1992.12.31	회화면	여	李善伊	지역사회개발	
16	1995.10.05	고성읍	남	韓一相	지역사회개발	

17	"	서울특별시	"	李洪根	애향부문	
18	1996.10.25	회화면	"	金種鎭	농수산진흥	
19	1998.10.01	서울특별시	"	沈宜杓	애향부문	
20	1999.10.01	서울특별시	"	金成珍	애향부문	
21	2000.10.01	고성읍	"	孫學模	지역사회개발	
22	2002.10.01	마암면	"	李潤石	문화체육	
23	2004.10.02	서울특별시	"	張榮澤	애향부문	
24	2005.10.07	회화면	"	朴昌弘	지역개발부문	
25	"	부산광역시	남	崔七官	애향부문	
26	2006.10.12	고성읍	"	李宗石	지역사회개발	
27	"	고성읍	"	姜三玉	문화체육	
28	"	서울특별시	"	諸宰馨	애향부문	
29	2007.10.02	마암면	"	李鎬原	지역사회개발	
30	2008.10.01	하이면	"	朴庄一	지역사회개발	
31	"	서울특별시	"	李正玉	애향부문	
32	2009.10.01	고성읍	"	朴基太	지역사회개발	
33	"	고성읍	"	金五鉉	문화체육	
34	"	부산광역시	"	鄭樞恢	애향부문	
35	2010.10.01	마암면	"	金日均	지역사회개발	
36	"	거류면	"	許 住	농림수산진흥	
37	"	서울특별시	"	申大道	애향부문	
38	2011.09.30	회화면	"	朴忠雄	문화체육	
39	2012.10.04	고성읍	여	盧蓮鉉	지역사회개발	
40	"	창원시	남	崔渭昇	애향부문	
41	"	용인시	"	李謹鎬	애향부문	
42	2014.10.01	서울특별시	"	金善浩	애향부문	

(보기:고성군 행정과 보존문서)

제 2장 국토의 이용과 개발

제 1절 도시개발

1. 국토이용 계획

1) 개요

국토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터전이며 복리증진을 위한 제한된 자원이므로 그 이용에 있어서 토지이용 계획은 그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도시나 농촌, 그리고 그 주변 토지의 무계획적, 무질서한 개발은 환경을 악화시키고 공해와 재난등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에 있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맞게 이용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혀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국토 이용계획의 기본이념이다.

2) 용도지역의 지정 관리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 규제중 가장 대표적이자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토지를 그 적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용도를 부여한 후 이 용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도시지역에 한해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제가 전 국토에 확대되었음에도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 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운용되므로써 이 과정에서 비 도시지역, 특히 준 농림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 되었으며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 2월 4일 법률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비 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어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성군에서도 이 법률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종전의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축소하였으며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종전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 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고성군 용도지역 지정현황

(2014년말 현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67,231km ²	100.00%	
도시지역		23,364	3.50	
주거지역	소 계	2,692	0.4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27		
	제2종일반주거지역	0.835		
	준 주거지역	0.13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0.186	0.03	
공업지역	소 계	6,093	0.91	
	일반공업지역	6,062		해면1,444
	준 공업지역	0,031		
녹지지역	소 계	13,424	2.01	
	보전녹지지역	0,455		
	생산녹지지역	4,640		
	자연녹지지역	8,329		해면1,135
미지정		0,969	0.15	해면
관리지역		145,758	21.85	
	보전관리지역	42,340	6.35	
	생산관리지역	27,134	4.07	
	계획관리지역	76,284	11.43	해면0.937
농림지역		303,974	45.56	
자연환경보전지역		48,583	7.28	
미지정		145,552	21.81	해면

3)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관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 등의 확보를 통해 당해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당해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0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향후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상리면 척번정지구등 10개 지구 1,511,861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다.

0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은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부지조성과 관련 시설물의 설치, 관광객 유치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하는 것으로, 회화면 당향포관광지등 5개소 3,930,430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다.

0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등 공업용도의 부지 및 건축물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하는 것으로서 조선산업특구 1개소, 농공단지 5개소, 일반산업단지 8개소, 기타공장업체 10개소등 총 24개소 6,423,033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다.

○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2014년말 현재)

명 칭	최초지정일자	면 적	비 고
계	10개소	1,511,861m ²	
척번정 지구	1982.01.08	44,772	
당동 지구	1995.04.06	664,209	
낙동 지구	"	225,100	
봉암 지구	1995.11.13	85,727	
장기 지구	1997.04.10	376,822	
동외 지구(주공아파트)	2005.12.15	21,751	
교사 지구(DS1차아파트)	2006.07.10	32,871	
서외 지구(덕진아파트)	2007.07.09	12,091	
동외 지구(DS2차아파트)	2008.10.22	21,768	
수남 지구	2013.10.29	26,750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2014년말 현재)

명 칭	최초지정일자	면 적	비 고
계	5개소	3,930,430m ²	
당향포관광지	1984.06.21	551,902	
옥수온천	1998.08.07	259,773	

내곡 농어촌관광시설	1998.11.24	3,583	
체류형레포츠특구(오방)	2007.04.27	1,634,430	
고성노벨컨트리클럽	2007.05.25	1,480,742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2014년말 현재)

명 칭	최초지정일자	면 적	비 고
계	24개소	6,423,033m ²	
천해지	1987.12.23	241,130	
울대농공단지	1988.05.18	104,643	
회화농공단지	1991.07.01	91,920	
고려노벨화약	1997.12.11	148,780	
고려화공	2000.11.10	89,720	
세송농공단지	2005.08.16	149,977	
SP산업(주)	2005.12.08	36,773	
SPP조선(주)	2006.12.28	98,445	
양촌용정지구(조선특구)	2007.07.25	1,668,837	
마동농공단지	2007.12.13	287,799	
자은지구(성하산업외2개)	2008.08.08	93,436	
우산지구(삼도프레스)	2008.12.22	48,131	
내산일반산업단지	2008.12.26	418,936	
대독일반산업단지	2009.04.17	265,987	
봉암일반산업단지	2009.04.28	298,410	
상리일반산업단지	2009.07.09	756,560	
세포지구(동해중공업)	2009.11.02	98,073	
장기일반산업단지	2010.04.01	196,516	
울대일반산업단지	2010.07.08	181,593	
대가룡일반산업단지	2010.09.02	74,187	
제일농공단지	2011.04.12	43,448	
장좌일반산업단지	2011.11.11	695,053	
무등물류단지	2013.09.05	273,799	
부포지구	2014.08.29	60,880	

2. 도시계획

1) 개요

○ 고성군의 도시계획은 1965년 1월 8일 건설부고시 제1337호로 고성읍 일원에 31.569km² 를 도시계획 지역으로 최초 결정하였으며 1977년 1월 26일 재 정비시 농지 보전을 위한 고성읍의 도시계획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동년 11월 9일 경남도 고시 제551호로 배둔지역 0.82km² 를 배둔도시계획 지역으로 신규 결정하였다.

○ 1985년 7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339호로 고성군의 도시계획 면적을 1977년 재 정비 당시 도시계획 구역 축소 과정에서 고시 면적이 착오에 의한 오류임이 확인되어 13.85km² 를 14.28km² 로 정정 고시하였다.

○ 2009년 1월 8일 고성군 전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을 재 정비하여 고성읍 지역 14.697km² , 배둔지역 0.71km² , 하이면 화력발전소 2.258km² 등 17.665km² 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였고, 산업단지 2.140km² 를 포함하여 2013년말 현재 고성군의 도시지역은 19.805km² 이다.

○ 고성군 도시계획 지정 현황

구분	고성읍지역	배둔지역	하이면(화력발전소)
최초지정일	1965. 1. 8 (건설부고시제1337호)	1997. 11. 9 (경남도고시제551호)	1969. 1. 9 (건설부고시제13호)
최종결정일	2009. 1. 8 (경남도제2009-4호)	좌동	좌동
계획면적	14.697km ²	0.71km ²	2.258km ²
목표년도	2015년	2015년	-
계획인구	30,000명	3,000명	-

○ 고성군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지정 현황

(2014년말 현재)

구분	계	고성읍	배둔	하이면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해면
계	23.364km ²	14.697	0.710	2.258	2.151	3.548
주거지역	2.692	2.307	0.385	-	-	
제1종일반주거	1.726	1.394	0.332	-	-	
제2종일반주거	0.835	0.798	0.037	-	-	

준주거	0.131	0.115	0.016	-	-	
상업지역(일반)	0.186	0.151	0.035	-	-	
공업지역	6.093	0.511	-	2.176	1.962	1.444
일반공업지역	6.062	0.511	-	2.176	1.931	1.444
준공업지역	0.031				0.031	
녹지지역	13.424	11.728	0.290	0.082	0.189	1.135
보전녹지	0.455	0.455	-	-	-	
생산녹지	4.640	4.572	0.068	-	-	
자연녹지	8.329	6.701	0.222	0.082	0.189	1.135
미지정	0.969					0.969

2) 도시계획 사업

(1) 고성읍 도시계획

고성군청 소재지인 고성읍은 1938년 10월 1일 읍으로 승격되고 1965년 1월 8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였으나 고성군의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해소는 물론 군청 소재지 읍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대책없는 세월만 보내다가 1989년 당시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 년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차사업으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고성읍 중앙로 610미터를 확·포장하였고 2차사업으로 송학로 866미터를 1998년에 확·포장 완료하였다.

1999년에는 동외 광장(구 2호광장)을, 2003년에는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1,320미터를 개설 완료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신가-남포간 도로 2,060미터를 개설하여 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군청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2006년 2월에는 고성소도읍 육성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국비100억원, 도비30억원, 군비70억원)을 투입하여 고성시장 현대화사업을 2009년에 완료하고 그 외에도 시가지 균형 개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6건의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과 개설 공사가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고성읍의 동서와 남북간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가 외곽 순환도로와 연결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인구 증가에 대비한 도시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 사업 시행 현황

사업명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간		비고
			착공년도	준공년도	
정동-남산간	L:163			2005	
이주단지-송수간	L:105			2005	
수협-대성초등학교간	L:200			2006	
송학-교사간	L:1,100. B:20	2,909	2008	2009	중1-5
기월사거리-의회청사	L:260. B:25	960	2009	2010	대3-2
무지개아파트-송학삼거리	L:286. B:15	947	2009	2011	중2-1
수남사거리-등기소간	L:550. B:15	1,692	2011	2011	중2-1
건강보험-경찰서간	L:471. B:20	1,941	2009	2012	중1-7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	L:432. B:15	3,700	2012	2014	중2-1
수협-서원아파트간	L:280. B:10	1,950	2008	2014	소1-4
철성고-기월마을간	L:190. B:10	600	2011	2013	소2-64
산림조합-D/S2차간	L:300. B:10	430	2013	2014	소2-20
남포항주변도시계획도로	L:274. B:25	2,025	2013	2015	대3-2
철성초교앞도시계획도로	L:231. B:10	1,000	2012	2015	소1-7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L:920. B:20	8,300	2013	2016	중1-5

(2) 배둔 도시계획, 당동 취락지구

배둔 도시계획은 1977년 11월 9일 최초 결정 되었으며 당동 취락지구는 2002년 5월 17일 결정되었다. 배둔 지구는 2004년 도시계획도로 329미터와 회화초등학교 주변도로 233미터를 개설하였고 2015년에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 270미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당동 취락지구는 2004년에 거류우체국 도시계획도로 155미터를, 2005년에는 당동 도시계획도로 180미터를 개설하고 2008년에는 당동 도시계획도로(중로2-3) 485미터를 개설하였다.

특히 인근 동해면의 조선산업특구지정과 통영시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당동 중로 도시계획도로(중로2-13) 440미터를 2010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하였고 2012년에는 당동대로 도시계획도로(대로3-3) 1,500미터 개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완공 되면 교통난 해소와 아울러 인근 공단의 쾌적한 배후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고성군 주택도시과 보존문서)

제 2절 주택

1. 개요

주택은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는 장소인 동시에 개인과 한 주거 단위 집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안에서의 상대적 입지이다. 또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2차적으로 채울수 있는 준비 공간이므로 주거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비롯해 이웃과의 관계, 그 지역에 대한 사회적 태도, 직장과 교육적, 문화적 기회로서 접근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이 있다.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은 단일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단독택지위에 건축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면적 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수 있다.

○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전체층이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로서 소유와 분양이 불가능하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하며 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분양용 다층 주택으로 층마다 여러집으로 일정하게 구분하여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 연립주택은 전체층이 4개층이하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였으며 분양이 가능하다.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전체층이 4개층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부분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세대별 분양이 가능하다. 보통 “빌라” 라고 부르고 있다.

○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

2. 주택 보급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은 주거복지향상과 계층간, 지역간 주거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주택문제는 사회전체의 발전과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기본틀을 전환시키며 주택 자체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제하에 주택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고성군의 주택 보급 상황을 살펴보면 1985년도 인구및 주택 총조사(11월1일기준) 결과에 의하면 총가구수 20,114가구에 총주택수 18,263호로 주택 보급률이 90.8%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07년도 일반 통계조사에 의한 총가구수는 23,534가구에 주택은 21,800호로 주택보급율이 다소 상승한 92.6%였고, 2008년도 가구수의 증가에 비해 주택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해 91.0%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9년부터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주택보급율이 계속 늘어나 2013년말 현재 97.4%까지 상승하였다.

가구와 인구의 변동을 분석하면 1985년도의 가구수 20,114 가구에 인구는 82,635명으로 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4.1인이었으나 2000년에는 가구수 22,201가구, 인구는 63,423명으로 가구당 평균인구는 2.9인으로서 1985년도에 비해 인구는 23%가 줄어든 반면 가구수는 10%가 늘어났으며, 2013년말 현재는 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2.2인으로 기준년도에 비해 인구는 32%가 줄어들고, 가구수는 28%가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핵가족이나 단독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주거실태는 1985년도 단독주택 17,979호, 98.4%이며 아파트는 극소수였다.

2000년도 단독주택의 점유율이 82.7%로 낮아졌으며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2,436호로 13%를 점유하였다. 2007년도의 단독주택 점유율이 79.5%, 2010년도는 단독주택이 77.1%, 2013년말 현재는 76.2%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단독주택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 남은 신세대 계층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기:고성군 주택도시과, 2014년도 통계연보 자료)

○ 고성군 주택 현황

(2013년말 현재)

년도 및 읍면	일 반 가구수	주 택 수							
		합 계	보급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주택
2007	23,534	21,800	92.6	17,336	-	2,795	357	439	873
2008	24,231	22,057	91.0	17,765	-	3,129	357	364	442
2009	25,198	23,161	91.9	17,939	337	3,870	376	639	-
2010	25,599	24,008	93.8	18,140	370	3,937	384	933	244
2011	25,692	24,465	95.2	18,278	387	4,331	403	965	101
2012	25,685	24,712	96.2	18,444	411	4,331	403	1,004	119
2013	25,718	25,042	97.4	18,666	416	4,369	471	1,004	116
고성읍	10,892	10,502	96.4	5,912	187	3,615	298	472	18
삼산면	963	817	84.8	801	9	-	-	-	7
하일면	1,005	921	91.6	912	6	-	-	-	3
하이면	1,297	1,188	91.6	1,011	7	128	-	31	11
상리면	871	836	96.0	784	4	40	-	-	8
대가면	885	1,034	116.8	1,026	2	-	-	-	6
영현면	538	608	113.0	599	5	-	-	-	4
영오면	788	800	101.5	790	5	-	-	-	5
개천면	626	609	97.3	602	3	-	-	-	4
구만면	610	571	93.6	567	2	-	-	-	2
회화면	1,919	1,630	84.9	1,297	35	99	105	78	16
마암면	935	928	99.3	914	5	-	-	-	9
동해면	1,817	1,961	107.9	1,610	69	-	-	266	16
거류면	2,572	2,637	102.5	1,841	77	487	68	157	7

제 3절 상·하수도

1. 상수도 관리

1) 상수도의 정의

상수도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음용수와 최소한의 취사, 세척용, 세탁등의 위생시설로서의 역할은 물론 생활과 도시 활력을 지탱하는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의 생명선으로 안전한 물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목적은 합리적인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투자하여 소비자에게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데 있다. 상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3요소는 급수 지점에 있어서 양호한 수질, 필요한 수량, 적절한 수압이다. 따라서, 이들 3요소에 관해 수요자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상수도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수질은 우선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하며 맛이 좋아야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수도법에 명시된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량은 수요자의 습관, 생활수준, 기후조건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성군의 도,농 복합지역은 1인1일 200~300ℓ 정도이고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경제의 발달 서비스업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압은 관내의 수압이 2.5kg/cm² 가 표준이므로 관내 수압이 균등하게 유지되어 물이 관 말단에서 적절하게 유출될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2) 고성군 상수도 발전과정

○ 1933년 6월 30일 일제시대 고성읍 대독리에 대독천 하천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하는 상수도시설을 준공하고 1일 400톤의 수돗물을 고성읍 성내, 수남, 서외, 동외, 송학리 지역에 최초로 급수 되었다.

○ 1972년 10월 2일 고성읍의 급수시설 용량을 1일 2,300톤으로 시설확장 하였고 1984년 12월 28일 1일 4,300톤 규모의 시설을 확장하여 교사리 지역까지 급수지역을 확장하였다.

○ 1984년 10월 24일 회화면 배둔리에 구만천 하천수를 취수하는 상수도 시설을 준공하여 1일 900톤의 수돗물을 회화면 배둔지역 주민들에게 급수하기 시작하였다.

○ 1989년 7월 15일 고성읍에 남강계통 광역 상수도에서 1일 5,200톤의 물을 공급 받음으로서 자체 취수 시설은 가동을 중지하였다.

○ 1991년 2월 1일 고성군에 1일 8,200톤 전량을 남강계통 광역 상수도에서 공급 받아

회화면에 1일 급수량 900톤을 공급하여 자체 취수시설은 가동 중지하였다.

○ 1994년 4월 28일 고성군에 1일 8,900톤의 물을 공급 받아 거류면 일부지역까지 급수 구역을 확장하였다.

○ 1997년 3월 26일 1일 급수량을 9,500톤으로 늘렸으며 1999년 6월 16일 다시 10,400톤으로 늘려 마암면과 상리면 일부 지역까지 급수 구역을 확장하였다.

○ 2000년 9월 하일면, 하이면, 동해면, 일부지역에, 2002년 9월에는 삼산면, 구만면을 신규 급수 구역으로, 그외지역은 급수 구역을 확장함으로써 1일 13,500톤으로 조정되었고 2004년 1월 용수 결정량을 1일 14,100톤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급수 인구는 40,236인이고 그 보급률은 72.0%이다.

○ 상수도 급수 현황

(2014년말 현재)

읍면	총인구 (명)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명)	보급률 (%)	물사용량 (톤/년)	1인1일 급수량(ℓ)	급수전 (전)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소계	55,916	40,236	72.0	4,482,596	305	10,491	15,680	28.0
고성읍	26,264	26,029	98.9	2,439,412	257	4,840	283	1.1
삼산면	1,911	1,096	59.9	99,347	248	470	735	40.1
하일면	2,001	1,092	55.5	246,719	619	608	876	44.5
하이면	2,893	1,954	68.5	91,969	129	619	898	31.5
상리면	1,751	903	52.7	28,896	88	229	812	47.3
대가면	1,687	-	-	-	-	-	1,668	100.0
영현면	949	-	-	-	-	-	925	100.0
영오면	1,600	-	-	-	-	-	1,588	100.0
개천면	1,266	-	-	-	-	-	1,282	100.0
구만면	1,152	51	4.6	7,538	405	334	1,064	95.4
회화면	4,039	2,934	73.3	503,949	471	1,075	1,067	26.7
마암면	2,008	406	20.7	111,423	752	257	1,556	79.3
동해면	3,689	2,296	64.3	581,840	694	1,251	1,276	35.7
거류면	5,159	3,475	67.8	371,503	293	1,108	1,650	32.2

주 1. 회화, 마암, 동해면은 공업용수 포함

2. 하일면 송수관에서 통영시 사랑도에 물 공급하고 있음

3) 광역 상수도 시설 확장 계획

광역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을 위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216억원(국비80%, 군비20%)을 들여 삼산, 하일,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면 등 7개면 지역에 본선구간 관로부설과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여 2016년말 준공시 42개마을 1,200가구 3,450명의 군민에게 광역 상수도를 추가 공급할 수 있어 현재 보급률 72.0%를 77.6%까지 올릴수 있다.

또한 그 이후의 추가 확장사업으로는 대가면과 마암면의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2022년까지는 고성군 전역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만면의 경우 1993년도 이전에 본선구간 관로를 부설하였으나 2014년말 현재 4.6%에 해당하는 51명만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바 대부분의 면민들이 현재의 마을 상수도 수질과 수량이 양호하고 충분함을 이유로 광역 상수도의 확대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고성군의 광역 상수도 확장 계획에서 구만면은 제외되었다.

4)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와 관리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학적인 첨단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유수율을 높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현대화 시켜 수돗물의 공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6월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고성군간에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 2010년 9월 1일부터 운영개시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향후 20년간이다.

위탁 범위는 지방 상수도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 요금, 고객관리 등이며 20년간 총 투자비는 687억원이고 그 중 시설 개량비가 380억원 운영관리비가 307억원이다.

2013년말까지 유수율을 높이고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134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이 2010년 47.7%에서 2013년말 현재 73%로 높아져 연간 5백만톤의 누수량이 감소되어 정수구입비가 21억원정도 절감되었고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시켜 선진 상수도 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노후관로 63.7km를 정비하고 노후계량기 6,200대를 교체하였으며 최적수압 유지를 위해 16개소에 감압 시설을 설치하고 14개 블록망을 구축하여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2014년말 현재 유수율을 80%까지 달성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 시설현대화와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정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탁운영 주요시설 현황

구 분	가압장	배수지	관로	부속설비	급수전
수 량	6개소	9개소	551km	2,557개	9,694전

2. 하수도 관리

1) 개요

하수도는 지역내 주민들의 생활오수와 공장의 오,폐수 자연의 우수등 모든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1987년 4월 20일 고성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 2월 2일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4월 14일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다.

기본계획에 의한 미시설 구간의 관거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합류식하수관리를 분류식으로 개량정비함으로써 2014년말 현재 합류식하수관리 17km가 미개량상태로 남아있으며, 분류식하수관리 174km를 설치 완료하여 전체 시설계획의 93.6%를 시설하였고 금후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빠른 기간내 전체구간을 분류식하수관리로 교체 시행할 계획이다.

○ 하수관리 설치 현황

구분	계			합류식			분류식		
	계획	시설	%	계획	시설	%	계획	시설	%
2006년	212	104	49.1	49	49	100	163	55	33.7
2007	212	110	51.9	49	49	100	163	61	37.4
2008	212	112	52.8	49	49	100	163	63	38.7
2009	162	115	71.0	49	49	100	113	66	58.4
2010	165	119	72.1	49	49	100	116	70	60.3
2011	165	123	74.6	49	49	100	116	74	63.8
2012	168	128	76.2	49	49	100	119	79	66.4
2013	204	154	75.5	49	49	100	155	105	67.7
2014	204	191	93.6	17	17	100	187	174	93.0
고성읍	138	128	92.8	5	5	100	133	123	92.5
회화면	30	28	93.3	12	12	100	18	16	88.9
거류면	36	35	97.2				36	35	97.2

2) 고성군 하수 처리 시설

(1) 고성읍 하수 처리시설 발전과정

가. 분뇨 처리시설(월평리)

○ 1982년 8월 12일 고성읍 월평리의 부지 466m² 에 1일 처리용량 15톤규모의 호기성 소화조 처리방식으로 시설 가동하였다.

○ 1994년 10월 13일 부지를 4,532m² 로 확장하고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로 증설하였으며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방식을 변경하였다. 그후 2002년 12월 31일 고성읍 송학리의 고성하수처리시설 신축 준공과 더불어 모든 기존의 시설을 가동 중지하고 폐쇄하였다.

나. 하수처리 시설(송학리)

○ 2003년 1월 11일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36,240m² 부지에 1일 처리용량 10,500톤 규모의 최신 시설을 준공하여 산화구법으로 하수처리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1일 처리용량 50톤 규모의 분뇨 전처리 시설을 동시 준공하여 고성군 전역에서 수거한 분뇨를 연계 처리하고 있다.

○ 2009년 7월 11일 처리용량을 1일 13,000톤 규모로 증설하여 현재 산화구 개량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 동 시설은 2009년과 2010년도 연속 2년에 걸쳐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2년에는 역시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결과 전국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다.

○ 그 외 고성군내 하수처리 시설은 회화면 배둔리에 2006년부터 1일 처리용량 1,000톤 규모의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거류면 당동리에 2014년부터 1일 처리용량 1,20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소규모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은 군내 22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그중 고성군이 19개소 한국농어촌공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기: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 고성읍 하수처리장 시설 현황

구 분		1단계	2단계
가동년도		2003년	2011년
처리계획인구		25,400인	28,000인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10,500톤/일	13,000톤/일
	위 치	고성읍 송학리 1-1	-
	부지면적	36,240m ²	-
	수처리공법	산화구법	산화구 개량공법
	슬러지처리방식	농축→탈수→퇴비화	좌 동
	방류수역	송학천→고성천→연안(남해)	"
차집관거	기 준	2.3km(D450~700m/m)	-
	신 설	9.75km(D250~800m/m)	-
중계펌프장		1개소	2개소(증설)
사업기간		1998.7~2002.12	2007.5~2009.7
투자사업비	총 액	26,592백만원	9,637백만원
	36,299백만원		

○ 회화.거류면 하수처리장 시설 현황

구 분	회 화 면	거 류 면
위 치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부지면적	5,815m ²	26,759m ²
가동년도	2006년(최종목표2021)	2014(최종목표2016)
처리계획인구	3,500인(최종목표4,000인)	3,532인(최종목표7,861인)
처리시설용량	1,000톤/일	1,200톤/일
하수간선관리	2.7km(D150~300m/m)	8.6km(D150~300m/m)
수처리공법	회분식 활성슬러지 공업	좌 동
슬러지처리	농축, 탈수후 고성하수처리장 이송	좌 동
방 류 수 역	배둔천 → 당항만	신룡천 → 당동만
사 업 기 간	2004.6.5 ~ 2009.8.3	2007.7.3 ~ 2013.12.31
투자사업비	10,182백만원	22,397백만원

○ 소규모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현황

읍 면	시설명	시설용량 (m ³ /일)	처리공법	총사업비 (백만원)	가동년월일	관리기관
고성읍	장계마을	30	SNR	300	2009.11.23	고성군
	죽동마을	49	"	555	2008.2.1	"
	신부마을	40	B ₃ 공법	408	"	"
삼산면	용호마을	55	SNR	834	"	"
	삼산문화마을 (두포리)	70	"	274	2006.8.31	한국농어촌공사
하일면	임포마을	200	"	3,547	2009.11.23	고성군
하이면	제전마을	55	"	492	"	"
	덕명마을	55	CASS SBR	468	2008.2.1	"
상리면	상리문화마을 (척번정리)	70	토양피복형 접촉산화	373	2003.1.	한국농어촌공사
대가면	삼계마을	80	SNR	1,400	2008.10.8	고성군
영현면	봉림마을	55	"	999	2008.2.1	"
영오면	생곡마을	49	"	200	"	"
	낙안마을	110	"	2,117	"	"
	오동마을	90	"	1,001	"	"
구만면	낙동마을	100	"	2,800	2009.12.16	"
회화면	녹명마을	50	"	706	"	"
마암면	법진마을	40	"	400	"	"
동해면	봉암마을	110	"	400	2008.10.8	"
	장기마을	130	"	1,856	2009.11.23	"
	대천마을	40	"	788	2009.12.16	"
	내산전원마을	25	"	114	2009.3.30	한국농어촌공사
거류면	신은마을	130	"	2,956	2009.11.23	고성군
계	22					

제 4절 도로 · 교통

1. 개요

교통은 인류문화의 꽃이자 의식주와 더불어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요소이다. 결국 교통은 인간생활에서 뿐만아니라 인류문명의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교통의 역할은 크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교통은 국가 또는 사회발전의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성의 극대화와 산업구조 개편의 수단을 제공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간의 격차 해소와 문화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의 구성요소는 교통주체, 교통수단, 교통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의 주체는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사람과 물건이며 교통수단은 주체를 태우거나 싣고 교통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버스, 기차, 전철, 비행기, 선박 등이 있다. 교통시설은 교통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철도, 운하, 항로 등의 교통로와 이들의 접속점인 역, 주차장, 공항, 항만을 포함한다.

2. 고성군의 도로

고성군에는 도로법 제8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다. 고속국도는 대전-통영간의 일부 구간으로서 23.2km가 통과하고 있고 일반국도는 3개노선에 92.4km, 지방도는 11개 노선에 174.1km이며 그 포장율은 82.5%이다.

군도는 21개구간에 211.3km, 포장율은 40.9%로서 총36개노선에 501km의 도로가 고성군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고 포장율은 68.8%이다.

그 외 면도, 리도, 농로등 농어촌도로가 184개 구간에 553.6km이고 그중 포장율은 29.9%에 불과하며 년차적으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성군의 도로 현황

(단위:km)

도로별	노선수	총연장	포장로		미포장로
			연장	포장율	
계	36	501.0	345.3	68.9%	155.7
고속국도	1	23.2	23.2	100	-

일반국도	3	92.4	91.4	98.9	1.0
지방도	11	174.1	143.6	82.5	30.5
군도	21	211.3	87.1	41.2	124.2

3. 교통수단

고성군내 전체 36개 노선에 직행버스 1일 401회, 시외완행버스 1일 25회, 타시군 시내버스 1일 51회, 군내버스 19대가 1일 15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 190대가 군민 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2015년 2월 23일자로 폐업이 확정되어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구터미널과 인접한 고성군의 소유부지에 간이대합실과 편의시설을 건축중에 있어 2015년 6월중에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재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설 터미널과 인접한 3.15공원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터미널 부지를 확장하여 시외버스터미널로서의 완벽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버스진입용 플랫폼과 주차공간,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기 노선버스 운행 현황

(2014년말 현재)

구 분	업체수	운행회수(회/일)		
		계	완행	직행
계	16	632	231	401
시외버스	12	426	25	401
농어촌버스	1	156	156	-
사천시내버스	1	33	33	-
통영시내버스	2	17	17	-

○ 사업용 택시 현황

(2014년말 현재)

회사별	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우성교통	고성택시	삼우택시	화성택시	
보유대수	190	37	15	21	21	96

○ 버스터미널 현황

시설명	소유자	개시일자	부지면적	건축면적	대합실	주차면적
고성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성군수 (위탁관리)	1999.5.4	7,489m ²	956m ²	264m ²	4,497m ²
배둔시의 버스터미널	고성군수 (위탁예정)	2015.6.	1,694m ²	66m ²	66m ²	0

4. 군내버스 운영

고성군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1996년 7월 16일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주)고성버스 대표에게 교부하여 운행케 하였다. (주)고성버스 대표는 버스 19대를 확보하고 군내 36개 노선에 1일 156회 4,200km를 운행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이동 승객이 감소되어 운수업체의 경영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감회, 단축운행이 불가피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간,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은 1998년부터 비수익 노선별로 실제 조사를 거쳐 적자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 운수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그 규모는 년2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이다.

5. 자동차

1)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사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3년 황실에서 고종 황제 전용 어차로 리무진 1대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사용치 않았고, 이듬해 러·일 전쟁으로 사라졌다. 실체는 1911년 황실2대, 조선총독부1대, 프랑스 영사1대 등 4대로 늘어난 이후 외국 공관, 왕족, 거부들이 자동차 구입을 서둘러 1919년에는 자동차가 모두 50대에 이르렀다.

버스는 1912년 최초의 8인승 승합버스가 마산-진주간 운행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지역으로 늘어났고 1929년에는 8인승을 14인승 승합버스로 바꾸었다.

1931년에는 경성유람승합자동차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서울시내 관광을 16인승으로 2~5시간에 걸쳐 운행하였다.

택시는 1919년 일본인이 경성택시 회사를 설립하여 단2대의 차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1926년에는 요금기가 달린 택시가 등장하였다.

1955년 시발 자동차 회사가 지프를 생산하였고, 1956년부터 시발택시를 공급하였다.

1962년에는 새나라자동차회사가 새나라 승용차를 시판하였으며 1963년에는 신진자동차회사가 마이크로 버스를 생산, 판매 하였다. 또한 그 해, 신성호라는 국산승용차가 생산되었고, 1965년에는 대형버스도 생산하였으나 부속품은 외국에 의존하였다.

1966년에는 일본과 제휴한 코로나승용차, 미국 포드와 제휴한 코티나 승용차, 1970년대에는 아세아자동차가 피아트를 조립, 생산하였다.

1976년에는 국산화 계획의 성공으로 현대의 포니, 기아의 브리사, GMK의 제미니를 생산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국·내외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 고성군 자동차 등록현황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의 보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83년도에 군내 전체 651대의 자동차가 매년 평균 23%씩 증가하여 2014년말 현재 기준년도의 37배가 증가한 24,084대가 등록되었다.

○ 고성군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대)

구 분	1983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계	651	984	2,747	8,993	13,494	16,588	21,448	24,084
관용	42	36	57	78	120	142	180	194
사업용	124	146	198	415	511	405	513	685
비사업용	485	802	2,492	8,500	12,863	16,041	20,755	23,205

보기 : ①관광교통론. 이경모. 김창수. 2008. 대왕사 발행

②고성군종합민원실. 건설교통과

제 5절 하천 및 치수

1. 개요

하천은 산에서 시작된 자연하천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하천을 강(江), 작은 하천을 천(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지표면에 내린 비나 눈의 일부는 그 상태에서 증발하고 일부는 식물체를 통해 증산하여 대기중으로 되돌아가며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된다. 나머지는 표류수가 되어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데 경사면에서 최대 경사의 방향을 따라 흐르므로 자연히 그 흐름의 길인 하천이 생기게 된다.

하천은 그 물의 흐름을 통해 끊임없이 지표의 토사를 침식시키고, 운반된 토사는 유속이 감속할 때 퇴적시킨다. 또한 하천의 물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지만 어떤 때에는 크나큰 재앙을 안겨 주기도 한다. 아울러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892호로 하천법을 제정 공포하여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에서 하천의 종류를 구분하고 관리 주체를 정하여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코자 하였다.

국가에서는 국가 하천을 직접 관리하고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며 그 외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함으로써 하천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고성군에는 지방하천중 주요하천으로 고성천, 영천강, 영오천, 개천천이 있으며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 현황

(2013년말 현재, 단위 : km)

개소	총연장	제방 연장(양안 합계)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	미개수연장
40	188.02	300.90	149.16	49.5	151.74

2) 소하천 현황

262개소에 총연장이 289.43킬로미터다

2. 고성군 주요하천

1) 고성천

고성천은 고성군의 대표 하천이다. 대가면 천왕산(주:2014.4.4국토지리원의 무량산을 천왕산으로 변경 결정고시에 의함)에서 발원한 대가면 양화소하천이 동으로 흐르다 양화저수지에 유입되고, 방수로로 넘은 물이 고성천으로 이름을 바꾸어 남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고성천은 다시 연지,호림,평동 소하천과 합류하고 방향을 바꾸어 동으로 흐르면서 무량소하천과 합류한 후 4.5km까지 흐른다. 이와는 다른 지류인 대가면 척곡,화암,가산,유흥,마전 소하천과 금산천이 대가저수지에서 합류하여 고성 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남은 물이 방수로로 통해 암전 지방하천으로 흘러 고성천과 합류하면서 유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폭은 아주 넓은 하천을 이룬다.

고성읍 대평리를 지나 국도 14호선을 가로질러 죽계리와 송학리 경계를 서서히 흐르다 7km 하류에서 울대 지방하천과 거류면의 용산 지방하천이 함께 합류하여 유수량을 한층 늘리면서 방향을 북으로 바꾼다.

이 지점에서 고성읍 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와 합류하여 고성읍 죽계리와 거류면 가리리의 경계지점을 지나고 마암면 두호리와 거류면 거산리 지역까지 매우 넓게 완만한 속도로 흐른다.

이곳에서 고성읍 외우산, 상촌, 거류면의 송산,가동,양촌 소하천과 합류하여 고성 간사지의 갈대숲에 흔적을 내려놓고 당항만에서 9.6km의 흐름을 마친다.

또한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두차례에 걸쳐 왜선 57척을 섬멸시키고 승전고를 울린 당항포해전대첩지인 당항만과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고성천 유역은 지세가 평탄하여 넓은 평야가 조성되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품은 전국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상류부의 하상 경사에 비해 하류부는 경사가 완만하여 여름철 폭우시 지류천과의 합류지점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당항만의 만조시에는 그 피해가 더욱 늘어난다.

고성천을 이용한 주민 편익시설은 2007년도에 고성읍 죽동마을앞 고성천 하상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여 산책하는 주민들이 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제방 상단부 노면에는 스포츠바이오로드를 조성하여 조깅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고성읍 대평마을 앞 둔치에는 사단법인 고성청실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가 열린다. 수많은 군민들이 보름날 오후부터 이곳에 모여 행사주관단체가 제공하

는 귀밝이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흥겨운 농악에 축제분위기가 된다.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오르면 달집에 불이 댕겨지고 군민 모두는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다가 어느 순간 모두 함께 두손을 모우고 내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기복 행위가 절정을 이룬다.

밝은 보름달과 달집의 대마디 터지는 소리, 농악 소리에 오래도록 흥얼거리다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인접한 고성교(일명 밤내다리)를 밟으면서 일년동안 내 다리에 액이 들지 않기를 기원하는 또다른 세시풍속인 ‘다리밟이’ 를 끝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놀이를 마무리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민속놀이가 1991년부터 지금까지 23회째 이곳 고성천 둔치에서 열리고 있다.

2) 영천강

영천강은 남강의 제1지류로서 무량산(주:2014.4.4국토지리원의 천왕산을 무량산으로 변경 결정고시에 의함)에서 발원되어 북으로 흐르면서 영현면 봉발 소류지를 거쳐 발촌 소하천, 봉대 소하천과 합류하고 지방하천인 추계천, 무량산에서 발원되어 갈천리를 흐르는 갈천천, 송계리 백운산에서 발원한 대가천, 그리고 영부리의 영부천과 합류하고, 봉림, 점촌, 침촌, 매촌, 신촌 등 5개 소하천과 합류하여 하천의 유수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래로 흐른다.

영현면 신분리 신촌마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접속부분부터 고성군과 진주시의 경계를 따라 흐르면서 연화천, 그리고 제일 큰 지류하천인 영오천과 합류한후 영오면 오서리 영오교 지점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으로 흘러 남강과 합수한다.고성군 관내의 흐름은 10.12km다.

영천강 유역의 대부분은 임야이고 하천 좌우로 좁고 길게 뻗은 평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시 시행한 제방공사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하상의 굴곡이 심하여 세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류부는 하상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토사가 퇴적되는 경향이 있다.

3) 영오천

영오천은 영천강의 제1지류로서 개천면 좌연리 성지산에서 발원하여 좌연저수지에 유입되고 다시 1007번 지방도를 따라 남서로 흐르면서 운암, 좌련 소하천과 합류하고 3km지점에서 지방하천 용암천과 합류한다. 중류부로 접어들면서 북평, 상명, 하명, 구례등 4개 소하천과 합류후 영오면으로 진입하여 하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흐르면서 금산소하천과 합류하고 7km 지점인 양산리에서 제1지류하천인 개천천과 합류하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어서 생곡, 영대, 옥동, 온수, 오동등 5개 소하천과 합류한 후 오서리에서 영오천의 본류

인 영천강에 합수되면서 12km의 흐름을 끝낸다.

영오천의 상류부는 경사가 급하고 하상의 굴곡이 심하다. 중·하류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좌우에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4) 개천천

개천천은 영오천의 제1지류 하천으로서 만수산에서 발원한 두갈래 물길이 하나는 개천면 나동소하천으로 흐르고 다른 하나는 구만면 화림리 선동마을앞 나선천으로 흐르다가 나동 저수지에서 합수하여 개천천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1002호지방도를 따라 남서로 흐른다.

가천저수지까지 약4km구간에서 청광, 청남1.2, 가천1.2소하천 5개와 합류하여 유수량을 늘리고 하천폭을 넓혀 가면서 가천저수지에서 잠시 머물다 저수지 방수로를 넘어 다시 1002번 지방도를 따라 하류로 흘러간다. 하류부는 하천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려진다. 이 구간에서 영오면 매월, 양기, 양산, 추동, 악양, 본양, 상사골, 연촌, 성산, 배천 등 10개 소하천과 합류하면서 하천다운 모습으로 흐르다가 12km 지점인 영오면 양산리에서 영오천과 합수되어 그 흐름을 영오천에 맡긴다.

개천천 유역은 전체가 임야로 둘러 쌓여 상류부는 경사가 급하고 좌우에는 비교적 좁은 농경지를 이루고 있으며 하류부는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3. 치수사업

고성군은 경남의 남부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다. 2001년 7월 29일 집중호우, 2003년 태풍 “매미”, 2005년 8월 8일 강풍, 호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2007년 7월 27일 호우, 그리고 2012년에는 8월 25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3개의 태풍이 통과하였다.

그때마다 발생된 크고 작은 피해는 정부 지원에 의해 대대적인 복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소규모 피해지역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 치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통과한 태풍 “매미”는 최대풍속 43.8m/sec, 강수량 299.3m/m(고성군기준)로 인근 사천시 해안으로 상륙하면서 만조 시간대와 겹쳐 해안에 높은 해일을 발생시키고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당시 고성군의 피해 상황은 사망2명, 이재민 1,793명, 농경지 침수 225Ha, 건물침수, 선박파손, 도로교량 유실, 하천제방 붕괴등 총 1,063억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하천 복구 분야에 147억원이 투입되었다.(주.재해연보2004 소방방재청)

○ 치수사업으로 시행한 하천중 영천강(영현면 영부리)에 둔치공원을 설치하였다. 텐트 50여동과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주차장 50여면, 화장실 2동, 팔각정1개, 데크1동과 둔치주변 황토길 270m에는 조롱박, 수세미, 여주와 야생화가 심겨진 꽃길이 있다. 영현면이 여름철에 주최하는 “촌스런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년3,000여명의 피서객이 즐기고 있다.

○ 회화면 삼덕리에 위치한 월계 소하천은 월계마을 가운데를 흐르고 있으나 하천 폭이 협소하고 호안상태가 불량하여 집중호우시 주택 파손, 침수등 각종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2013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착공 2015년까지 하천 제방 정비 소공원 설치, 친수공간 조성 산책로 설치와 생태 블록을 시공 제방에 풀이 자라고 물고기가 머물수 있는 친환경의 습터를 조성해 놓았다.

○ 고성군은 지방하천 40개소 187km, 소하천 262개소 289km에 매년 크고 작은 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군의 재정 형편상 전체 하천의 취약 부분에 대한 일제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하천의 시설 기준을 종전의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2013년에 발주함으로써 소하천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재해 예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의 용역이 2016년까지 완료된 이후부터는 재해 방제를 위한 체계적인 치수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치수사업 공사 시행 현황

년도별	공사시행하천수	사업물량 (호안축제연장)	사업비(백만원)	비고
2001	6	2,400m	1,100	
2002	5	2,749	2,028	
2003	9	3,891	1,990	
2004	6	2,966	1,276	
2005	4	1,870	668	
2006	7	1,590	1,864	
2007	5	1,609	1,719	
2008	3	1,593	2,361	
2009	7	3,131	5,230	
2010	5	1,750	2,406	
2011	6	3,592	3,187	
2012	6	3,865	4,865	
2013	5	3,416	5,580	
2014	4	2,900	5,176	

(보기: 고성군 안전총괄과)